

별책부록 (1-1)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연구자 : 강문수(부연구위원)

Kang, Mun-Soo

2008. 10. 31.

일 러 두 기

본 부록은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III)」의 별책으로 구성된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 종합보고서”편의 부록이다. 이 부록에는 현행 제재적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213개 시행령·시행규칙상 개별기준을 변경신고의무위반 등 15개 유사 의무위반행위 (변경신고, 준수사항위반, 지정·허가·등록기준 위반, 등록후 영업미개시 또는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명의대여, 일괄하도급,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지정·허가·등록 결격사유, 금지행위위반, 기록보존의무 위반, 포괄금지조항, 관리기준위반, 표시기준위반, 출입·조사 방해 및 거부,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로 분류하여 종합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향후 지속적으로 전개될 행정처분기준 정비에 대한 중요한 입법적 자료로서, 그리고 실무상 집행공무원의 재량행사에 있어 지침서로서 활용되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유사 의무위반행위별 분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기준의 상이한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듯 유사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위반행위자 간의 형평성의 유지 및 관련 법령간 체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유사 의무위반행위별 공통의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개별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의 특수성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음에서는 15개 유사 의무위반사유별로 현행 법령상 행정제재처분기준을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목 차

일 러 두 기	3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7
1. 변경신고	7
2. 준수사항 위반	83
3. 개선명령	528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658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797
(법 률)	888
6. 허가·인가범위 초과영업	971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1014
8. 명의대여	1070
9. 일괄 하도급	1096
10. 고의 중과실로 부실 업무수행	1103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1136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1187
13. 허가·지정·등록 결격사유	1281
14. 금지행위 위반	1326
15. 기록 보존의무 위반	1408
16. 포괄 금지 조항	1431
17. 관리기준 위반	1432
18. 표시기준 위반	1572

19. 위반행위 반복시	1610
20. 출입·조사 방해 및 거부	1650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1708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2	<p>8.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한 때</p> <p>제32조 (골재의 선별·세척등의 신고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골재채취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p>	법 제19조제1항제10호 의3	영업정지 2개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3	1.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 제25조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31조제1항제1의 2호	채취중지 4개월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별표	6. 법 제4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계획을 변경한 때 제4조의3 (사업계획의 승인등) ①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법 제19조제1항제6호	사업정지 60일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별표	8.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운임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19조제1항제8호	사업정지 30일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15조의2 (운입의 신고등) ①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운입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운입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운영자는 운입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원가와 버스등 다른 교통수단의 운입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운입을 합리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제 7 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③ 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1항제2호	사업정지 40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때 제 9 조 (공사시행의 인가)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건설하려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법 제17조제1항제5호	사업정지 40일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받은 공사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별표1	1. 허가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16조제1항제1호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90일	허가취소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별표1		라. 삭도·궤도시설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궤도시설을 변경한 때	법 제16조제1항제6호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사업정지 90일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1.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8)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경 고	허가취소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0	3.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29조 제3호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90일	업무정지 1년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0	5.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상 휴업한 때		법 제29조 제5호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90일	업무정지 1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6	5.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경고 등록취소 (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7.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 또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관리약사를 변경한 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소	법 제36조·제42조·제45조, 규칙 제20조제3항·제24조제4항	경 고	제조정지 15일	제조정지 1개월	
		동물용의약품도매상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8.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자 또는 동물용의약품등취급자가 그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에 관하여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가.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자	소재지 이전 제조업허가 또는 신고	법 제20조제2항·제31조제7항·제42조제1항·제45조제1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허가취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한 때	사항 임의 변경	항 「의료기기법」 제11조·제14조제5항·제15조제4항·제16조제3항, 규칙 제24조				
		원료약품 중 주성분의 규격 또는 분량 등의 변경		해당품목 업무정지 1개월	해당품목 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업무정지 6개월	
		원료약품 중 주성분의 성분, 규격, 분량, 제조 방법 또는 포장 단위 등의 변경		해당품목 업무정지 15일	해당품목 업무정지 1개월	해당품목 업무정지 3개월	
		나. 동물용의약품등 취급자가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임의변경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허가·등록 또는 신고 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12.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등의 취		법	허가취소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취급규칙 별표3	급자가 폐업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등록 또는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제22조·제40조, 『의료기기법』 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 규칙 제26조	또는 등록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57.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취급자가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한 때	법 제22조·제40조, 『의료기기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규칙 제26조제2항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8. 법 제5조·법 제8조·이 규칙 제10조 및 이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사항 또는 승인사항이 변경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활동등을 계속한 때	법 제13조	경고	정지 30일	정지 60일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10	3. 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나. 등록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제 8 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	법 제23조제2호 및 제5호	영업의 전부정지 15일	영업의 전부정지 1월	영업의 전부정지 2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12. 동물병원이 법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법 제33조제3호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변경신고 또는 법 제1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휴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월	3월	12월	
어장관리법시행규칙 별표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변경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0조	등록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p>차. 법 제2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p> <p>제26조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개정 2007.1.19>) 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19></p> <p>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p>	법 제35조제2항제4호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2008.2.29></p> <p>③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p> <p>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67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행규칙 별표4	제6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0일	20일	1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자. 법 제61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제6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신고증·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67조제2항제4호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p>라.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p> <p>제2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p>	법 제27조 제1항제4호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p>(3) 법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위반</p> <p>(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p> <p>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p>		경고	영업정 지3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별표2]	3.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3조제5항 및 법 제64조제1항제5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이하	영업정지 2~3개월	폐쇄
약사법시행규칙[별표8]	6. 약국개설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가. 약국 소재지의 이전	법 제20조제2항(시행규칙 제87조제1항)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등록취소
		나. 약국의 명칭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7개월	업무정지 15일
	15.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가. 제조소 소재지의 이전	법 제31조제7항(시행규칙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영업허가 취소	
		나. 제조소의 명칭변경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영업허가 취소
		다. 원료약품 중 주성분의 규격 또는 분량의 변경	해당 품목 제조업무	해당 품목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정지 6개월			
		라. 원료약품 중 주성분 외의 성분의 규격, 분량, 제조방법 또는 포장단위 등의 변경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마.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의약품등을 제조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영업허가 취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제18조 (형식승인의 변경 등)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의 구조·형식 등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식	(1) 정도가 경미한 경우	별도의 시험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4호	시정 명령 3월	해당계량 기의 형식승인 취소	
			별도의 시험을 요하는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4호	시정 명령 6월	해당계량 기의 형식승인 취소	
		(1) 정도가 중대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4호	해당계량 기의 형식승인 취소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때		법 제13조제1항제3호	등록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3) 석유수출입업을 폐업한 때		법 제13조제2항제3호	등록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때		법 제13조제3항제4호	등록 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29. 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문학원이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전문학원) 제104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113조 제2항제4호	7일 이하 운영 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 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 정지	지정 취소· 등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1.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학감(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다만,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감을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감을 보좌하는 부학감을 두어야 한다.</p> <p>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p> <p>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비 및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 둘 것</p> <p>4. 교육방법 및 졸업자의 운전능력 등 해당 전문학원의 운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p>②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은 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p> <p>1. 제1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p>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등 설립·운영자”라 한다), 학감 또는 부학감이었던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운영하는 학원</p> <p>2. 제1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학원</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문학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2	아. 대행자 등록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8호	경고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 등록기준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업무 정지 10일		
		(2)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업무 정지 1개월		
		(3)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법	업무		
	제12조 (감리법인의 등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록) ①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 그 밖에 정보시스템 감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법인에 한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하 “감리법인”이라 한다)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등</p>	경우	제16조제1항제6호	정지 3개월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록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범위 내의 자본금의 변동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p>	<p>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p> <p>제18조 (형식승인의 변경 등)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의 구조·형식 등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p>	<p>(1) 정도가 경미한 경우</p>	<p>별도의 시험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p>	<p>법 제16조 제1항제4호</p>	<p>시정 명령 3월</p>	<p>해당계량기의 형식승인 취소</p>	
			<p>별도의 시험을 요하는 경우</p>	<p>법 제16조 제1항제4호</p>	<p>시정 명령 6월</p>	<p>해당계량기의 형식승인 취소</p>	
	<p>(1) 정도가 중대한 경우</p>		<p>법 제16조 제1항제4호</p>	<p>해당계량기의 형식승인 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받아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때		법 제13조제1항제3호	등록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3) 석유수출입업을 폐업한 때		법 제13조제2항제3호	등록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때		법 제13조제3항제4호	등록 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p>29. 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문학원이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전문학원)</p> <p>제104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학감(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다만, 학원</p>		법 제113조 제2항제4호	7일 이하 운영 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 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 정지	지정 취소· 등록 취소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감을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감을 보좌하는 부학감을 두어야 한다.</p> <p>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p> <p>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비 및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 것</p> <p>4. 교육방법 및 졸업자의 운전능력 등 해당 전문학원의 운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p>②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은 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p> <p>1. 제1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등 설립·운영자”라 한다), 학감 또는 부학감이었던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운영하</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는 학원</p> <p>2. 제1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학원</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문학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2	아. 대행자 등록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8호	경고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p>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p> <p>제12조 (감리법인의 등록) ①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p>	(1) 등록기준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업무 정지 10일		
		(2)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업무 정지 1개월		
		(3)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업무 정지 3개월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술능력·재정능력 그 밖에 정보시스템 감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법인에 한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하 “감리법인”이라 한다)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범위 내의 자본금의 변동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8)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8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8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7) 변경등록이나 변경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 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 법으로 변경등록이나 변 경신고를 한 경우	가) 변경등록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6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나) 변경신고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11)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 경한 때	(가) 제13조제1항제7호 및 제8 호의 사항중 건설폐기물처리업 의 주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파쇄·분쇄시설 등을 말한다) 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 정지 6월	허가 취소		
		22조 (건설폐기물처리업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	법	영업	영업	영업	허가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의 변경허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제25조제1항제6호	정지 1월	정지 3월	정지 6월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2)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36조	경 고	경 고	조업 정지 5일	조업 정지 1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1)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법 제43조 제2항·제3항	경 고	사용 중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43조 (비산(飛散)먼지의 규제) ①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 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 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 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 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아니한 경우 나) 법 제43조제1 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3항	조치이 행 명령	사용 중지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4)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와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특별대책지역이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의 사업장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	법 제44조제1항·제2항,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경고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⑤시·도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⑥제5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에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에 대하여도 제5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p> <p>⑦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제45조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①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항을 변경하려면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④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⑤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들 각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4조제7항을 준용한다.</p>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p>8) 법 제15조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행위를 한 경우</p> <p>제15조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법 제17조 제1항제8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5)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	법	경고	영업	영업	영업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별표9	한 경우	제43조제5항제5호		정지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p>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p> <p>제21조 (영업의 허가 등) ①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p>	<p>법 제48조제1항제4호</p>	<p>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때에도 또한 같다.</p> <p>④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p>5) 법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제21조 (영업의 허가 등) ①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법 제48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③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④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1</p>	<p>7)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제 8 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법 제17조</p>	<p>경고</p>	<p>경고</p>	<p>조업 정지 5일</p>	<p>조업 정지 10일</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4	(다)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사업장 폐쇄 명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3)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1호	경고	경고	조업 정지 5일	조업 정지 10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 제5항	경고	사용 중지 명령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법 제60조 제5항	경고	경고	사용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경우				중지 명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7	(2)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	경고	사용 중지명령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2	바. 박제업자가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1)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제5항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등록 취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9) 법 제20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 ②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유독물영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② 누구든지 취급금지물질을 영업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		법 제27조제8호·제3 6조제8호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3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지 아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0)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	경고	경고	경고	영업 정지 1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8) 법 제25조제10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가) 제2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중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다) 제3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2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영업 정지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개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3)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 정지3개 월	영업 정지6개 월	허가 취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2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3)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2호	영업 정지3개 월	영업 정지6개 월	등록 취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 업을 한 경우	가) 변경등록사항을 등록 하 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2호	영업 정지1개 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나) 변경신고사항을 신고 하 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2호	경고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개월	3개월	6개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2	(2) 법 제8조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8호	경고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8) 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8조제5항	경고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4)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3호의2	경고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지정 취소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3) 법 제2조제5호 다목의 경우	(가) 해당지역에서 영업을 가능한 경우	사용 중지			
	다. 第4號 各目的 法律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영위하는 建物 기타 施設物	(나) 해당지역에서 영업을 불가능한 경우	폐쇄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기상법	<p>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3.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1년에 3회 이상 신고하지 아니한 때</p> <p>제26조 (기상사업의 등록) 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제28조 (등록의 취소) 제3호	등록 취소, 3월 이내의 사업 정지 명령
원자력법	<p>①핵연료주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허가를, 주무부장관은 그 지정을 각각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6.5.12, 1995.1.5, 1996.12.30, 1999.2.8, 2008.2.29></p>	제46조 (허가등의 취소등) 제1항 제3호	허가, 지정 취소 1년 이내 사업 정지 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3. 제4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제43조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등) ①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2008.2.29></p> <p>②사용 후 핵연료처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2.8, 2008.2.29</p>		
원자력법	<p>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연료물질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6.5.12, 1995.1.5, 1999.2.8, 2008.2.29></p> <p>2. 제5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아야 할</p>	<p>제60조 (사용 또는 소지허가의 취소등<개정 1995.1.5>) 제2호</p>	<p>허가 취소, 1년 이내 업무정지 명령</p>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p> <p>제57조 (핵연료물질의 사용등 허가<개정 1995.1.5>)</p> <p>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9.2.8, 2005.12.30, 2008.2.29></p> <p>1.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발전용 원자로운영자 또는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p> <p>2.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p> <p>3. 대통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p>		
원자력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	제68조 (생산·판매·사용 또는	허가 등록 취소, 1년 이내 업무정지, 사용금지 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신고사용자에 한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1.1.16, 2008.2.29></p> <p>3. 제65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또는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p> <p>제65조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등<개정 1999.2.8>) ①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6.5.12, 1995.1.5, 1999.2.8, 2001.1.16, 2008.2.29></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p>	<p>이동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제1항 제3호</p>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또는 이동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6.5.12, 1999.2.8, 2001.1.16, 2008.2.29></p> <p>제65조의2 (업무대행자의 등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원자력법	<p>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8.2.29></p> <p>3. 제7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p> <p>제76조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개정 1996.12.30>) ①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폐기시설등”이라 한다)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p>	<p>제79조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의 취소등) 제1항 제3호</p>	<p>허가 취소, 1년 이내 사업 정지 명령</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2.8, 2008.2.29>		
원자력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독업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8.2.29> 3. 제9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 제90조의4 (관독업무자의 등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이하 “관독업무자”라 한다)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0조의7 (관독업무자 등록의 취소등 제1항 제3호	등록 취소, 1년 이내 업무 정지 명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조 (평가인정의 취소) 제1항 제2호	평가인증 취소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4항의 평가인정의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p> <p>제 3 조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 4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측량법	<p>④시·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6.12.20></p> <p>1. 제6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p> <p>제 6 조의3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①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p>	제6조의 7 제4항 제1호	업무정지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특사항중 기술능력, 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0, 2008.2.29></p>		
관세법	<p>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수정신고
외국환거래법	<p>②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2.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p> <p>제 8 조 (외국환업무의 등록등)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기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p>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6개월 이내 정지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환전영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 9 조 (외국환중개업무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합병 또는 해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양도·양수 하거나 인가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p>	<p>①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한 경우</p> <p>제 3 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다만, 대통령령이</p>	<p>제38조의2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p>	<p>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p>①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p> <p>7.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p> <p>제 7 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중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제12조 (허가의 취소등) 제1항	허가 취소 6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p>①산림청장은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3></p> <p>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p>	제17조 (시정요구) 제1항 1호	6월 기간 시정요구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 9 조 (등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p>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p>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p> <p>제25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제25조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①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p>	제35조 제1항 제3호	<p>영업정지·영업폐쇄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그 밖에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p>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p>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p>	<p>제35조 제2항 제4호</p>	<p>영업정지·등록취소·영업폐쇄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p>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26조 (개입제공업 등의 허가 등)</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공연법</p>	<p>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7.19></p> <p>1. 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p> <p>제 4 조 (등록) ①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제35조 제1항 제1호</p>	<p>승인취소 개선명령</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②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p> <p>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공연법	<p>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2.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 5 조 (허가와 신고)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p>	제35조 제1항 제2호	승인취소 개선명령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④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관광진흥법	<p>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8.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를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p>	제35조 제1항 제8호	승인취소 전부·일부 정지 개선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p>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뉴스통신사업자의 뉴스통신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1.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p>	<p>제9조의3 제1항 제1호</p>	<p>정지명령</p>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뉴스통신사업을 한 때 제 8 조 (등록 등) ①뉴스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를 갖춘 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호 2. 법인의 명칭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이사의 성명·생년월일·주소 3. 편집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4. 무선국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통신체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 체결사항 6.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p>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p>	<p>①시·도지사는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p>	<p>제27조 제2호</p>	<p>등록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제16조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등록 등) ②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p>	<p>①시·도지사는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p>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p> <p>제6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제67조 제1항 제3호</p>	<p>영업정지· 영업폐쇄</p>
<p>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p>	<p>제67조 제2항 제4호</p>	<p>영업정지 등록취소</p>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4.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p> <p>제6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방송법	<p>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p> <p>제15조 (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12.18,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삭제 <2006.10.27> 	제18조 제6호	허가, 승인,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5. 방송분야의 변경 6. 방송구역의 변경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나. 제18조제2항·제21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제18조 (마약류수출입업자) ②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을 수입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성·유효성 및 생물학적 동등성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3.28> 제21조 (마약류제조업자) ②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44조 제1항 제2호 나목	허가 또는 지정취소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24조 (마약류원료사용자) ②마약류원료사용자가 한 외마약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업무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 (폐업등의 신고·통보 및 자료이관) ①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 폐업하고자 하거나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등의 등록이나 장기등의 적출·이식 또는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제30조 제3항 제4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1년 (뇌사판정대상자관리업무의 정지)
전염병예방법	1.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40조의3 (소독업의 신고) ①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제40조의 8 제1항 제1호	영업정지6월 또는 영업장 폐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2005.7.13, 2008.2.29></p> <p>제40조의4 (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소독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30일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3.31, 2008.2.29>[본조신설 1983.12.20]</p>		
<p>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p>	<p>2. 제29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동화실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한 경우</p> <p>제29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p>	<p>제30조 제1항 제2호 제2호</p>	<p>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단, 승인취소시 필수적 청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p> <p>②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p> <p>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려면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p>	<p>2. 제37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업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p> <p>제37조 (협업사업계획의 승인) ①협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9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업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p>	<p>제38 제1항 제2호</p>	<p>승인을 취소하거나 제39조에 따른 지원을 끝낼 수 있다. (단, 승인취소시 필수적 청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자(이하 이 절에서 “승인사업자”라 한다)가 협업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 목표 2. 참가업체와 추진주체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내용과 실시기간 4. 참가업체가 제공한 설비·기술 등 경영자원 5. 자금조달 방법 		
광업법	<p>6. 제42조제3항에 따른 채광계획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제42조 (채광계획의 인가)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에게 채광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p>	제35조 제6호	광업권 취소 (취소할 수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p>4.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경우</p> <p>제8조 (수입승인 등)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p>	제17조 제1항 제4호	승인취소 (취소할 수 있다. 취소시 필수적 청문 사항)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2조 (생산승인 등)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p>		
<p>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p>	<p>2.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p> <p>제22조 (연구시설의 설치·운영허가 등)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이하 “연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p>	<p>제23조 제1항 제2호</p>	<p>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u>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u>하도록 명할 수 있다. (취소시 필수적 청문 사항)</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가를 받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36조 제2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3.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 제3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제28조 (가축분뇨관련영업) ①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2조 제1항 제8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②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조건의 준수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2조 제1항 제12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먹는물관리법	8. 제15조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행위를 한 경우 제15조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제1항 제8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먹는물 관리법	5.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3조 (검사기관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두어들인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	제43조 제6항 제5호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먹는물 관리법</p>	<p>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p> <p>제21조 (영업의 허가 등) ①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④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p>	<p>제48조 제1항 제4호</p>	<p>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정지 6월</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4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먹는물 관리법	<p>5.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3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p> <p>제21조 (영업의 허가 등) ①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p>	제48조 제1항 제5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때에도 또한 같다.</p> <p>④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27조 (품질관리인) ①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개인인 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가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제28조 (품질관리교육 <개정 2008.3.21>) ①먹는샘물</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아야 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에게도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9조 (건강진단) ②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1></p> <p>제30조 (준수 사항)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③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계측기)를 설치·관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40조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 ①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와 그 용기·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41조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①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자가 검사(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p>		
소음·진동 규제법	<p>3.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제 8 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제17조 제3호	허가취소 또는 조업정지 6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변경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p>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8.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8호	변경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37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62조 (폐수처리업의 등록) ①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4조 제2항 제1호	영업정지 6월
폐기물관리법	10.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27조 제2항 제10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25조 (폐기물처리업) ⑪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49조 제2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6월
하수도법	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54조 제1항 제2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6월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본문 후단 및 단서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 또는 동항 본문 후단 및 단서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 5 조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개정 2006.4.28>) ①1종화학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목적·제조시설·제조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제8조 제1항 제2호	허가취소 또는 제조정지 3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도 또한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p>		
<p>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p>	<p>9.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동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p> <p>제11조 (수출규제) ①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목적·수출대상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해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6.4.28, 2007.4.11, 2008.2.29></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p>	<p>제8조 제1항 제9호</p>	<p>허가취소 또는 제조정지 3월</p>

1. 변경신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도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목적·수출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 40일 전 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p> <p>③허가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4.28></p>		
<p>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p>	<p>2. 제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p> <p>제 5 조의2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①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조목적·제조량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p>	<p>제8조의 2 제1항 제2호</p>	<p>제조 정지 또는 제조 폐쇄</p>
<p>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p>	<p>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동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p> <p>제11조 (수출규제) ①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목적·수출대상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지식</p>	<p>제8조의 2 제1항 제8호</p>	<p>제조 정지 또는 제조 폐쇄</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해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6.4.28, 2007.4.11, 2008.2.29>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10.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동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제12조 (수입규제) ①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목적·수입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4.28, 2008.2.29>	제8조의 2 제1항 제10호	제조 정지 또는 제조 폐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제10조 제1호	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환경영향평가법	2. 제35조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 제2항 제2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35조 (평가대행자의 등록) 제3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기술능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10. 법 제28조제8호에 해당된 때	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정지)	면허효력 정지 60일				
	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정지) 시·도지사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제28조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8. 제2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때	건설기계를 조종하다가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정지)				
	다.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정지)	취소			
	라.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면허효력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정지)	취소			
	마.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정지)	취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별표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합병한 때 제 4 조 (사업면허등) ③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사업을 양도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1항제3호	사업정지 60일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별표1	3. 명령	가. 허가내용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16조제1항제6호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사업정지 90일	
		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16조제1항제9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90일	허가취소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별표1	4. 보고	가. 보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법 제16조제1항제10호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40	4.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체결된 협정에 위반한 때		법 제113조 제1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2	1.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때 제14조 (해기사의 승무범위)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법 제9조제1항제1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해기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에 따라 승무하여야 한다.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2	2.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때에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때 제15조 (면허증 등의 비치)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를 하는 때에는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장은 이를 선박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2	6. 법 제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기사면허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9조 (면허의 취소등)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의 정지처분이 종료한 때에는 그 면허증을 당해 해기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	아.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13조 제1항제8호	경고	면허정지 2월	면허정지 6월	면허취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9	라.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법 제38조 제2항제4호	정지1월	정지3월	정지6월	지정취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3	라. 법 제43조 내지 제45조, 제48조, 제49조 또는 위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1조 제4호	경고	정지1월	정지3월	등록취소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마.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중에 품질인증을 사용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5호	인증취소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 관한규칙 별표	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때	법 제72조제1항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10일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30일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90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18	4.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	자격정지 1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7)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6조에 따른 직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2월	유료등록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무료:사업 정지6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9)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36조 제1항	경 고	등록취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13)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1 월	사업정지2 월	유료:등록 취소 무료:사업 정지6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16)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영 제2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36조 제1항	경 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월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장기결근으로 인하여 근무를 소홀히 하고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등록취소
	(나)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나 신고·등록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 그 허가나 신고·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다) 직업소개소의 명칭, 전화번호, 위치 및 신고·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등록취소	
	(라) 근로계약 체결전에 소개요금등을 받은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등록취소	
	(마) 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의 내용·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설명한 때		사업정지 1월	등록취소		
	(바) 구인·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등록취소	
	(사)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등을 보관하거나 압류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등록취소	
	(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취업시킨 때(일용근로자를 소개한 경우를 제외한다)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등록취소	
	(자) 직업소개소 내부에 등록증·요금표등을 부착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차) 간판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3.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때		경 고	허가취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2. 법 제25조(준수사항)를 위반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사업정지 3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제3 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8. 건강진단 실시방법이 부적정하거나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건강진단기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바. 질병의 소견이 있는 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이에 필요한 사후관리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를 직접 내주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1) 법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과건사업을 행한 때		경 고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2) 법 제6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과건사업을 행한 때		경 고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9)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의 내용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1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16)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근로자과건을 행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19)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건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1. 안전관리대행기관(법 제15조의2관련)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8. 건강진단기관(법 제43조관련)	자.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 실시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1)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2) 건강진단 실시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때	중단한 때	3월	6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10. 안전·보건진단기관(법 제49조관련)	라.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진단업무를 거부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11. 산업안전·위생지도사(법 제52조의4관련)	나. 법 제52조의6의 규정에 위반한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0	9.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28조 제2항제5호	면허정지 15일	면허정지 30일	면허정지 180일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0	4.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하게 한 때		법 제29조 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180일	
낙시어선업법 시행규칙 별표2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영업폐쇄			
낙시어선업법 시행규칙 별표2	나.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1 월	영업정지2 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7.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15.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12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27.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22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10.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5항제8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6	6. 법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물용의약품등을 무환(시험연구용 등을 포함한다)수입한 때	법 제42조, 『의료기기법』 제14조, 규칙 제17조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4.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또는 동물용의약품	법	업무정지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취급규칙 별표3	도매상이 제조관리자·수입관리자 또는 관리약사를 두지 아니한 때		제36조·제42조 및 제45조제5항	(선임시 까지)	또는 전품목수 입 금지 2년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11. 동물용의약품제조업 자등의 준수사항을 준수 하지 아니한 때	가. 규칙 제22조제1항제1호 를 위반한 때	법 제47조,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제 14조제5항·제15 조제4항·제17조 , 규칙 제22조제1항	업무정지 1개월	허가취소			
		나. 규칙 제22조 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 및 제 22조제3항을 위 반한 때		동물용 의 약품 등 제 조업자· 수입자 동물용의약 품 도매상, 동물용 의 료기기수리 (판매·임 대)업자 동물약국, 동물 병원 의 개설자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동물용 의약품등	29. 제조일지 및 시험대장이 없거나 비치기간 동안		법 제37조, 규칙	경 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취급규칙 별표3	비치하지 아니한 때	제13조		7일	15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30. 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준서,제조위생관리기준서 또는 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때	법 제37조, 『의료기기법』 제12조, 규칙 제13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조정지 15일 또는 해당품목 제조정지 15일	제조정지 1개월 또는 해당품목 제조정지 1개월	제조정지 3개월 또는 해당품목 제조정지 3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44.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제조업소나 영업소안에 게시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제조품목허가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0조·제31조 및 법 제44조,	경 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45.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제조관리의무 또는 생산관리의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가. 규칙 제1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에 위반한 때	법 제37조·제38조 및 법제42조제4항,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4조, 규칙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나. 규칙 제14조제1항제6호에 위반한 때	해당품목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14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47.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수입)업자가 동물용의약품등의 광고 준수사항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 『의료기기법』 제23조, 규칙 제44조	경 고	해당품목 제조정지 15일	해당품목 제조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54. 생물학적제제 자가시험용 시험동물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규칙 제38조	경 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62. 동물용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의약품의 수입자, 동물용의약품의 판매업자, 동물약품·동물병원의 개설자가 법 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동물용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의약품의 수입자, 동물용의약품의 판매업자	법 제76조제1항제5 호, 규칙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업무정지 15일 또는 해당품목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또는 해당품목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해당품목 업무정지 3개월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나. 동물약국, 동물병원의 개설자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1. 법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인이 특정금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때 第4條 (特定禁止區域에서의 漁業活動禁止) 外國人은 排他的經濟水域중 漁業資源의 보호 또는 漁業調整 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이하 “特定禁 止區域”이라 한다)에서 漁業活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3조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7. 법 제5조·법 제8조·이 규칙 제10조 및 이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 로 식별하기 곤란하거나 규격에 맞지 아니한 표시기 를 게양한 때	법 제13조	경고	정지 30일	정지 60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11. 법 제7조·영 제4조 및 이 규칙 제15조의 규정 에 위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입어료 를 최종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 제13조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p>第7條 (入漁料) ①外國人은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證을 교부받은 때에는 大韓民國 政府에 入漁料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漁料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減額 또는 免除할 수 있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入漁料의 금액, 納付期限 및 방법과 減額·免除基準 기타 入漁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15.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3의 규정에 위반하여 포획·채취 금지체장, 포획·채취금지구역과 기간, 어구사용금지구과 기간, 특정어구의 사용금지, 어망목 및 어구규모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어업활동 등을 한 때	법 제13조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10	1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폐기 등의 조치에 위반한 때 제24조(폐기 등의 조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해당 사료가 다음 각	법 제23조제5호	영업의 전부정지 1월	영업의 전부정지 2월	영업의 전부정지 6월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료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공급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를 회수·폐기, 그 밖에 해당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1. 사료의 성분이 성분등록된 사항과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 2.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7.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거나 관리선의 규모 등을 위반한 경우	○ 어업면허	제29조	경고	경고	취소	
		○ 관리선	제29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취소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8. 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시설 및 그 관리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30조	경고	경고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어장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경고	경고	취소			
			허가 또는 신고어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5. 계류 중인 어선등이 행정처분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항구로부터 벗어난 경우	제36조 제48조 제50조	정지 30일 추가	취 소	-	정 지 30 일 추 가	정 지 30 일 추 가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6.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외국의 영해를 침범하여 조업을 함으로써 해당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제36조 제48조 제50조	정지 30일	정 지 45 일	정지 60일	정 지 30 일	정 지 45 일	정지 60일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6. 신고어업을 하는 자가 신고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	정지 10일	정지 20 일	신고 증명서회 수	-	-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7.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 록을 한 자로서 『관세법』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 청장이 어업정지 또는 허 가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48조 제50조	정지 40일	정지 60 일	취소	정지 40 일	정지 60 일	취소
	○ 정지요청을 한 경우		취소	-	-	취소	-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8.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외국과의 어업협정 또는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 을 운반한 경우	제50조	정지 30일	정지 45 일	정지 60일	정지 30 일	정지 45 일	정지 60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19. 이 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경우	제58조	취소	-	-	취소	-	-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20. 어업시기가 끝나면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제59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21. 어장·연근해어선 또는 어구의 표지설치명령을 위반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제60조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3	3.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업한 때	법 제11조제1항제2호, 규칙 제12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3	4.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때	법 제11조제1항제2호, 규칙 제13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3	5.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업의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11조제1항제2 호, 규칙 제19조	경고	취소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2	6. 수의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한 때 第30條 (指導와 命令)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動物의 診療施策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公衆衛生上 중대한 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憂慮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獸醫師 또는 動物病院에 대하여 필요한 指導와 命令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3.24, 1996.8.8, 2005.5.31, 2008.2.29> ②保健福祉部長官은 人獸共通傳染病의 防疫과 診療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법 제32조제2항제3 호	면허효력 정지 1월	면허효력 정지 3월	면허효력 정지 6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나.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경우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	법 제9조의2	1년	-	-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하고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라. 당해 양곡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의무 또는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동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조의2	3개월	6개월	1년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3	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기준을 위반한 때 ②人蔘類를 제조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製造基準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 제16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또는 영업폐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19, 2	(1)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008.2.29>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28조제3호 및 영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때 영제16조의2 (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 판매가격을 말한다) 5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p> <p>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p> <p>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p>	<p>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p> <p>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p>				
	<p>(4)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때</p>	<p>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p>	<p>영업 정지 10일</p>	<p>영업 정지 1월</p>	<p>영업 정지 3월</p>	<p>등록 취소</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7.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p> <p>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p>							
<p>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2]</p>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한 때</p> <p>공연법 제5조 (연소자유해공연물 등) ②『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이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p>	<p>법 제33조제1항제1 호</p>	<p>공연장운영자에 대한운영정지</p>			<p>공연자에대한공연활동정지</p>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경고	3일	7일	경고	1월	3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청소년 보호법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2]	3.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회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 공연한 때,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거나 외국인의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한 때 제 6 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①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이를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33조제1항제2 호	공연장운영자에 대한운영정지			공연자에대한공연활동정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일	7일	15일	15일	1월	3월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2]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거나 공연추천조건에 위반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2 호	공연장운영자에 대한운영정지			공연자에대한공연활동정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제 7 조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②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공연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때 2.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한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에 위반한 때		반	반			반	반
	5.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7일	15일	30일	1월	3월	6월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1조 (재해예방조치) ①공연장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9.27>	법 제33조제1항제3 호	공 연 장 운 영 자 에 대한운영정지			공연자에대한공 연활동정지		
			1차 위 반	2차 위 반	3차 위 반	1차 위 반	2차 위 반	3차 위 반
			3일	7일	15일	-	-	-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2]	6.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3	공 연 장 운 영 자 에 대한운영정지			공연자에대한공 연활동정지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제11조 (재해예방조치) ②제1항의 규정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재해대처 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의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	-	1월	3월	6월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2]	7.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정기검사·수시검사·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때 또는 시설의 보완이나 개·보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제12조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①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 설치공사의 착수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 설계검토를 받아야 한다.	법 제33조제1항제4호	공연장 운영자에 대한운영정지			공연자에 대한공연활동정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7일	15일	1월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차. 법 제6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제62조 (비디오물시청제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67조제2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법	영업	영업	영업		
		(2) 비디오물소극장에 청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공업자의 준수사항) 비 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 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 다. <개정 2008.2.29>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 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한 조치를 할 것 2.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 우에는 대통령이 정하 는 출입시간에 한하여 청 소년을 출입시킬 것. 다 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 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 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년 출입 금지시간에 청소 년을 출입시킨 때	제67조제2항제5 호	정지 10일	정지 1월	정지 3월	폐쇄 등록 취소
		(3) 비디오물 감상실업자가 법 제62조제3호를 위반한 때 (가)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 공한 때	법 제67조제2항제5 호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폐쇄 등록 취소
		(3) 비디오물 감상실업자가 법 제62조제3호를 위반한 때 (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 다)를 고용·알선하는 행 위를 한 때	법 제67조제2항제5 호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2월	영업 폐쇄 등록 취소	
		(3) 비디오물 감상실업자가 법 제62조제3호를 위반한 때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항에 따라 성매매 등의 행 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 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법 제67조제2항제5 호	영업 정지 3월	영업 폐쇄 등록 취소		
		(3) 비디오물 감상실업자가 법 제62조제3호를 위반한 때	법 제67조제2항 제5호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폐쇄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3. 비디오물감상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라)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때	1월	3월	등록 취소	
	가.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3) 비디오물 감상실업자가 법 제62조제3호를 위반한 때 (마)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영업장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67조제2항제5호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4.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p> <p>5.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할 것</p>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p>마.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p>	<p>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p>	<p>법 제27조제1항제5호</p>	<p>경고</p>	<p>영업정지 10일</p>	<p>영업정지 20일</p>	<p>영업정지 1월</p>
	<p>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2)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p>	<p>법 제27조제1항제5호</p>	<p>영업정지 10일</p>	<p>영업정지 1월</p>	<p>영업정지 3월</p>	<p>등록취소 영업폐쇄</p>
	<p>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p>	<p>3)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p>	<p>법 제27조제1항제5호</p>	<p>영업정지 10일</p>	<p>영업정지 1월</p>	<p>영업정지 3월</p>	<p>등록취소 영업폐쇄</p>
		<p>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p>	<p>법</p>	<p>영업</p>	<p>영업</p>	<p>등록</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	다)를 고용·알선한 때	제27조제1항제5호	정지 1월	정지 2월	취소 영업 폐쇄	
	5) 청소년을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로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5호	등록 취소 영업 폐쇄			
	6) 호객행위를 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5호	등록 취소 영업 폐쇄			
	8)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 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9)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p>		10일	20일	1월	3월	
		<p>10)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p>	<p>법 제27조제1항제5호</p>	<p>영업 정지 10일</p>	<p>영업 정지 20일</p>	<p>영업 정지 1월</p>	<p>영업 정지 3월</p>
	<p>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p>						
	<p>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1)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p>	<p>법 제27조제1항제5호</p>	<p>경고</p>	<p>영업 정지 10일</p>	<p>영업 정지 20일</p>	<p>영업 정지 1월</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5. 법 제1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1월	국내: 영업정지 2월 국제: 등록취소	국내: 영업정지 3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6.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내주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2.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3.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4.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	법 제18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7.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③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8.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제10조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④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8조 제1항제8호	영업정지 3월	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국내: 영업정지 1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9.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을 위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 제11조 (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8조 제1항제9호	국제: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12.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3조 (개인정보의 보호)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8조 제1항제12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안마사에 관한 규칙[별표2]	5. 제7조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8호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 7 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할 것 2. 안마시술소 및 그 부대시설 또는 안마원을 안마시술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4. 부대시설로 설치한 욕실의 욕수(욕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의 욕조수 수질기준을 유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 법 제63조 및 법 제64조제1항제6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1개월 이하	영업정지 2~3개월	폐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지할 것 6.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내부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 놓을 것 7. 종업원에게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설립한 대한안마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보수교육 및 소양교육을 받도록 할 것 8. 그 밖에 시·도지사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6. 제7조제5호를 위반한 경우 제7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 법 제63조 및 법 제64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2개월	폐쇄	
	5.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내에서 퇴폐·음란행위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 법	경고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폐쇄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또는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 것		제63조 및 법 제64조제1항제6호					
	7.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가 안마시술행위를 하거나 그에게 안마 시술행위를 하게 한 경우		법 제27조,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영업정지 1개월 이하	영업정지 1~2개월	영업정지 2~3개월	폐쇄	
약사법시행규칙[별표8]	4. 약국개설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에 대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76조	등록취소				
	5.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약국을 개설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시행규칙 제7조제1항)	자격정지 3개월	면허취소			
	8. 약국을 개설등록한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국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1명의 약사 또는 한약사가 2개소 이상의 약국을 개설한 경우	나.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관리자로 지정된 약사·한약사가 그 약국을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다.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시행규칙 제9조)	면허취소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등록취소
		경고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3.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법 제23조제3항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면허취소	
	나.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가 원의처방전을 받은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법 제23조제7항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면허취소	
	다.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 요구를 거부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면허취소	
	라. 약국개설자(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의료기관개설자(종사자를 포함한다)와 담합행위를 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등록취소	
	마.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제4항	경고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면허취소	
	사. 처방전의 내용 중 의심나는 점에 대하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제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면허취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아.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경우(법 제27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7조제1항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면허취소	
	자. 약사가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3항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면허취소	
	차. 약사가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사후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사전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법 제27조제4항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면허취소
	카. 조제한 약제에 환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처방전에 조제연월일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항	경고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타.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9조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파. 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하고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하. 약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기록부의 열람, 사본발급 등 그 내용 확인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7.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이 다음 각 목의 임상시험실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임상시험을 한 경우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한 경우	법 제34조, 법 제42조(시행규칙 제32조)	해당 품목 임상시험 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회수·폐기	해당 품목 임상시험 업무정지 9개월과 임상시험 책임자 변경	해당 품목 회수·폐 기와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취소 (임상시험 중인 다른품목 의 임상시험 완료 후 지정취소)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피험자동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품목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과 임상시험 책임자 변경	해당 품목 임상시험 업무정지 6개월과 임상시험 책임자 변경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피험자보호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품목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과 임상시험 책임자 변경	해당 품목 임상시험 업무정지 6개월과 임상시험 책임자 변경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임상시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해당 품목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임상시험 업무정지 6개월
		마.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경우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	임상시험 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회수·폐기	
	18. 임상시험책임자가 임상시험실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임상시험을 한 경우		법 제34조제7항, 법 제42조(시행규칙 제32조)	경고	임상시험 배제 3개월	임상시험 배제 6개월	임상시험 배제 9개월
	19. 의약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신약 등의 재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가. 신약 등의 재심사를 위한 사용성적조사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연차별 사용성적조사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법 제42조(시행규칙 제36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나. 신약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조사대상자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해당 품목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의 수가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	6개월		
		다. 재심사품목 신청기간(재심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전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재심사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20. 의약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재평가 대상 의약품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	해당 품목 허가취소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시한 후속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표시·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기재 및 수거·폐기조치는 제외한다)		1개월	3개월	정지 6개월	
		21.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조건부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조업 허가취소 또는 해당 품목 허가취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8]		7. 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8]		8.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상진료체계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32조 (비상진료체계) ②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법 제55조제1항제3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15일	면허 또는 자격정지 1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2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8]		9. 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33조 (예비병상의 확보) ①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자가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p>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다음 행위를 한 때</p> <p>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매매피해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상담소에 임시보호를 한 때</p> <p>나. 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p> <p>제13조 (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존중)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제10조제3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p> <p>제19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법 제20조제1항제6호	경고	업무 정지 1월	시설 또는 상담소 폐쇄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2	6. 사업에 관한 보고명령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41조제1항·제 2항	사업 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30일)	허가 취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2	7.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9조제2항	사업 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 한 때 제17조 (석유비축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1. 석유정제업자 2. 원유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석유수출 업업자	법 제13조제1항제6 호	사업 정지 1월	사업 정지 3월	등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3.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석유비축의무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7)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21조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외 석유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석유의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이하 “석유정제업자등”이라 한다), 석유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	법 제13조제1항제7 호	사업 정지 3월	사업 정지 6월	등록 취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학제품을 소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요소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별·주요수급자별 석유의 배정 2.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가동 및 조업 3. 석유정제업자의 유종별 생산비율 4. 석유의 비축량 및 저유시설의 사용 5. 석유의 도입방법·도입지역 등 수출입 6. 석유의 위탁정제 및 가공 7. 석유제품의 규격 및 정량거래질서의 확립 8.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상호간의 석유의 등가교환 또는 분배사용 9.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시설 및 그 사용 10.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 11.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거래질서의 확립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주요소비자·판매자의 신고 13. 그 밖에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p>(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때</p> <p>제17조 (석유비축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p> <p>1. 석유정제업자</p> <p>2. 원유 및 대통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석유수출업업자</p> <p>3.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p> <p>②석유비축의무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법 제13조제3항제7 호	사업 정지 1월	사업 정지 3월	등록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p>(8)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때</p> <p>- 석유정제업자</p>	법 제13조제1항제8 호	사업 정지 3월	사업 정지 6월	등록 취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22조 (석유배급 등의 조치)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 또는 국내외의 석유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만으로는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석유의 배급 2. 석유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3. 석유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4. 그 밖에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7)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7) 및 (8)의 1에 해당한 때 - 석유수출입업자	법 제13조제2항제7호	사업 정지 3월	사업 정지 6월	등록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8)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7) 및 (8)의 1에 해당한 때 - 석유판매업자	법 제13조제3항제8호	사업 정지 3월	사업 정지 6월	등록 취소	
석탄산업법시행규칙 별표1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 제1항제3호	경 고	과징금부과 또는	과징금부과 또는	광업 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第24條 (石炭등의 需給調整을 위한 措置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석탄산업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석탄을 발전용 기타용도의 원료로 사용하는 자 그밖에 석탄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1.12.31,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石炭의 生産量·石炭加工製品의 종류와 生産量에 관한 調整 2. 石炭·石炭加工製品의 備蓄과 貯炭施設에 관한 調整 3. 石炭·石炭加工製品의 配給과 사용제한에 관한 調整 4. 石炭·石炭加工製品의 地域的 流通에 관한 調整 5. 발전용 석탄의 사용량에 관한 조정 6.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지원하기 위한 판매가격의 결정 및 고시 <p>②지식경제부장관은 石炭加工製品 消費者의 安全을</p>			광업 정지 10일	광업 정지 1월	3월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石炭加工業者 또는 石炭加工製品을 販賣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석탄산업법시행규칙 별표1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 제1항제3호	경 고	과징금부 과 또는 영업 정지 7월	과징금부 과 또는 영업 정지 10일	등록 취소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의4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15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1.3, 2008.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승강기의	법 제15조의2제1항 제2호	검사업무 일부정지 1월	검사업무 일부정지 3월	지정취 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기관 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 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검사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 2.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 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4.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것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 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 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원이 없을 것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0	다.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지역을 위반하여 판매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 3 조 ②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나 액화석유 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나 판매소 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 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법 제9조 제1항제5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p> <p>⑧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p>					
<p>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0</p>	<p>하.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명령 또는 공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제21조 (가스용품의 품질 보장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p>	<p>법 제9조 제1항제17호</p>	<p>사업 정지 또는 제한 3일</p>	<p>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p>	<p>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p>	<p>허가 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인정할 때에는 가스용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2008.2.29></p> <p>②시·도지사는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가스용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p>					
<p>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5의2</p>	<p>2. 법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경우</p> <p>제73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p>	<p>법 제73조의6 제2호</p>	<p>업무 일부 정지 3월</p>	<p>업무 일부 정지 6월</p>	<p>등록 취소</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p> <p>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한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 2008.2.29></p> <p>2.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p>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아.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9조 제1항제6호	개선 명령	인증 표시 사용 금지 2월	인증 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p>12. 교육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p> <p>가. 1일 1인당 교육시간을 초과한</p>	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경고 또는 7일	7일 초과 ~ 15일 초과 ~	15일 초과 ~ 15일이하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것이 확인된 때 나. 매 교시당 교육시간 50분을 지키지 아니하는 때			이하 운영 정지	15일 이하 운영 정지	1월 이하 운영 정지	운영 정지
		전문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7일 이하 운영 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 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 정지	1월초과 ~ 2월이하 운영 정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13. 기능교육의 방법을 위반한 때 가. 면허의 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나. 동승하여야 하는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기능교육 강사가 동승하지 아니하거나 단독교육을 강요한 때 다. 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7일 이하 운영 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 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 정지	2월초과 ~ 3월이하 운영정지
		전문학원	법 제113조	7일	7일	1월	2월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교육을 실시한 때	제1항제7호	이하 운영 정지	초과 ~ 1월 이하 운영 정지	초과 ~ 2월 이하 운영 정지	초과 ~ 3월 이하 운영 정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14. 학과교육의 방법을 위반한 때 가. 교육과정에 관한 계획없이 교육을 진행하는 때 나. 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때	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7일 이하 운영 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 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 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 정지
		전문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7일 이하 운영 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 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 정지	1월초과 ~ 2월이하 운영 정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별표35	15. 도로주행교육의 방법을 위반한 때 가. 연습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한 때 나. 강사가 동승하지 아니하고 교육을 실시한 때 다. 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육을 실시한 때	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7일 이하 운영 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 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 정지	2월초과 ~ 3월이하 운영 정지
		전문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7일 이하 운영 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 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 정지	2월초과 ~ 3월이하 운영 정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16.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이 신분증명서 또는 자격증을 달지 아니하고 교육을 실시한 때(학원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경고	7일 이하 운영 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 정지	1월초과 ~ 2월이하 운영 정지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전문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경고	7일 이하 운영 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 정지	1월초과 ~ 2월이하 운영 정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17. 운영기준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가. 강사의 선임·해임시의 조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나. 강사가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 다.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7일 이하 운영 정지	7일 초과 ~ 15일 이하 운영 정지	15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 정지	
	라. 영 별표 5 제9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마. 영 별표 5 제9호 가목 (3)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교육용 자	전문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7일 이하 운영 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동차를 갖추지 아니한 때(전문학원의 경우에 한한다.)			정지	정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20.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연습면허소지자에 대한 교육에 한한다)을 실시하거나 검정을 실시한 때	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1월 이하 운영 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 정지	등록 취소	
		전문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3월 이하 운영 정지	3월 초과 ~ 6월 이하 운영 정지	지정 취소· 등록 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21. 자동차 운전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때	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15일 이하 운영 정지	15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 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 정지	2월 초과 ~ 3월 이하 운영 정지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전문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15일 이하 운영 정지	15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 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 정지	2월 초과 ~ 3월 이하 운영 정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22. 법 제109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원등 설립·운영자가 연수교육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학원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때	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8호	경고	7일 이하 운영 정지	7일 초과 ~ 15일 이하 운영 정지	15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 정지
		전문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8호	경고	7일 이하 운영 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 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 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26.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전문학원)	법 제113조 제2항제1호	7일 이하 운영 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 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 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 정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31. 법 제108조의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에 관한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 한 사람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 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한 때 (전문학원) 제108조 (기능검정) ②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검정을 실시하 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학과교육과 제8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 차등의 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기	법 제113조 제2항제6호	3월 이하 운영 정지	3월 초과 ~ 6월 이하 운영 정지	지정 취소· 등록 취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능교육(이하 “장내기능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2.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32. 법 제10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한 때 (전문학원) 제108조 (기능검정) ③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113조 제2항제7호	3월 이하 운영 정지	3월 초과 ~ 6월 이하 운영 정지	지정 취소· 등록 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33. 기능검정원이 법 제108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기능검정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 (전문학원)	법 제113조 제2항제8호	3월 이하 운영 정지	3월 초과 ~ 6월 이하 운영 정지	지정 취소· 등록 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34. 법 제108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법 제113조 제2항제9호	3월 이하 운영	3월 초과 ~	지정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교부한 때 (전문학원)		정지	6월 이하 운영 정지	등록 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p>35. 법 제104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전문학원)</p> <p>제104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학감(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다만,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감을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감을 보좌하는 부학감을 두어야 한다.</p>	법 제113조 제3항제1호	제1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월 이하 보완명령	지정 취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p> <p>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비 및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는 것</p>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p>사.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p> <p>제13조 (감리법인의 준수사항) ②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p>	법 제16조제1항제7호	업무 정지 3개월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표17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제조업자) 13. 제조보안책임자 선임의무 위반	법 제27조 영 제54조	효력 정지 15일	효력 정지 3월	효력 정지 6월	취소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표17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제조업자) 14. 화약류 안정도 시험 불이행	법 제32조 영 제59조	효력 정지 15일	효력 정지 3월	효력 정지 6월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표17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제조업자) 15. 화약류 포장 기준 위반	법 제34조	효력 정지 15일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표17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제조업자) 16. 도난신고 불이행	법 제35조	효력 정지 15일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표17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제조업자) 17. 위해예방 규정 준수 불이행	법 제38조	효력 정지 15일	효력 정지 1월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표17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제조업자) 18. 자체안전교육 불성실 또는 자체안전점검 불이행	법 제39조 법 제40조	효력 정지 15일	효력 정지1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11) 법 제30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①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법 제32조제1항제11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1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2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②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조건의 준수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14) 가축분뇨업무담당자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4호	경고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4)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외에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5)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기술능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4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나) 사무실이나 실험실이 없는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4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다)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 또는 제도설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4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10)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9호	경고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가) 중간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허가 취소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1) 건설폐기물이 유출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허가 취소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경 고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다)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허가 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3)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	법 제25조제1항제6	경 고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법률 시행규칙 별표3	법으로 신고한 때 제14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개정 2006.12.28>)③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자본금·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전년도 용역이행실적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4)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제18조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 등) ①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제6호	경 고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허가 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15) 법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때 제28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신고)	법 제25조제1항제6호	경 고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19)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31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 정지 1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21)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 제33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제6호	경 고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24)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5호	허가 취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제42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후, 그 사용을 개시하기 위한 신고를 하기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2.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 가입</p> <p>제4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 ①시·도지사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 조치를 취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해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p> <p>1. 부도 또는 허가 취소로 인하여 영업활동이 중단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5	<p>(1)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결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p> <p>제12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법 제12조제5항 또는 제7항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조업 정지 60일	폐쇄 명령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2. 『하수도법』 제7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기상법 시행규칙 별표1	3. 법 제2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1년에 3회 이상 신고하지 아니한 때	가. 3회 거부한 때	법 제28조	경 고			
	제26조 (기상사업의 등록)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등	나. 4회 거부한 때	법 제28조	사업 정지 1월			
		다. 5회 이상 거부한 때	법 제28조	사업 정지 2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0조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 관측) ①기상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기상현상을 관측하거나 예보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p>					
<p>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p>	<p>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경우</p> <p>26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제23조제1항부터 제3</p>	<p>법 제36조</p>	<p>조업 정지</p>	<p>허가 취소 또는 폐쇄</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13) 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임명 등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경우	가)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법 제40조	선임명령	경 고	조업 정지 5일	조업 정지 10일
	제40조 (환경기술인)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36조 법 제40조	변경명령	경 고	경 고	조업 정지 5일
	②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	다)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법 제40조	경 고	경 고	경 고	조업 정지 5일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p> <p>③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하여야 한다.</p> <p>④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⑤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p>	<p>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와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p>	가) 적산전력계 미부착	법 제36조	경 고	경 고	경 고	조업 정지 5일
		나) 사업장 안의 일부 굴뚝자동측정기기 미부착	법 제36조	경 고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다) 사업장 안의 모든 굴뚝자동측정기기 미부착	법 제36조	경 고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라) 영 별표 3 제2호라목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된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지	법 제36조	경 고	경 고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아니한 경우</p> <p>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p>	<p>법 제36조</p>	경 고	경 고	폐 쇄	
	<p>4)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와 관련된 다음의 경우</p> <p>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특별대책지역이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의 사업장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p>	<p>법 제36조 및 법 제44조제7항(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p>	개선 명령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20일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고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⑤시·도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⑥제5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에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에 대하여도 제5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p> <p>⑦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45조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①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제19조 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4조제3항에 따</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④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⑤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들 각 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4조제7항을 준용한다.</p>					
<p>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p>	<p>5)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 탄화수소의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 미만인 경우 또는 공기과잉물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p> <p>제61조 (운행차의 수시 점검)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p>	<p>법 제70조 제1항</p>	<p>개선 명령</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6)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점검결과 일산화탄소 또는 배 기관 탄화수소의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 이상인 경우 제61조 (운행차의 수시 점검)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법 제70조 제1항	개선 명령 및 사용 정지 3일	개선 명령 및 사용 정지 5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7)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점검결과 매연의 농도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써 10% 미만 초과한 경우 제61조 (운행차의 수시 점검)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법 제70조 제1항	개선 명령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8)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점검결과 매연의 농도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10% 이상 초과한 경우 제61조 (운행차의 수시 점검)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법 제70조 제1항	개선 명령 및 사용 정지 3일	개선 명령 및 사용 정지 5일	개선 명령 및 사용 정지 7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9)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점검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정화용촉매·연료조절장치 등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떼어버리거나 임의 조작한 자의 경우 제61조 (운행차의 수시 점검)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법 제70조 제1항	개선 명령 및 사용 정지 3일			
대기환경보전법	10)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법 51조제4항	개선 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행규칙 별표36	5)부터 8)까지에 해당하더라도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입증한 경우 제70조 (운행차의 개선 명령)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자동차의 사용 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제한한다.	법 제7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9) 별표 27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 제3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대기환경보전법	3)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	법 제69조	경고	업무	업무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행규칙 별표36	지 아니한 경우 제68조 3. 그 밖에 정비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2호		정지 1개월	정지 3개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5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6)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품질관리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제27조 (품질관리인) ①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개인인 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가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③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	법 제48조제1항제5호	경 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7)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 (품질관리교육 <개정 2008.3.21>) ① 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아야 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에게도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48조제1항제5호	경 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8) 법 제30조, 이 규칙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30조 (준수	가)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경우	(1) 먹는샘물 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조시설 외의 다른 제조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경 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2) 수위·수량·수질의 자동 계측시설이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경 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3)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환하여	법 제48조제1항제5호	경 고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사항) 먹는물 관련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주지 아니한 경우			15일	1개월	2개월
	(4)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경 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5) 표지제조자가 반출한 병마개를 운반하면서 도난·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경 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6) 부담금증명표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병마개를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보관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경 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7) 자가 품질 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사례 발견시 해당 일자 생산제품의 수거·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를 취한 후 1주일 이	법 제48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8) 부담금증명표지를 위조·변조 또는 재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부담금증명표지를 사용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허가 취소			
		(9) 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먹는샘물 또는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먹는샘물에 대하여 자동계수기로 계측하지 아니하거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기계봉합 및 봉합해제 확인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경 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10)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건강진단을	법 제48조제1항제5호	경 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 를 먹는샘물 제조업무에 종 사시킨 경우					
		(11)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표 시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경 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나) 수처리 제 제조업 자의 경우	(1) 식품첨가물 외의 물질 을 방청제의 원료로 사용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3개월
		(2)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 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 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 부터 1년간 보존하지 아니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경 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3)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표	법	경 고	영업	영업	영업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8조제1항제5호		정지 15일	정지 1개월	정지 2개월
	다)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1) 보관창고에 유독물·농약·의약품·인화물질 등 보관중인 먹는샘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이 보관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경 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2)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환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경 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3) 수입 및 판매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경 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4)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표시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경 고	영업 정지15	영업 정지1개월	영업 정지2개월
	라) 정수기	(1) 수돗물을 불신하거나 소	법	영업	영업	영업	영업장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판매행위·광고를 한 경우	제48조제1항제5호	정지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폐쇄
	제조업자 및 수입판 매업자의 경우	(2) 품질검사기록부(제조업자만 해당한다),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경 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3) 판매된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교환 또는 환불하거나 수리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경 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3개월
		(4) 품목이 단종된 경우 해당 품목의 부품을 단종 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경 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5) 필터교환 등 판매 후 사후관리체계를 안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경 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6)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신고한 후 검사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	법 제48조제1항제5호	경 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여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7)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표시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경 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1개월	영업 정지2개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13)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다음과 같이 위반한 경우 ⑤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가) 1일 취수량에 관한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6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나) 그 밖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6호	경 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소음·진동규제법	2) 법 제9조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17조	조업 정지	허가 취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행규칙 별표21	<p>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p> <p>제9조 (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소음·진동을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소음·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배출시설의 기능·공정(工程) 또는 공장의 부지여건상 소음·진동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p> <p>2.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더라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p>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1	<p>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p>	<p>가)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p> <p>법 제18조</p>	<p>사용 중지 명령</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을 설치한 경우						
	제 8 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법 제18조	폐 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1	8)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 (환경기술인)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법 제17조	환경 기술인 선임 명령	경 고	조업 정지 5일	조업 정지 10일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③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그 관리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p> <p>④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p> <p>⑤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과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시기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1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공사장, 공장·사업장으로 한정함	법 제23조제1항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	소음·진동발생 행위의 중지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확성기로 한정함	법 제45조	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소리의 크기조절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소음·진동규제법	6)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 준수 사	법 제45조	경 고	경 고	지정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행규칙 별표21	항을 위반한 경우		제5항제3호			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4) 법 제35조에 따른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	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6호	조업 정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		
		나) 영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방지시설을 변경하여 가동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6호	개선 명령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20일	조업 정지 30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6)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9호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	
		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9호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허가 취소 또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폐쇄 명령	
	다)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9호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	
	라)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회석하여 배출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9호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	
	마)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인정을 받은 회석배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9호	경고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20일	회석 인정 취소
	바)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9호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	
	사) 가)부터 바)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법	조업 정지	허가 취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서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켜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제42조제1항제9호	3월 또는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13)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과 관련된 행정처분	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3호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경고	조업 정지 5일	조업 정지 10일
		나)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3호	경고	경고	경고	조업 정지 5일
		다) 환경기술인이 비상근인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3호	경고	경고	경고	조업 정지 5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14)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②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법 제50조제3항	경고	개선 명령	개선 명령	개선 명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1)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사업장 안의 일부 측정기기 미부착	법 제42조제1항제10호	경 고	경 고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나) 사업장 안의 모든 측		경 고	조업 정지	조업	허가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정기기 미부착			10일	정지 30일	또는 폐쇄 명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10) 법 제47조에 따른 환 경기술인과 관련된 행정 처분	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 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3 호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경고	조업 정지 5일	조업 정지 10일
		나)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3 호	경고	경고	경고	조업 정지 5일
		다) 환경기술인이 비상근 무인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3 호	경고	경고	경고	조업 정지 5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26) 그 밖에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경고	영업 정지 10일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2	바. 박제업자가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0조제5항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등록 취소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별표2	아. 법 제44조제3항을 위 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 하지 아니한 경우	1)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 호	면허정지 3개월			
		2) 1년을 초과한 경우	법	면허취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제8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2)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	경고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3)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가) 기·수시검사일을 초과한 기간이 1년 이내 인 경우	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월
		제22조 (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① 유독물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나) 기·수시검사일을 초과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	경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환경부 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의 정기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7)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와 관련된 행정처분	(가)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	유독물관리자선임 명령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5일
		(나)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이 미달된 경우	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	유독물관리자변경 명령	경고	경고	영업 정지 15일
		(다)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	경고	경고	경고	영업 정지 15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다. 배출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6조제3항	폐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의무 또는 주변지역 영	법 제19조제4항	사용 중지	사용 중지	폐쇄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향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일	20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	(7)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23조의6 제3항제6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12)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8)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제47조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①분뇨수집·운반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법 제49조제1항제8 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9)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분뇨수집·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보관 등 필요	법 제49조제1항제9 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한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7)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6 호	경고	영업 정지1개월	영업 정지3개 월	영업 정지6개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6) 처리시설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6 호	경고	영업 정지1개월	영업 정지3개 월	영업 정지6개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0	4) 법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시료채취기록부, 시험 기록부 또는 시약소모대장 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17조 제1항	경고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나) 측정 결과의 산출근거 가 부정확하거나 측정 결과 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법 17조 제1항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다) 측정기록부를 의뢰인에 게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17조 제1항	경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1개월
		라) 그 밖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17조 제1항	경고	경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5일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낙시어선어법	①시장·군수는 낙시어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쇄 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보전(피해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20조 (행정처분) 제1항 2, 3호	영업정지
농업협동조합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2회 이상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4. 조합등의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한 때 5. 조합등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등으로서 제142조제2항, 제146조 또는 제166조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회원을 말한다)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	제167조 (설립인가의 취소등)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164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 등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또는 감봉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p> <p>제142조 (중앙회의 지도)②회장은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회원에게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46조 (회원에 대한 감사등) ①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p> <p>②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③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를 당해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당해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견책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p>④회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회장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재요구하고, 동기간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66조 (경영지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행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조합의 부실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합등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등에 재산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p> <p>3. 조합의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예금 및 적금의 인출이 쇠도하거나 조합이 예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p> <p>4. 제142조제2항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 또는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회의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p> <p>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적용되는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하는 경우</p> <p>②제1항에서 “경영지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법·부실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2. 자금의 수급 및 여·수신에 관한 업무 3. 기타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p>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가 개시된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조합등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산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④중앙회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산실사의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등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하여 재산조회 및 가압류신청 등 손실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p> <p>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⑥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산실사의 결과 당해 조합등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p> <p>⑦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⑧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 기간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2조의3 (법인격 및 명칭) ①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p> <p>②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명칭중에 지역명 또는 사업명을 붙인 조</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니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승인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변경승인 없이 개발사업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변경한 경우	제17조 (개발사업계획의 취소 등) 제1항 제2호	취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외국인이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 또는 시험·연구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이하 “어업활동등”이라 한다)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어업등의 허가) ①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제8조 (시험·연구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승인) ①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시험·연구 또는 교육실습 기타 농림	제13조 (허가 및 승인의 취소등)	승인의 취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2. 어업에 관련된 탐색·잡어 3. 어획물의 보관·저장·가공 4.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p>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사료관리법	<p>①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경우 <p>제 7 조(사료의 용도 외 판매금지) ① 누구든지 수입한 사료를 다른 사료의 원료용 또는 동물등의 먹이,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p>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제1항 제3호	등록취소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영업정지
산림조합법	①산림청장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제127조 (설립인가의 취소	인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p> <p>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p> <p>3. 2회 이상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p> <p>4.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p> <p>5. 조합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으로서 제117조제2항, 제121조 또는 제126조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p> <p>제117조 (중앙회의 지도)②회장은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회원에게 경영개선,합병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21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를 당해 회원의</p>	<p>등) 제1항</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조합장과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당해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관련 임·직원에게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견책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p>④회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직원에게 대한 조치요구를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회장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재요구하고, 동기간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산림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제126조 (경영지도) ①산림청장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조합원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조합의 부실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합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인정되는 경우</p> <p>3. 조합의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예금 및 적금의 인출이 쇄도하거나 조합이 예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p> <p>4. 제117조제2항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 또는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p> <p>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적용되는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하는 경우</p> <p>②제1항에서 “경영지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법·부실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2. 자금의 수급 및 여·수신에 관한 업무 3. 기타 조합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p>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가 개시된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산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회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산실사의</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결과 위법·부당한 행위로 조합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및 가압류신청 등 손실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산림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⑥산림청장은 재산실사의 결과 당해 조합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직무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p> <p>⑦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⑧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산지관리법	<p>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p>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3호	허가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거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p> <p>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p> <p>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5조 (산지전용신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3.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6.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7.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9. 가축의 방목 10.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11.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p> <p>12. 물건의 적치</p> <p>13.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산림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2.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 이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p>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p> <p>④ 삭제 <2007.1.26></p> <p>⑤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2.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3.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4. 광물의 채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p> <p>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p> <p>⑦산림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 업무를 위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⑧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⑨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납부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취</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할 수 있다. <개정 2007.1.26></p> <p>1.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한 자 :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p> <p>2.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p> <p>③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의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 그 비용충당으로 감소된 복구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p> <p>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 ①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p> <p>②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때에 산림청장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7.1.26, 2008.2.29></p> <p>③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기간, 토석채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p> <p>④산림청장은 산지전용, 토석채취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p> <p>⑤복구비의 산정기준·산정방법·예치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산지관리법	<p>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석재의 굴취·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3.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 또는 제30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p> <p>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개정 2007.1.26>) ①산지에서 토석을 굴취</p>	제3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3호	허가 취소, 석재의 굴취·채취의 중지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p> <p>②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개정 2007.1.26>) ①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고로 갈음할 수 있다.</p> <p>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①산림청장은 일정한 지역안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굴취·채취하는 것이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존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산지관리법	<p>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석재의 굴취·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p> <p>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개정 2007.1.26>) ①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p>	<p>제3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개정 2007.1.26>) 제6호</p>	<p>허가취소, 석재의 굴취·채취의 중지</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p> <p>②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개정 2007.1.26>) ①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p> <p>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①산림청장은 일정한 지역안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굴취·채취</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하는 것이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존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 ①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p> <p>②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때에 산림청장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p> <p>③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기간, 토석채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p> <p>④산림청장은 산지전용, 토석채취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p> <p>⑤복구비의 산정기준·산정방법·예치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산지관리법	<p>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계약을 해제하거나 무상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p> <p>3. 토석을 매입한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p> <p>제35조 (국유림의 산지안의 토석의 매각 등 <개정 2007.1.26>)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26></p> <p>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도로법』·『철도건설법』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도로 또</p>	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제1항 제3호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는 철도를 설치·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당해 공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나.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광해)를 예방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굴취·채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용·공공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굴취·채취한 토석을 당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p>		
<p>산지관리법</p>	<p>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계약을 해제하거나 무상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p> <p>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p> <p>6. 그밖에 매각조건 또는 무상양여조건에 위반한 경우</p> <p>제35조 (국유림의 산지안의 토석의 매각 등 <개정 2007.1.26>)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26></p> <p>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도로법』·『철도건설법』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당해 공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광해)를 예방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굴취·채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용·공공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굴취·채취한 토석을 당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p> <p>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산사태·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채취를 일시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 설치·조립·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채광을 하는 자는 『광산보안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인가·허가 및 승인 등의 행</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7.1.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4.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5. 삭제 <2007.1.26>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7.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 <p>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한 자 :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 2.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 <p>③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의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 그 비용충당으로 감소된 복구비를</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p> <p>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 ①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p> <p>②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때에 산림청장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p> <p>③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기간, 토석채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p> <p>④산림청장은 산지전용, 토석채취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p> <p>⑤복구비의 산정기준·산정방법·예치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산지관리법	<p>산림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6></p> <p>1.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한 자 :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p> <p>2.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p> <p>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 ①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제41조 (복구의 대집행 등)	대집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산사태·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채취를 일시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 설치·조립·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채광을 하는 자는 『광산보안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인가·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7.1.26></p> <p>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p> <p>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당해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 행하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토석의 굴취·채취가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p>		
선박직원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9조 (면허의 취소등)	면허취소, 업무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견책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8.1, 1997.8.22, 1999.2.5, 2001.1.29, 2005.3.31, 2008.2.29></p> <p>1.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무한 때 제13조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①선박소유자는 선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허가된 해기사를 그 직의 선박직원으로서 승무시킬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8.2.29></p> <p>1.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항행하는 경우 2. 입거·수리·계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항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p> <p>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중 등급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8.2.29></p> <p>제14조 (해기사의 승무범위) 선박직원으로서 승무하는 해기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에 따라 승무하여야 한다.</p>		
선박평형수관리법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	제18조 (형식승인의 취소	형식승인의 취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p>2. 제조하거나 수입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제1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제17조 (형식승인 및 검정) ①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그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에 미리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p>	<p>등) 제2호</p>	
선박평형수관리법	<p>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1.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p>	<p>제26조 (등록의 취소 등) 제1항</p>	<p>취소, 업무정지</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6. 제2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p> <p>7.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p> <p>제22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p>제23조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의무) ①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을 처리하여야 하고, 선박평형수에 관한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처리대장을 해당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선박으로부터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수거확인증을 작성하고 해당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의 수거를 위탁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처리대장 및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의 작성 방법과 보존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제24조 (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처리를 위탁받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지하는 경우에는 그 적절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선주상호보험조합	<p>①국토해양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p> <p>2. 설립인가의 내용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p>	제54조 (설립인가의 취소등) 제1항 제2호	취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p>①산림청장은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3></p> <p>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p> <p>제15조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①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 그 밖의 관련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p>	제17조 (시정요구) 제1항 제4호	6월 기간의 시정요구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정에 의한 수목유전자원의 국외 반출 등에 관하여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①산림청장은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의3 (인증의 취소 등)	6월 이내 시정 요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인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제35조 제1항 제4호	영업정지·영업폐쇄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p> <p>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p> <p>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p> <p>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p>		
<p>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p>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p>	<p>제35조 제2항 제5호</p>	<p>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영업폐쇄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p>	<p>①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p> <p>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p> <p>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p> <p>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p>	<p>제36조 제1항 제2호</p>	<p>과징금 부과</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p>	<p>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4.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포·게시한 광고·선전물 제34조 (광고·선전의 제한)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3.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4.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p>②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8조 제3항 제4호</p>	<p>게임물·광고·선전물의 수거·폐기·삭제</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경륜·경정법	③제1항에 따라 경주장 설치를 허가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경주장 설치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5 조 (경주장의 설치 등) ①경주사업자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5조 제3항	허가취소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3조 제1호	허가취소
관광진흥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갖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 제2항	허가취소
관광진흥법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31조 제2항	허가취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관광진흥법	<p>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3.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관광사업의 양수 등)</p> <p>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⑤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제35조 제1항 제3호	승인취소 전부·일부 정지 개선명령
관광진흥법	<p>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p>	제35조 제1항 제4호	승인취소 전부·일부 정지 개선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p> <p>제9조 (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p> <p><개정 2008.2.29</p>		
관광진흥법	<p>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5.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경우</p> <p>제11조 (관광시설의 처분 및 타인 경영 <개정 2007.7.19>)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p>	제35조 제1항 제5호	승인취소 전부·일부 정지 개선명령
관광진흥법	<p>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p>	제35조 제1항 제6호	승인취소 전부·일부 정지 개선명령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6.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p> <p>제12조 (기획여행의 실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p>		
관광진흥법	<p>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7. 제14조에 따른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p> <p>제14조 (여행계약서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약관을 적은 서면을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p>	제35조 제1항 제7호	승인취소 전부·일부 정지 개선명령
관광진흥법	<p>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p>	제35조 제1항 제8호	승인취소 전부·일부 정지 개선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8.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를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p> <p>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5></p> <p>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관광진흥법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35조 제1항 제8호	승인취소 전부·일부 정지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9. 제20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p> <p>제20조 (분양 및 회원 모집) ①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p> <p>⑤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지분(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2. 시설의 이용 3.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p>개선명령</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5.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 6.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그 밖에 공유자·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광진흥법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8조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①카지노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4.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제35조 제1항 제12호	승인취소 전부·일부 정지 개선명령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행위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 8.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②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일 최소 영업시간 2. 게임 테이블의 집전함(집전함) 부착 및 내기금액 한도액의 표시 의무 3.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4. 전산시설·환전소·계산실·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5.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참여 불가 등 행위금지사항		
관광진흥법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	제35조 제1항 제13호	승인취소 전부·일부 정지 개선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13.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 (기금 납부) ①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p> <p>②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④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관광진흥법	<p>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15.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p>	제35조 제1항 제15호	승인취소 전부·일부 정지 개선명령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안전성검사 등) ①유원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p>		
관광진흥법	<p>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1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p> <p>제34조 (영업질서 유지 등) ①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②유원시설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유기사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제35조 제1항 제16호	승인취소 전부·일부 정지 개선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관광진흥법	<p>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17.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관광사업자가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제39조 (교육) ①관광종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관광사업자는 관광종사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p>	제35조 제1항 제17호	승인취소 전부·일부 정지 개선명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p>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p> <p>제52조 (등록 등) ①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1. 정관의 목적사업 2.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p>	제56조 제4호	등록취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3. 사업관리자의 명칭</p> <p>4. 자산관리자의 명칭</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일 것 2.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관리자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3.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4. 설립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5.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6. 등록신청서류 중에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 <p>③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5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문화재보호법	<p>① 시·도지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6.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수리 업무를 행한 경우 제17조(수리 등)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면서 수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 수리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 수행할 것 2. 문화재 수리 설계도서 및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 기준에 적합하게 수리 업무를 수행할 것 3. 문화재 수리공사의 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수리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 제1항 제6호	등록취소 업무정지명령
문화재보호법	<p>① 시·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p>	제28조 제1항 제2호	등록취소 영업정지명령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2.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수리 업무를 행한 경우 제17조 (수리 등)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면서 수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 수리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 수행할 것 2. 문화재 수리 설계도서 및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 기준에 적합하게 수리 업무를 수행할 것 3. 문화재 수리공사의 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수리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문화재보호법	<p>① 시·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5.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p> <p>제28조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② 수리업자가 제27조제1항</p>	제28조 제1항 제5호	등록취소 영업정지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에 따른 기술 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기간 동안 해당 수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p> <p>2.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p>		
문화재보호법	<p>① 시·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6.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 정비를 포함한다) 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게 되거나 원형을 훼손하게 된 경우</p>	제28조 제1항 제6호	등록취소 영업정지명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p>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정지시켜야 한다.</p> <p>1.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p> <p>제29조 (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p>	제42조 제1호	상영금지· 상영중인 영화 정지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p>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고편·광고영화 등 영화 상영 전에 상영되는 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p>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p>	<p>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정지시켜야 한다.</p> <p>5.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화</p> <p>제41조 (영화상영의 신고) ①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영화(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p>	<p>제42조 제5호</p>	<p>상영금지·상영중인 영화 정지</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통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p>①시·도지사는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p>	제67조 제1항 제1호	영업폐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p>①시·도지사는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제67조 제1항 제2호	영업정지·영업폐쇄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2.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p> <p>제53조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2.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당해 비디오물 4.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비디오물 5.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p>①시·도지사는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p>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p>	제67조 제1항 제4호	영업폐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p>	제67조 제2항 제2호	영업정지·등록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2.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p> <p>제53조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2.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당해 비디오물 4.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비디오물 5.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 <p>②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p>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제67조 제2항 제3호	영업정지 등록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3.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제58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①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p>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5.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제62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에 한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킬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제67조 제2항 제5호</p>	<p>영업정지 등록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3. 비디오물감상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p> <p>가.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p> <p>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p> <p>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p> <p>4. 비디오물감상실업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p> <p>5.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할 것</p>		
방송법	<p>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p> <p>제8조 (소유제한등) ①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p> <p>②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2006.10.27></p> <p>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p>	제18조 제2호	허가,승인,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p> <p>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p> <p>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2.12.18, 2003.5.29, 2004.3.22></p> <p>④『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7.1.26></p> <p>⑤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p> <p>⑥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방송분야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6.10.27></p> <p>⑦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 법 시행 당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2007.7.27></p> <p>⑧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⑨정당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4.3.12></p> <p>⑩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대상자에는 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p> <p>⑪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p> <p>⑫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3.22, 2008.2.29></p> <p>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06.10.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종교단체 4. 정당 5.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p>⑭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1개를 초과하여 방송국을 소유할 수 없다.</p>		
방송법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①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	제18조 제4호	허가,승인,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p>② 위성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3.22></p> <p>③ 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제외한다) 및 전송망사업을 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3.22></p> <p>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 <신설 2004.3.22></p> <p>⑤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 내</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4.3.22></p> <p>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p>3.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 (초과소유 주주 등에 관한 제한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한 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제13조 (시장점유율 제한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제24조 제1항 제3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1년
전파법	3. 제21조제4항(제26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증 또는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	제72조 제1항 제3호	허가취소 또는 운용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설신고한 경우 그 증명서에 적혀있는 준공기한(제24조제2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p> <p>제21조 (무선국의 개설허가 등 <개정 2008.6.13>)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적합하면 무선국 개설을 허가하고 신청인에게 무선국의 준공기한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제19조 (무선국의 개설 <개정 2008.6.13>)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국가간·지역간 전파혼신 방지를 위하여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인명안전 등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아닌 무선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2. 수신전용의 무선국 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전파법	4.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제72조 제1항 제4호	허가취소 또는 운용정지 6월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23조 (허가의 승계 <개정 2007.12.21>)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p>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입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6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p> <p>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p> <p>4. 제2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이 법, 『형법』 제228조,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p>	제18조 제1항 제2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3.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 제 7 조 (겸업금지)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제18조 제1항 제3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8.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제10조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④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제1항 제8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12조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②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제1항 제11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1년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p>12.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p> <p>제13조 (개인정보의 보호)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제18조 제1항 제12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p>15.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제17조 (시정 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를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8조 제1항 제15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p>16.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p> <p>제25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 <p>②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18조 제1항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별법	<p>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p> <p>제 6 조 (조건을 이행)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된 자(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자 또는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를 부여</p>	제10조 제1항	면허취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한다. 다만,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은 장학금지급기간 및 근무 지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내지 5년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83.12.20, 1987.11.28, 1997.12.13, 2008.2.29></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허를 받은 자는 그 조건의 이행기간 동안 성실히 공중보건의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잔여조건이행기간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0, 1997.12.13,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때 3.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때 3의2.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때 3의3.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조산의 수습을 받는 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p>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허를 받은 자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외에서 대한민국국적을 가지고 전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얻은 때에는 조건의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83.12.20, 1997.12.13, 2008.2.29></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공중위생관리법	1.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8조 제1호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6월
공중위생관리법	2.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제 6 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1. 금치산자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제7조 제2호	면허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제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32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제3항 제2호	영업정지 6월 또는 폐쇄명령 (재가장기요양기관)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p>	<p>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p> <p>제 5 조 (마약류취급의 제한) ①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 법에 의하여 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44조 제1항 제1호 가목</p>	<p>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p>
<p>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p>	<p>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교부받지 아니한 때</p> <p>제 7 조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②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 6 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①마약류취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p>	<p>제44조 제1항 제1호 다목</p>	<p>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3.28></p> <p>1.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약사법에 의한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p> <p>2.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는 『약사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p> <p>3. 마약류도매업자는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p> <p>4. 마약류취급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자는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p> <p>5. 대마재배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고자 하는 자</p> <p>②마약류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p>		
<p>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p>	<p>라.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양도한 때</p>	<p>제44조 제1항 제1호 라목</p>	<p>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 9 조 (수수 등의 제한)</p> <p>②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소지·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p>③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다른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류(제제를 제외한다)를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p>		일부의 정지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p>마. 제10조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교환하지 아니하고 마약을 매매·수수한 때</p> <p>제10조 (구입서·판매서) ①마약류취급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p>	제44조 제1항 제1호 마목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약을 매매 기타 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바.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때 제10조 (구입서·판매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는 교환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 바목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차.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저장한 때 제15조 (마약류의 저장 <개정 2002.12.26>) 마약류취급자와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에 대하여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제44조 제1항 제1호 차목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타.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제17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제44조 제1항 제1호 타목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p>	<p>너.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때</p> <p>제33조 (마약류관리자) ①4인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의 마약류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당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중의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당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p> <p>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p>	<p>제44조 제1항 제1호 너목</p>	<p>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p>
<p>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p>	<p>머. 제38조에 따른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p> <p>제38조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개정 2002.12.26>) ①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감독 및 품질관리 기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p>	<p>제44조 제1항 제1호 머목</p>	<p>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마약류취급자는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26></p> <p>③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p>		
모자보건법	<p>1.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p> <p>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 ①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력·시설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제15조의8 제1호	시정명령
모자보건법	<p>3.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제15조의4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및 위생 관리와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p>	제15조의8 제3호	시정명령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비치하여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이를 관리할 것 2.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임신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p>모자보건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제15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p>제15조의 9 제2호</p>	<p>사업장 폐쇄</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사회복지사업법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제26조 제1항 제7호	시정명령 또는 허가취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p>1.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 내지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27조, 제28조제2항 내지 제5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3항·제4항, 제33조제2항, 제35조,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36조 또는 제37조제1항 후단·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p> <p>제9조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6.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배아생성의료기관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배아연구기관 제23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한 유전자검 	제40조 제1항 제1호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사기관</p> <p>5.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유전자은행</p> <p>6.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한 유전자치료기관</p> <p>7. 그 밖에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이용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p> <p>③제1항 각호의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행하여지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관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10조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기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 외의 종사자와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1인 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5></p> <p>③기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11조 (인간복제의 금지) ①누구든지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서는 아니되며,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2조 (이중간의 착상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동물의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개정 2008.6.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시키거나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다만, 의학적으로 인간의 정자의 활동성 시험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2. 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거나 핵이 제거된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 3. 인간의 배아와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4. 다른 유전정보를 가진 인간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p>③누구든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생성된 것을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13조 (배아의 생성 등) ①누구든지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누구든지 임신을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2. 사망한 자의 정자 또는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3. 미성년자의 정자 또는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p>③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4조 (배아생성의료기관) ①인공수태시술을 위하여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보관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제15조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①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배아 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배아생성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하는 때에는 정자제공자·난자제공자·인공수태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이하 “동의권자”라 한다)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③배아생성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권자에게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p> <p>제15조의2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자의 채취 전에 난자제공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로부터 난자를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5조의3 (난자채취 빈도의 제한)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빈도 이상으로 동일한 난자제공자로부터 난자를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16조 (배아의 보존기간 및 폐기)②배아생성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이 도래한 배아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배아를 폐기하여야 한다.</p> <p>③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p> <p>제17조 (잔여배아의 연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아의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에 한하여 체외에서 다음 각호의 1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잔여배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권자로부터 해당 목적으로의 이용에 대하여 새로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2.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p>제19조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배아연구기관(이하 “배아연구기관”이라 한다)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아연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p> <p>제20조 (잔여배아의 제공 및 관리) ①배아생성의료기관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을 얻은 배아연구기관에게 연구에 필요한 잔여배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잔여배아의 보관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아연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배아의 제공절차, 경비의 산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③배아생성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은 잔여배아의 보관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④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배아연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잔여배아를 제공받은 후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잔여배아의 폐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연구기관”으로 본다.</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22조 (체세포핵이식행위) ①누구든지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목적에 따라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 (유전자검사기관 등)</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p> <p>④유전자검사기관은 유전자검사의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25조 (유전자검사의 제한) ①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외에는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질병의 진단과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6조 (유전자검사의 동의) ①유전자검사기관 또는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자가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자연구에 쓰일 검사대사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하는 때에는 검사대사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자연구의 목적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외로 검사대사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사물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포함 시킬 것인지 여부 4. 검사대사물의 보존기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동意的 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 <p>②유전자검사기관외의 자가 검사대사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로부터 제1항의 규</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정에 의한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심신박약자 또는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동의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심신박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동의를 얻고자 하는 자는 미리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유전자검사의 목적과 방법, 예측되는 유전자검사의 결과와 의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p> <p>제27조 (검사대상물의 제공) ①유전자검사기관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연구목적으로 검사대상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자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은행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에게 검사대상물을 제공할 수 있다.</p> <p>②유전자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검사대상물에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개인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에</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대하여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동의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③유전자검사기관,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자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은행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전자검사기관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은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검사대상물을 제공받은 자가 다른 연구자 또는 유전자은행에 검사대상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28조 (검사대상물의 폐기)</p> <p>②유전자검사기관등은 보존기간 경과후 지체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유전자검사기관등은 검사대상물의 보관중에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검사대상물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④유전자검사기관등은 검사대상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p> <p>⑤유전자검사기관등은 휴업·폐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검사대상물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처리 또는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29조 (기록의 관리 및 열람) ①유전자검사기관등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2. 유전자검사 결과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관한 기록 <p>②유전자검사기관등은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32조 (유전자은행의 허가 및 신고)</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유전자은행이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그 개설에 관한 허가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④유전자은행의 장은 유전자은행의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33조 (유전정보등의 제공) ②유전자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이용계획서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전정보등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35조 (유전정보등의 보호) ①유전자은행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직무상 얻거나 알게된 유전정보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환자의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기록 및 진료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환자와 동일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11></p> <p>제35조의2 (유전정보등의 관리 등) ① 유전자은행은 수집한 모든 유전정보등을 익명화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전자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p> <p>제36조 (유전자치료) ①누구든지 유전자치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당되는 경우외에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전질환·암·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의 치료 2.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이용가능한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자·난자·배아 또는 태아에 대하여 유전자치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37조 (유전자치료기관) ①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이하 “유전자치료기관”이라 한다)은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치료의 목적 2. 예측되는 치료결과 및 그 부작용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p>	<p>2. 제21조·제30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제21조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배아연구기관의 준수사항)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배아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에 기재된 목적으로 배아를 취급할 것 2. 잔여배아의 보관·취급·폐기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3. 배아연구기관은 당해 기관에서 행하여지는 연구로 인하여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의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 <p>제30조 (유전자검사기관등의 준수사항) ①유전자검사기관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동의 내용 2. 유전정보의 보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 	<p>제40조 제1항 제2호</p>	<p>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의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p> <p>②유전자검사기관등은 유전자검사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제34조 (유전자은행의 장의 준수사항) ①유전자은행의 장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p> <p>②유전자은행의 장은 유전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은행의 장은 유전정보등의 보관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p>	<p>3. 제38조제1항·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제38조 (보고와 조사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아생성의료기관·배아연구기관·유전자검사기관등·유전자치료기관(이하 “피감독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p>	<p>제40조 제1항 제3호</p>	<p>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연구·개발·이용의 중단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제39조 (폐기명령)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피감독기관 또는 그 종사자,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줄기세포주를 등록·제공 또는 이용한 자에 대하여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항,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0조제1항·제4항, 제20조의2제1항, 제20조의3제1항·제3항, 제20조의4제2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성·보관 또는 제공된 배아·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 또는 난자 및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제4항, 제28조제2항·제3항 또는 제3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취·보관 또는 제공된 검사대상물을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또는 제28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8.6.5></p> <p>제40조 (개선명령)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피감독기관에 대하여 그</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시설·인력 등이 제14조제2항·제18조·제23조 또는 제32조제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연구·채취·보관 또는 배아의 생성 등을 하는 경우에 생명윤리나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p>	<p>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p> <p>제 5 조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p> <p>②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p>	<p>제11조 제1항 제2호</p>	<p>시정명령</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p>	<p>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제11조 (시정명령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3조제4</p>	<p>제11조 제2항 제1호</p>	<p>사업정지 또는 폐쇄</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 6 조 (기부식품의 무상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모집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제2항 제2호	사업정지 또는 폐쇄
식품위생법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영업을 하는 자와 기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제 3 조 (식품등의 취급) ①판매(판매외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 제1항	시정명령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식품위생법	<p>1.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제1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후단·제4항·제5항 후단 및 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29조,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p> <p>제 4 조 (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2.8.26></p> <p>1.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p> <p>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p> <p>3.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p> <p>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p> <p>5.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p>	제58조 제1항 제1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또는 전부·일부정지 또는 폐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p> <p>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성 평가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p> <p>7.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p> <p>8. 삭제 <1995.1.5></p> <p>제 5 조 (병육등의 판매등 금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그 염려가 있는 동물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은 동물의 고기·뼈·젓·장기 또는 혈액은 이를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p> <p>제 6 조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등 금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7 조 (기준과 규격)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p> <p>제 8 조 (유독기구등의 판매·사용금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어 이에 유해한 영향을 줌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p> <p>제 9 조 (기준과 규격)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하여</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기타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p> <p>제10조 (표시기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p> <p>제10조의2 (식품의 영양표시 및 교육·홍보) ②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영양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10조의3 (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①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영업장의 면적(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 김치류 또는 육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유통질서확립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쌀·김치류의 원</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산지와 육류의 원산지 및 종류(이하 “원산지등”이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p> <p>1. 쌀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2. 김치류 배추김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3. 육류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제11조 (허위표시등의 금지) ①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쌀의 원산지 및 식육의 원산지등 표시,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p> <p>제16조 (수입식품등의 신고등) ①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고하여야 한다. <</p> <p>제19조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①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p> <p>제22조 (영업의 허가등)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동항 후단의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0.1.12></p> <p>⑤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8.12.31, 1991.12.14, 2000.1.12, 2002.8.26, 2005.3.31></p> <p>⑥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26조 (건강진단) ③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p> <p>제27조 (위생교육) ⑤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p> <p>제29조 (품질관리 및 보고) ①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제조공정 기타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제1항의 영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1조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①식품접객영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0.1.12, 2002.8.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또는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p> <p>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악사·댄서·무용수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2.21></p> <p>④ 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2.21></p> <p>제34조 (조리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가 되어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식품위생법	<p>3. 제2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p> <p>제24조 (영업허가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12.21></p> <p>1. 당해 영업의 시설이 제21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p>	제58조 제1항 제3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또는 전부·일부정지 또는 폐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5.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지산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식품위생법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제한에 위반한 때 제30조 (영업의 제한) ①시·도지사는 영업의 질서유지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중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8조 제1항 제4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또는 전부·일부정지 또는 폐쇄
식품위생법	4의2. 제31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제31조의2 (위해식품등의 회수) ①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당해 식품등이 제4조 내지 제6조·제7조제4항·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유통중인 당해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 제1항 제4의2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또는 전부·일부정지 또는 폐쇄
식품위생법	4의3.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제58조 제1항 제4의3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또는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32조의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한 때에는 그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전부·일부정지 또는 폐쇄
식품위생법	<p>5.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6조의2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p> <p>제55조 (시정명령)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영업을 하는 자와 기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0.1.12></p> <p>제56조 (폐기처분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도·처리방법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0.1.12, 2002.8.26></p>	제58조 제1항 제5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또는 전부·일부정지 또는 폐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 식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식품등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제56조의2 (위해식품등의 공표<개정 2005.1.27>)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2.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p>제57조 (시설의 개수명령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p>		
식품위생법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58조 제1항 제6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또는 전부·일부정지 또는 폐쇄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식품위생법	<p>1.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p> <p>제38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91.12.14, 1995.12.29, 2000.1.12, 2007.12.21></p> <p>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전염병환자</p> <p>3.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p> <p>4.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제63조 제1항 제1호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6월
식품위생법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63조 제1항 제4호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6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p>3.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경우</p> <p>제11조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 ①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로 등록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내용·대상·시기·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p>	제24조 제1항 제3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16조 (실험동물공급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① 제12조에 따라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 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상·시기·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p>		
<p>실험동물에 관한 법률</p>	<p>3.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경우</p> <p>제11조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 ①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로 등록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내용·대상·시기·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p> <p>제16조 (실험동물공급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① 제12조에 따라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 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상·시기·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p>	<p>제24조 제2항 제3호</p>	<p>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6월</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p> <p>제8조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①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동물실험시설에는 해당 시설 및 실험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실험동물의 적절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운영상태가 우수한 동물실험시설을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지정사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관련 사업자 또는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동물실험시설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12조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의 생산·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실험동물공급자”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동물실험시설에서 유지 또는 연구 과정 중 생산된 실험동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제15조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실험동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관리상태가 우수한 실험동물생산시설을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지정사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된 경우가 아니면 실험동물의 운송용기나 문서 등에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약사법	<p>1.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 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0.17></p> <p>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금치산자·한정치산자</p> <p>3.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p> <p>4. 『약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료법』·『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p> <p>5.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제76조 제1항 제1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제조소 폐쇄
약사법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76조 제1항 제3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제조소 폐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약사법	<p>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p> <p>제 5 조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 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0.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3.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 4. 『약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료법』·『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79조 제1항	면허취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1. 목적 외의 사업을 한 때	제7조 제1호	등록취소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2.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제7조 제2호	등록취소
위생사에 관한 법률	1.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4 조 (시험자격의 제한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위생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0.17>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이 법 또는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제7조 제1호	면허취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 제6조제2항·제8조·제18조제2항·제39조·제40조 또는 제4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 6 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②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	제55조 제1항 제1호	면허 또는 자격취소 면허 또는 자격 정지 6월 (응급의료종사자)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2.3.25]</p> <p>제 8 조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①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에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위급의 정도에 따라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8조 (다수의 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 ②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p> <p>제39조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 응급구조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과 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2008.2.29></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40조 (비밀준수의 의무)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49조 (출동 및 처치기록) ①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당해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사에 갈음하여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이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제출받은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매월 그 기록을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p>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p>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때</p> <p>제32조 (비상진료체계)②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제55조 제1항 제3호	면허 또는 자격취소 면허 또는 자격 정지 6월 (응급의료종사자)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55조 제1항 제7호	면허 또는 자격취소 면허 또는 자격 정지 6월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p>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1조제3항 내지 제5항,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p> <p>제18조 (다수의 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 ②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p> <p>제28조 (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등) ①정보센터의 장은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3.25></p> <p>②정보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대</p>	제55조 제1항 제1호	허가취소 또는 업무 정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구급차등의 출동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의 요청이나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p> <p>제32조 (비상진료체계) ①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시 진료할 준비체계(이하 “비상진료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p> <p>제33조 (예비병상의 확보) ①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자가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이 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2.3.25]</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4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 ②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 4호의 규정에 의한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2008.2.29></p> <p>제45조 (다른 용도에의 사용금지) ①구급차등은 다음 각호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체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의 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 5.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용도 <p>제47조 (구급차등의 장비) ①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의료기관 및 정보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48조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p> <p>제49조 (출동 및 처치기록) ①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당해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사에 갈음하여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이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제출받은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매월 그 기록을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기록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51조 (이송업의 허가 등)③이송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④이송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p> <p>⑤이송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p> <p>제52조 (지도의사) ①이송업자는 상담·구조·이송 및 응급처치를 지도받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지역별로 지도의사를 두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53조 (휴업 등의 신고) 이송업자는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54조 (영업의 승계) ①이송업자가 사망하거나 그营业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营业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립되는 법인이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2.1.26, 2005.3.31></p> <p>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p>5.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때</p> <p>제50조 (지도·감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p>	제55조 제2항 제5호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55조 제2항 제6호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의료기기법	1. 제6조제6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제32조 제1항 제1호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 6 조 (제조업의 허가 등)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7.10.17>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지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마약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의료기기법	2. 제6조제6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음이 판명된 때 제 6 조 (제조업의 허가 등)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7.10.17> 5. 이 법을 위반하여 제조업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2조 제1항 제2호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의료기기법	3. 제7조제1항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 7 조 (조건부허가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업허가, 제조품목허가 또는 제조품목신고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 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 제1항 제3호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의료기기법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32조 제1항 제5호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1.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제 5 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8, 2001.12.19, 2007.10.17, 2007.12.14>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4조·제269조·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제21조 제1항 제1호	면허취소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2조 제1항 제3호	자격정지6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23조	시정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등)③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p> <p>제13조 (폐업등의 신고<개정 1999.2.8>)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p>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p>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때</p> <p>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등)②안경사는 1개소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p>	제24조 제1항 제1호	영업정지 6월 또는 등록취소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p>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제23조 (시정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제24조 제1항 제5호	영업정지 6월 또는 등록취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의료법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제51조 제1호	허가 취소
의료법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제51조 제4호	허가 취소
의료법	<p>의료기관이 제16조제2항, 제23조 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7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제5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p> <p>제16조 (세탁물 처리) ①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p> <p>②제1항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23조 (전자의무기록)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p>	제63조	시정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34조 (원격의료)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제3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제36조 (준수사항)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p> <p>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①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절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2008.2.29></p> <p>②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41조 (당직의료인)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p> <p>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p>②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③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43조 (진료과목 표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제44조 (비전속 전문의) 종합병원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는 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병원에 전속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p> <p>제45조 (의료보수) 의료기관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①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④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p> <p>⑤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p> <p>⑥제5항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요건과 범위, 진료 항목과 추가 비용의 산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제47조 (병원감염 예방) ①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③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 광고를 하지 못한다.</p> <p>④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p>제57조 (광고의 심의) ①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58조 (의료기관 평가) ⑤의료기관 평가 대상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p> <p>제6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②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 3 조 (의료기관) ③“종합병원”이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에 따른 진료과목마다 전속(전속)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에 따른 9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에 따른 7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의료법	<p>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p> <p>제61조 (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p>	제64조 제3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제59조 (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p> <p>제63조 (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6조제2항, 제23조 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7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제5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의료법	<p>5. 제33조제5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p> <p>제33조 (개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제64조 제5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p> <p>③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p> <p>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2.29></p> <p>제40조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p> <p>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형태로 표현되는 광고</p> <p>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p> <p>10.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p> <p>③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p> <p>④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p> <p>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p> <p>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p> <p>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의료법	<p>6.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제63조 (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6조제2항, 제23조 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7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p>	제64조 제6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조제1항, 제58조제5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의료법	<p>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제 8 조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p> <p>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p> <p>3. 금지산자·한정치산자</p> <p>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p>	제65조 제1항 제1호	면허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의료법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5조 제1항 제3호	면허취소
의료법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의료인은 태어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 제1항 제4호	면허취소
의료법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66조 제1항 제8호	자격정지 1년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25조 제1항 제1호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13조 (조직은행의 허가 등) ①조직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 에 관한 법률	<p>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한 경우</p> <p>제23조 (보고·조사 등) ①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직은행·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②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은행 등의 관계서류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제25조 제1항 제2호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 에 관한 법률	<p>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제24조 (시정명령)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p>	제25조 제1항 제3호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9조 제1항 제4호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등기증자등의 등록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장기등기증자등의 등록) ②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장기등기증자의 경우 제11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여부와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등록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의 여부. 다만,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장기등이식대기자의 경우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적합한지의 여부	제29조 제1호	시정명령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③등록기관의 장은 장래에 장기등을 기증할 의사표시만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동의 여부만을 확인한 후 장기등 기증희망자로 등록할 수 있다.</p> <p>④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p>1의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지 아니한 경우</p> <p>제16조 (뇌사의 판정등) ①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사 2인 이상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8.2.29></p> <p>제15조 (뇌사의 판정신청) ①뇌사로 추정되는 자(이하 “뇌사판정대상자”라 한다)의 장기등의 기증을 위한 뇌사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한 검사기록 및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14조</p>	제29조 1의2호	시정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의료기관(이하 “뇌사판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뇌사판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p>	<p>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의 사본등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p> <p>제16조 (뇌사의 판정등)</p> <p>④뇌사판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뇌사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사본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료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뇌사판정 신청자에 대하여는 뇌사판정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29조 제2호</p>	<p>시정명령</p>
<p>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p>	<p>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p> <p>제24조 (기록의 작성 및 장기등의 적출사실 통보등) ①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p>	<p>제29조 제3호</p>	<p>시정명령</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그 기록을 작성하여 당해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이식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p>4.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제24조 (기록의 작성 및 장기등의 적출사실 통보등) ①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록을 작성하여 당해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이식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제출받은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뇌사자의 장기등을 적출한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제29조 제4호	시정명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p>1. 제12조제1항 전단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인력등을 갖추지 아니한 때</p> <p>제12조 (장기이식등록기관) ①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인력등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p>	제30조 제1항 제1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1년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업무의 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등록기관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제21조 (장기이식의료기관) ②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장비·인력등을 갖추어야 한다.</p>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p>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한 때</p> <p>제28조 (보고·조사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의 기증·적출 또는 이식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p> <p>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등의 관계서류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제30조 제1항 제3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1년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업무의 정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30조 제1항 제4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1년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29조 (시정명령)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등기증자등의 등록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의 사본등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p>(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업무의 정지)</p>
<p>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p>	<p>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인력등을 갖추지 아니한 때</p> <p>제14조 (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 ①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30조 제2항 제1호</p>	<p>업무정지 3년 (뇌사판정업무의 정지)</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②뇌사판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전까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인력등을 갖추고, 당해 의료기관에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p>	<p>2.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p> <p>제14조 (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 ②뇌사판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전까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인력등을 갖추고, 당해 의료기관에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사 3인 이상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8.26></p> <p>④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 제2항 제2호</p>	<p>업무정지 3년 (뇌사판정업무를 정지)</p>
<p>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p>	<p>4.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한 때</p> <p>제28조 (보고·조사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의 기증·적출 또는 이식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p>	<p>제30조 제2항 제4호</p>	<p>업무정지 3년 (뇌사판정업무를 정지)</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p> <p>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등의 관계서류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p>5.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제29조 (시정명령)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p> <p>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등기증자등의 등록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p> <p>1의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지 아니한 경우</p> <p>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의 사본등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p>	제30조 제2항 제5호	업무정지 3년 (뇌사판정업무의 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0조 제2항 6호	업무정지 3년 (뇌사판정업무의 정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1.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6조의2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①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의 신청이 된 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하여 장기등 기증, 뇌사판정, 장기적출·이식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등록기관일 것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뇌사판정기관일 것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장기이식의료기관일 것 4.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는 것	제30조 제3항 제1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1년 (뇌사판정대상자관리업무의 정지)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p>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한 경우</p> <p>제28조 (보고·조사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의 기증·적출 또는 이식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p> <p>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등의 관계서류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제30조 제3항 제2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1년 (뇌사판정대상자관리업무의 정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p>3.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제29조 (시정명령)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p>	제30조 제3항 제3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1년 (뇌사판정대상자관리업무의 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등기증자등의 등록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의 사본등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때 제30조 (지정취소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2조제1항 전단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인력등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이	제30조 제4항	지정취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아닌 장기등에 대한 등록업무를 한 때</p> <p>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한 때</p> <p>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p> <p>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뇌사판정 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뇌사판정대상자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2008.2.29></p> <p>1.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한 경우</p> <p>3.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업무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장사 등에 관한 법률	<p>1. 제14조제3항 또는 제6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때</p> <p>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③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p>	제30조 제1호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등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p> <p>⑤ 시장등이 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방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71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p> <p>제18조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 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방안시설 중 방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방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분묘, 방안묘 또는 방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장사 등에 관한 법률	<p>2.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 화장시설 또는 사설 방안시설을 설치한 때</p> <p>제15조 (사설 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 화장시설”이라 한다) 또</p>	제31조 제2호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등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는 보안시설(이하 “사설보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보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사설보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보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보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보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중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보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보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다.</p>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p> <p>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보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보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71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p>		
장사 등에 관한 법률	<p>3.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p> <p>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p> <p>1. 개인·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p> <p>2. 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p> <p>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p>	제31조 제3호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등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p> <p>②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p> <p>1.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p> <p>⑤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5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지역에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 조성할 수 없다.</p>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p> <p>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종· 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71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p>		
장사 등에 관한 법률	<p>4. 제24조에 따른 신고 의무, 가격계시 의무 또는 계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p> <p>제24조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 관리비의 신고) ① 법인묘지· 사설 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 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p>	제31조 제4호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등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③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p>		
장사 등에 관한 법률	<p>5. 제25조를 위반하여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p> <p>제25조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그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금의 적립금액, 관리금의 적립시기·절차 및 방법, 관리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리금의 적립금액은 시설물별 설치·조성비용, 재해의 위험을 및 연간 관리비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p>	제31조 제5호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2조 제1항 제1호	시정명령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29조 (장례식장영업) ②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p>2.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격표 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p> <p>제29조 (장례식장영업) ③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p> <p>④ 장례식장영업자는 제3항에 따라 게시한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p>	제32조 제1항 제2호	시정명령
장애인복지법	<p>1. 제59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p> <p>제59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p> <p>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p>	제62조 제1호	영업 정지, 폐쇄 등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④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장애인복지법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62조 제6호	영업 정지, 폐쇄 등
장애인복지법	<p>1.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경우</p> <p>제69조 (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②의지·보조기제조업자는 제72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자신이 의지·보조기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기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p> <p>제72조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라 한다)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p> <p>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p> <p>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보조기</p>	제70조 제1호	영업장 폐쇄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기사자격증을 받은 자</p> <p>②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p> <p>③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은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못한다.</p> <p>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장애인복지법</p>	<p>2.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p> <p>제74조 (응시자격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7.10.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p>제76조 제2호</p>	<p>자격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장애인복지법	2.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제75조 (보수교육)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하여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보수)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7조 제2호	자격정지6월
재해구호법	2. 모집자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계획서와 달리 의연금품의 모집을 한 경우 17조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①의연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미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허가신청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허가신청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	제23조 제2호	허가취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이 명시된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4. 모집비용을 제외한 모집금의 납입방법 및 모집물품의 전달방법 등이 명시된 전달계획 5.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6. 그 밖에 의연금품의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재해구호법	4.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의연금품을 접수한 경우 제19조 (의연금품의 접수장소 등) ①의연금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제23조 제4호	허가취소
재해구호법	5.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경우 제20조 (의연금품 출연강요의 금지 등) ①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의연금품의 출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제5호	허가취소
재해구호법	8.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 제8호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28조 (공개 의무 및 회계감사 등) ①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모집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 상황 및 내역을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전염병예방법	4.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하거나 소독실시사항을 기록·보관 및 보고하지 아니한 때 제40조의6 (소독의 실시 등) ①소독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소독업자가 소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사항을 기록·보관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4.1.29]	제40조의 8 제1항 제4호	영업정지6월 또는 영업장 폐쇄
청소년활동진흥법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당해 수련시설이 제17조의 시설기준, 제18조의 안전기준 및 제19조의 운영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17조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①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	제20조	시정명령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p> <p>제18조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①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p> <p>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p> <p>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①수련시설은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여야 한다.</p> <p>②수련시설의 수련거리운영, 생활지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종사자 교육 등 운영기준은 수련시설 종류별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p> <p>③ 삭제 <2007.7.27></p>		
혈액관리법	<p>2. 개설허가를 받은 혈액원의 시설이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p> <p>제 6 조 (혈액관리업무) ①혈액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혈액관리업무중 채혈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p> <p>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p> <p>2.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p> <p>3.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혈액제제제조업자</p> <p>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를 행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1.12.29, 2008.2.29></p>	제17조의2 제2호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
혈액관리법	<p>3. 혈액원이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조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때</p> <p>제 6 조의3 (혈액제제제조관리자 등) ①혈액원에는 1인 이상의 의사를 두고 혈액의 검사·제조·보존 등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관리</p>	제17조의2 제3호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하게 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제제의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제조관리자”라 한다)는 혈액제제의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지도·감독·품질관리 및 제조시설의 관리 그 밖에 그 제조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혈액원의 장 등은 제조관리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조관리자로부터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4.1.29]</p>		
혈액관리법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17조의2 제5호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
화장품법	<p>2.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p> <p>제 3 조 (제조업의 신고등) ①화장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p>	제20조 제1항 제2호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정지1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화장품법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20조 제1항 제4호	영업장 폐쇄 또는 업무정지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제23조제3항 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23조 (상담소의 설치) ③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5.3.24, 2008.2.29> 제25조 (보호시설의 설치) ③보호시설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5.3.24, 2008.2.29>	제29조 제1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 시설 폐쇄
한부모가족지원법	2.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③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4조 제2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 폐쇄
산업발전법	3. 제1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20조의2 제1항 제3호	등록취소 (취소할 수 있다.)
산업발전법	③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문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때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제20조의2 제3항 제1호	시정명령 (시정명령 할 수 있다. 불이행시 지식경제부장관에 사실 통보)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1. 제15조의3을 위반한 때</p> <p>제15조의3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준칙 등<개정 2004.1.20>) ①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되는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p> <p>②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거나 조합의 해산과정에서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0, 2007.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거나 운영함에 있어 이익보장 또는 손실보전약속 등 부당한 출자권유를 하는 행위 2.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행위 3.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기업구조조정조합과 당해 업무집행조합원(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과의 거래행위[본조신설 2002.1.19][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5로 이동<2002.1.19>]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p>2. 에너지관리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절하게 에너지진단을 하는 경우</p> <p>3. 제32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제32조 (에너지진단 등) ⑦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진단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제33조 제3호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취소시 필수적 청문 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p>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제25조 (취급관리)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거나 관리할 때에 밀폐운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급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p>	제17조 제1항 제6호	승인취소 (취소할 수 있다. 취소시 필수적 청문 사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p>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에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제15조 제2항 제2호	허가취소 (취소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p>4.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p>제13조 (입주기업체의 준수사항)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해지일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제15조 제2항 제4호	허가취소 (취소할 수 있다.)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입주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해 자유무역지역안의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장등을 임차한 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월의 범위안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목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것 3. 입주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의 범위안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것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⑦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의2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제22조의2 제7항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
경비업법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제 7 조 (경비업자의 의무) ⑤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제1항 제2호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경비업법	<p>3.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p> <p>제 7 조 (경비업자의 의무) ⑧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2.12.18></p>	제19조 제1항 제3호	허가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p>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법 제9조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4.11, 2008.2.29></p> <p>1. 『축산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기준 이하로 가축 사육의 밀도를 유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p> <p>2.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전량 농지에 환원할 것</p> <p>3. 조경수를 심는 등 자연친화형 축사를 조성할 것</p> <p>4. 악취저감시설을 설치·가동하여 주변의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p> <p>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킬 것</p>	제9조 제4항 제2호	지정취소
건물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p>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p>	제25조 제1항 제6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먹는물 관리법	2.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2년 이내에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다시 받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의2 제2항 제2호	허가취소
먹는물 관리법	5.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3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30조 (준수 사항)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8조 제1항 제5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정지 6월
먹는물 관리법	9. 제39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39조 (광고의 제한) ①환경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48조 제1항 제9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정지 6월
수도법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35조 제1항 제3호	영업정지 3월 또는 사업장 폐쇄
수도법	11. 제32조(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2조 (건강진단)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	제63조 제2항 제11호	인가를 취소 또는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 및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 안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을 준용한다.</p>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수도법	<p>14. 제37조(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급수의 긴급정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p> <p>제37조 (급수의 긴급정지 등)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여야 한다.</p> <p>②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 해당 지역의 주민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질검사·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③일반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한 자는 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p>	제63조 제2항 제14호	인가를 취소 또는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소음·진동규제법	<p>6. 제16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p> <p>제16조 (조업정지명령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p>	제17조 제6호	허가취소 또는 조업정지 6월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간대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진동으로 건강상에 위해(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소음·진동규제법	<p>②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제작 자동차의 개선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그 제작자동차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제33조 (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제34조 제2항	인증취소
소음·진동규제법	<p>8.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제41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②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의 준수사항·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제43조 제8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소음·진동규제법	3.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5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④소음도 검사기관은 검사방법 및 시설·시험장비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5조 제5항 제3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배출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38조의4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①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38조의4 제2항	조업정지 6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2. 제38조의4제2항·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8조의4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배출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42조 제1항 제12호	변경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40조 (조업정지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 제62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2조 (폐수처리업의 등록) ②폐수처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1. 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할 것 2.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항상 유지·점검하여 폐수처리업의 적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의2. 환경부령이 정하는 처리능력이나 용량 미만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수탁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64조 제3항 제2호	영업정지 6월
야생 동·식물 보호법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을 함에 있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5조 제1항 제2호	허가취소
야생 동·식물 보호법	4. 수렵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제49조 제1항 제4호	면허취소
야생 동·식물 보호법	5.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제49조 제1항 제5호	면허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14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방사(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 및 고사(고사)(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술연구 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p> <p>②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방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폭발물·땃·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야생 동·식물 보호법	<p>6.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p> <p>제19조 (야생동물의 포획금지 등) ①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조류·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술연구 또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49조 제1항 제6호	면허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동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p> <p>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p> <p>5.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는 경우</p> <p>②누구든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폭발물·땃·창애·울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p> <p>2.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p>		
야생 동·식물 보호법	<p>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p> <p>제23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①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제49조 제1항 제7호	면허취소
야생 동·식물 보호법	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제49조 제1항 제8호	면허취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44조 (수렵면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야생 동·식물 보호법	<p>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을 한 경우</p> <p>제50조 (수렵승인 등) ①수렵장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렵장설정자에게 수렵장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제49조 제1항 제9호	면허취소
야생 동·식물 보호법	<p>10.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p> <p>제55조 (수렵의 제한) 수렵장안에서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있어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4.11, 2007.5.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가지·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2.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 3. 운행중인 차량·선박 및 항공기안 4.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제49조 제1항 제10호	면허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7. 그 밖에 인명·가축·문화재·건축물·차량·철도차량·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 및 시간		
토양환경보전법	3. 제2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때 제23조의5 (겸업의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중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할 수 없다.	제23조의6 제1항 제3호	지정취소
토양환경보전법	6.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23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 ④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 사항 및 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6 제3항 제6호	영업정지 6월
폐기물관리법	4.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⑧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하여	제27조 제1항 제4호	허가취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을 명령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p>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p> <p>제25조 (폐기물처리업) ⑨폐기물처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수탁)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p>	제27조 제2항 제8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하수도법	<p>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을 위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경우</p> <p>제13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①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공공하수도의 시설이 도로·제방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의 효용을 겸할 때에는 당해 공작물 등(이하 “겸용공작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겸용공작물관리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거나 겸용공작물관리자로 하여금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행하는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는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p>	제30조 제2호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하수도법	<p>5.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p> <p>제2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료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p> <p>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p>	제30조 제5호	허가취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 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p> <p>⑦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p>		
하수도법	<p>4.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정소 기준을 위반한 경우</p> <p>제3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②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p>	제49조 제4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5.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 제43조 (분뇨의 처리) ②분뇨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자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수집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제5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하수도법	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제47조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①분뇨수집·운반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제8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하수도법	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47조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②분뇨수집·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제9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하수도법	<p>10. 제4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8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9조 제10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하수도법	<p>1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p> <p>제67조 (교육) ②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p>	제49조 제11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시설제조업자, 처리시설관리업자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 선임의무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6.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4조 제1항 제6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하수도법	10. 제51조제4항·제52조제6항 또는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4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④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분뇨수집·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제5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⑥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처리시설제조업자”로, “분뇨수집·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제54조 제1항 제10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④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로, “분뇨수집·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p> <p>제48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하수도법	14.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제54조 제1항 제14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67조 (교육)②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처리시설관리업자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 선임의무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5.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 7 조 (지위승계) ①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각각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6.4.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 제 9 조 (제조 폐지신고) ①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	제8조 제1항 제5호	허가취소 또는 제조정지 3월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6.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하지 아니한 때	제8조 제1항 제6호	허가취소 또는 제조정지 3월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p>	<p>제10조 (폐기) ①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3월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는 1종화학물질에 한한다. <개정 2006.4.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처분을 받거나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때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폐지의 신고를 한 때 3.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여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때 		
<p>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p>	<p>7.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p> <p>제10조 (폐기) ③폐기의무자는 폐기하여야 할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종류 및 수량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p>	<p>제8조 제1항 제7호</p>	<p>허가취소 또는 제조정지 3월</p>
<p>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p>	<p>8. 제10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한 때</p> <p>제10조 (폐기)③폐기의무자는 폐기하여야 할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종류 및 수량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p>	<p>제8조 제1항 제8호</p>	<p>허가취소 또는 제조정지 3월</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적절한 폐기방법을 폐기의무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종화학물질은 환경부장관과, 생물작용제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그 폐기방법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p>		
<p>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p>	<p>10.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p> <p>제11조 (수출규제)①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목적·수출대상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해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6.4.28, 2007.4.11, 2008.2.29></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목적·수출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p>	<p>제8조 제1항 제10호</p>	<p>허가취소 또는 제조정지 3월</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p>	<p>1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p> <p>제12조 (수입규제) ①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목적·수입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4.28, 2008.2.29></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목적·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p>	<p>제8조 제1항 제12호</p>	<p>허가취소 또는 제조정지 3월</p>
<p>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p>	<p>13.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p> <p>제13조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개정 2006.4.28>) ①특정화학물질을 제조·가공 또는 소비하는 자(3종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하는 자에 한한다)는 해마다 그 계획 및 실적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p>	<p>제8조 제1항 제13호</p>	<p>허가취소 또는 제조정지 3월</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③특정화학물질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4.28, 2008.2.29></p>		
<p>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p>	<p>4.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p> <p>제 7 조 (지위승계) ①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각각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6.4.28></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p> <p>제 9 조 (제조 폐지신고) ①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p>	<p>제8조의 2 제1항 제4호</p>	<p>제조폐쇄 또는 제조정지</p>
<p>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p>	<p>5.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때</p>	<p>제8조의 2 제1항 제5호</p>	<p>제조폐쇄 또는 제조정지</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p>	<p>제10조 (폐기) ①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3월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는 1종화학물질에 한한다. <개정 2006.4.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처분을 받거나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때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폐지의 신고를 한 때 3.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여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때 		
<p>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p>	<p>7. 제10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때</p> <p>제10조 (폐기)③폐기의무자는 폐기하여야 할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종류 및 수량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p> <p>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적절한 폐기방법을 폐기의무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종화학물질은 환경부장관과, 생물작용제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그 폐기방법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p>	<p>제8조의 2 제1항 제7호</p>	<p>제조폐쇄 또는 제조정지</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9.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제11조 (수출규제) ①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목적·수출대상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해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6.4.28, 2007.4.11,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목적·수출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제8조의 2 제1항 제9호	제조폐쇄 또는 제조정지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1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제12조 (수입규제) ①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하고자	제8조의 2 제1항 제11호	제조폐쇄 또는 제조정지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p>하는 자는 수입목적·수입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4.28, 2008.2.29></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목적·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p>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p>12.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p> <p>제13조의2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①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 보유경위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4.28]</p>	제8조의 2 제1항 제12호	제조폐쇄 또는 제조정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p>7.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p> <p>제18조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①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p>	제17조 제1항 제7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측정대행업)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p> <p>②측정대행업자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p>7. 제37조제2항 제4호를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p> <p>제37조 (사업자와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② 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사업자와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4. 평가대행자가 환경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수질·소음·진동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p>	제39조 제2항 제7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p>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또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p>	第16條 (시정조치 등) 제1항	시정조치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인한 피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8. 기타 범위반상대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p>제 7 조 (기업결합의 제한) ①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 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특수관계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p>제8조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p> <p>가. 삭제 <2004.12.31> 나. 삭제 <2004.12.31> 다. 삭제 <2004.12.31></p> <p>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 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자회사</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p> <p>다. 벤처지주회사이었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p> <p>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p> <p>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p> <p>바.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p> <p>사.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p> <p>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나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p> <p>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p> <p>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p> <p>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p> <p>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p> <p>③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의 주식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p> <p>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손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p> <p>다. 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손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p> <p>라.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마.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p> <p>바.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p> <p>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p> <p>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p> <p>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p> <p>라.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손자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마.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p> <p>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p> <p>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p> <p>④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31, 2007.8.3></p> <p>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p> <p>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p> <p>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⑤제4항제4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8.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p>제 8 조의3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개정 2002.1.26>)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1.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채무보증</p> <p>2.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를 제외한다)간의 채무보증</p> <p>3. 자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p> <p>4. 자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당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및 당해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다른 자회사를 제외한다)간의 채무보증</p> <p>제 9 조 (상호출자의 금지등) ①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p> <p>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p> <p>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p> <p>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회사는 당해주식을 취득</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0조 (출자총액의 제한) ①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이하 “출자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국내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안에서 그 회사의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한다.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1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과 당해 외국인 또는 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된 때에는 그 날부터 6월에 한한다.</p> <p>4.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산업발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산업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p> <p>5.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또는 지주회사이었던 자가 지주회사가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소유 또는 처분하거나 자산을 감소 또는 증가함으로써 인하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로 하되 지주회사나 지주회사가 아닌 회사로의 전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사</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업연도 말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p> <p>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p> <p>나. 삭제 <2005.3.31></p> <p>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고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p> <p>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p> <p>7.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회사 설립 당시부터 계속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 경우 본점이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6월에 한한다.</p> <p>8.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6월에 한한다.</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자산총액 및 순자산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p> <p>1. 자산총액</p> <p>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p> <p>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p> <p>다.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p> <p>2. 순자산액</p> <p>가.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계와 자본금 중 큰 금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소유주식수에 1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 금액</p> <p>나.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p> <p>다.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회사 설립일 이후에 신주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자본총계가 증가하게 된 때에는 그 증가된 자본총계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③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취득 당시의 가격에 정부에 납부하는 출연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사의 순자산액이 감소(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순자산액이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게 되거나 이미 초과된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순자산액이 감소한 날부터 2년간은 다음 각호의 1중 적은 금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그 기간 경과후 회사의 순자산액이 다시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순자산액이 감소한 날의 다른 국내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2. 순자산액이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산정되는 출자한도액 <p>⑤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액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출자한도액이 제4항에서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⑥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은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으로 보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식)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한한다. 다만, 그 민간투자사업의 공사기간과 무상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인수를 위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p> <p>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p> <p>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기업)의 규정에 의한 법인</p> <p>다.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p> <p>라. 가목 내지 다목의 회사의 계열회사</p> <p>3.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p> <p>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0분의</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30 미만인 때에는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p> <p>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협력사업자)에 의하여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회사로서 매출액비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p> <p>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2. 지주회사등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이들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부실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이 경우 각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4. 회사의 투명한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이사회, 주주총회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시·견제장치를 갖춘 회사 5.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회사 <p>⑧재무구조, 계열회사의 수 및 소유지배구조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한다.</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10조의2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2. 삭제 <1996.12.30> 3.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 <p>② 제1항에서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장기신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2. 삭제 <1998.1.13>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p> <p>5. 삭제 <2007.8.3></p> <p>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p> <p>③삭제 <1998.2.24></p> <p>④삭제 <1998.2.24></p> <p>제11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p> <p>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p> <p>3.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15를 초과할 수 없다.</p> <p>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p> <p>나. 정관 변경</p> <p>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p> <p>제15조 (탈법행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또는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의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p>	<p>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또는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제17조 (과징금) 제1항</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 9 조 (상호출자의 금지등) ① 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p>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회사는 당해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0조 (출자총액의 제한) ①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이하 “출자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국내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안에서 그 회사의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한다.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1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과 당해 외국인 또는 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된 때에는 그 날부터 6월에 한한다. 4.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산업발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산업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5.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또는 지주회사이었던 자가 지주회사가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소유 또는 처분하거나 자산을 감소 또는 증가함으로써 인하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로 하되 지주회사나 지주회사가 아닌 회사로의 전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p> <p>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p> <p>나. 삭제 <2005.3.31></p> <p>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고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p> <p>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부실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p> <p>7.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회사 설립 당시부터 계속하여 『수도권정비</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계획법』 제2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 경우 본점이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6월에 한한다.</p> <p>8.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6월에 한한다.</p>		
<p>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p>	<p>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1.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차대조표(이하 이 항에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한다)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p> <p>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p>		<p>과징금</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가. 당해 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및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p> <p>나. 삭제 <2007.4.13></p> <p>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p> <p>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p> <p>4.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3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p> <p>가. 당해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40</p> <p>제 8 조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개정 2004.12.31>) ②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p> <p>가. 삭제 <2004.12.31> 나. 삭제 <2004.12.31> 다. 삭제 <2004.12.31></p> <p>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 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p> <p>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p> <p>다. 벤처지주회사이었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p> <p>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p> <p>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보유</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p> <p>바.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p> <p>사.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p> <p>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나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p> <p>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p> <p>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p> <p>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p> <p>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p> <p>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p> <p>⑤제4항제4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p>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p>	<p>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4.12.31></p> <p>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p>	<p>제31조 (시정조치)</p>	<p>시정조치</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2. 당해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3. 당해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p>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p>	<p>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p>	<p>제31조의2 (과징금)</p>	<p>과징금</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2. 당해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3. 당해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p>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p>	<p>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국제계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계약의 취소, 계약내용의 수정·변경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32조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하 “국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4조 (시정조치)</p>	<p>시정조치</p>
<p>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p>	<p>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안에서, 당해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p>	<p>제34조의2 (과징금)</p>	<p>과징금</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에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제32조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하 “국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인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4조 (과징금) 제3항	과징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p>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광고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제6조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단체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p>	제9조(과징금) 제2항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격및사격장단속법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8조 제1항	허가취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②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고등교육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60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1항	시정 또는 변경명령
고등교육법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과의 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60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2항	위반행위 취소, 정지 학생정원감축, 학과의 폐지, 학생의 모집정지 조치
고등교육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1. 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62조 (학교등의 폐쇄) 제1항 제1호, 제2호	학교 폐쇄 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2. 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령을 수회에 걸쳐 위반한 경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제24조 (행정조치) 제1호	업무 시정 명령, 조치
기상관측표준화법	2.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4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기상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기상측기의 검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한 때 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3.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제15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호	6월 이내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기상관측을 한 때 2.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측시설의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때	제23조 (시정권고)	시정 권고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3.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때</p> <p>4.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상관측자료를 발표한 때</p> <p>5.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을 한 때</p> <p>제4조 (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②다음 각 호의 기상관측기준에 관하여는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세계기상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측기의 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7.5.25, 2008.2.29></p> <p>제 8 조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 ②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10조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②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기술기준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12조 (기상관측자료의 상호교환 및 공동활용) ④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상관측자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교환을 통하여 획득한 것인 때에는 최초로 그 기상관측 자료를 생산한 관측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이 고시하는 특수지역의 기상관측자료에 대하여는 기상청장의 협의 및 해당관측기관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13조 (기상측기의 검정) ②관측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기상관측표준화법 제24조</p>	<p>①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 배제 등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측시설의 개선 요청을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p> <p>2.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때</p> <p>제8조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 ③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목적별로 관측시설의 종류·규모·수준, 기상관측환경, 국내·외의 자료교환, 관측기준시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p>	<p>(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등) 제1항</p>	<p>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지원 중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 배제</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 9 조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등) ①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17조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③기상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 기상관측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이 저하되거나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④기상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측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관측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기술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3조 (시정권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기상관측을 한 때 2.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측시설의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때 3.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4.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상관측자료를 발표한 때 5.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을 한 때		
기상법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1년에 3회 이상 신고하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검사 및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때	제28조 (등록의 취소 등) 제3호, 제4호, 제5호	등록취소, 3월 이내 사업 정지
기술개발촉진법	⑥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얻은 전략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3조 (전략기술수출의 승인)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수출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3조 (전략기술수출의 승인) 제13조 제6항 제3호	승인 취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2. 전략기술의 수입국·수입자 및 최종사용자 등이 수출제한지역 및 거래 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신청한 전략기술의 기술수준·사용용도 및 유출가능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조합의 회계업무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에 회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 (보고·검사 등) 제3항	회계검사 요청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조 (행정조치) 제1항	시정 조치 명령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제17조 제1항	등록 취소, 1년 이내 검사업무 정지 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2.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을 대여한 때 4. 제1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6.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시정을 명하였으나, 1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때 9. 책임자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때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1조 제1항	시정 조치 명령
사립학교법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0.4.7, 2005.12.29, 2007.7.27> 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	제20조의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p> <p>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p> <p>4. 삭제 <2007.7.27></p> <p>5. 삭제 <2007.7.27></p> <p>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p> <p>7. 삭제 <2007.7.27></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p>		
사립학교법	<p>①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해당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1.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p> <p>2.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기간중 해당임원이 계속</p>	제20조의3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직무 집행 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사립학교법	<p>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7.7.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시이사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임시이사가 그 직무를 현저히 태만한 때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p>제20조의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0.4.7, 2005.12.29, 2007.7.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제25조의2 (임시이사의 해임)	임시이사 해임
사립학교법	관할청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4.7>	제46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수익사업 정지 명령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당해 학교법인이 당해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을 계속함이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있을 때 제 6 조 (사업)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사립학교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1.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제47조 (해산명령) 제1항 제1호	해산 명령
사립학교법	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	제54조의2 (해임요구) 제1항	학교의 장의 해임 요구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였을 때</p> <p>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p> <p>제58조 (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사립학교법	<p>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조 제1항	징계결의 요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지식경제부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제20조 (행정조치)	업무 시정 조치 명령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있다.<개정 1998.12.28,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우주개발진흥법	<p>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발사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발사를 지체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사허가를 받은 경우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어 허가취소를 요청한 경우 4. 우주발사체의 발사 전 연료누수, 통신시스템의 결함 등 우주발사체의 안전관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은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2조제5호의 경우에는 대표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대표를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제1항	발사허가 취소
원자력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의3 (표준설계인가의	표준설계인가의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개정 2005.12.30,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위(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때 2. 제12조의2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인가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3.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제12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1.1.16] 	<p>취소)</p>	
<p>원자력법</p>	<p>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6.5.12, 1995.1.5, 1999.2.8,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공사를 휴지한 때 3.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제12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p>제17조 (건설허가의 취소등)</p>	<p>건설허가 취소, 1년 이내 건설공사 정지 명령, 5천만원 이하 과징금</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6. 제16조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p> <p>7. 제15조의2제1항·제99조의2 또는 제10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p> <p>8. 제104조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p> <p>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처분이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1995.1.5, 1999.2.8, 2008.2.29></p>		
원자력법	<p>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3.5.15, 2008.2.29></p> <p>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되거나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미흡할 때</p> <p>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제32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p> <p>제22조 (허가기준) 제21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6.12.30, 1999.2.8, 2005.12.30, 2008.2.29></p>	제23조의2 (검사) 제3항	시정 보완 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p> <p>2.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p> <p>3.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p>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p>제29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등) ①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6.5.12, 1999.2.8></p> <p>제21조 (운영허가)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이하 “운영기술지침서”라 한다)·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에 한한다)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9.2.8, 2003.5.15, 2008.2.29> 제32조 (준용) 제15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은 발전용 원자로운영자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로 본다.<개정 1986.5.12, 1995.1.5, 1999.2.8> 제15조의2 (계량관리규정<개정 1995.1.5, 2003.5.15>) ①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라 한다)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중 핵물질(이하 “특정핵물질”이라 한다)의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 특정핵물질 의 사용개시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6.12.30, 1999.2.8, 2003.5.15,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계량관리규정이 특정핵물질의 적정 한 계량관리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9.2.8, 2003.5.15, 2005.12.30, 2008.2.29></p>		
원자력법	<p>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6.5.12, 1995.1.5, 1999.2.8, 200 1.1.16, 2008.2.29> 5. 제22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p>	<p>제24조 (운영허가의 취소등) 제1항 제5호, 제8호, 제9호,</p>	<p>운영 허가 취소, 1년 이내 운영 정지 명령</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22조 (허가기준) 제21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6.12.30, 1999.2.8, 2005.12.30,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8. 제23조의2제3항·제23조의3제2항·제30조·제98조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p>제23조의2 (검사)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3.5.15,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되거나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미흡할 때 	<p>제10호, 제10호, 제11호</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제32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제23조의3 (주기적안전성평가)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기적안전성평가 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제30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등의 조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 대하여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개조·수리·이전·운영방법의 지정 또는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이나 오염제거 기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8.2.29></p> <p>제98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개정 1986.5.12>)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방사성물질등의 이전·오염의 제거 기타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6.5.12, 1999.2.8, 2008.2.29></p> <p>제103조 (보고·검사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보관을 명할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2.8, 2001.1.16, 2008.2.29></p> <p>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등을 실시한 결과 이 법과 국제약속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8.2.29></p> <p>9.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15조의2 (계량관리규정<개정 1995.1.5, 2003.5.15>)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라 한다)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중 핵물질(이하 “특정핵물질”이라 한다)의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 특정핵물질의 사용개시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6.12.30, 1999.2.8, 2003.5.15, 2008.2.29></p> <p>10. 제29조·제84조·제96조제5항·제99조의2·제101조 또는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29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등) ①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6.5.12, 1999.2.8></p> <p>②발전용 원자로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21조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p> <p>③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마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받은 자 및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자 각 1인 이상을 늘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9.2.8></p> <p>④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자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자 각 1인 이상을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서의 핵물질 및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p> <p>제84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①누구든지 방사성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p> <p>②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땅속에 천층처분(동굴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심층처분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08.2.29></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폐기시설등건설·운</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인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전문개정 1999.2.8]</p> <p>제96조 (제한구역의 설정) ⑤국가외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범위의 부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여 그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 제한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p> <p>제99조의2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양수 제한<개정 1999.2.8>)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거나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국제약속에 따라 국가가 핵물질을 양도·양수하거나 국가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1999.2.8,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범위안에서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양수·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제17조·제24조·제35조·제46조·제60조·제68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사용이 금지된 때에 소지하고 있던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p> <p>3. 당해 사업 또는 업무를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사업 또는 업무를 폐지한 때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p> <p>4.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p> <p>5.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p> <p>6.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다만, 당해 상속인이 제13조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본조신설 1986.5.12]</p> <p>제101조 (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개정 1999.2.8>) 누구든지 18세 미만인 자로 하여금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을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훈련등의 목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2008.2.29></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105조 (교육훈련)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2.8></p> <p>11. 제104조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p> <p>제104조 (허가 또는 지정조건)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에는 안전성확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86.5.12></p> <p>②제1항의 조건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한 의무를 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p>		
원자력법 제46조	<p>①핵연료주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허가를, 주무부장관은 그 지정을 각각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6.5.12, 1995.1.5, 1996.12.30, 1999.2.8, 2008.2.29></p> <p>3. 제4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p> <p>제43조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등) ①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p>	(허가등의 취소등)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10호	허가, 지정 취소 1년 이내 사업 정지 명령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2008.2.29></p> <p>②사용 후 핵연료처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2.8, 2008.2.29</p> <p>5. 제44조의 허가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44조 (허가등 기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6.12.30, 1999.2.8, 2005.12.30,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5.12.30> 2.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4.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p>6. 제45조제2항·제54조·제98조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p> <p>제45조 (검사)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핵연료주기사업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3.5.15,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가 미흡할 때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제56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3. 삭제 <2005.12.30> <p>제98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개정 1986.5.12>)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방사성물질등의 이전·오염의 제거 기타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개정 1986.5.12, 1999.2.8, 2008.2.29></p> <p>제103조 (보고·검사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이</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보관을 명할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2.8, 2001.1.16, 2008.2.29></p> <p>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등을 실시한 결과 이 법과 국제약속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8.2.29></p> <p>7. 제53조제1항·제2항, 제84조, 제96조제5항, 제99조의2, 제101조 또는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p> <p>제53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등<개정 1999.2.8>) ① 핵연료주기사업자가 그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6.5.12, 1999.2.8></p> <p>② 핵연료주기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1999.2.8></p> <p>제84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① 누구든지 방사성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p> <p>②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땅속에 천층처분(동굴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심층처분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08.2.29></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인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전문개정 1999.2.8]</p> <p>제96조 (제한구역의 설정) ⑤국가외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범위의 부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여 그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 제한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p> <p>제99조의2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양수 제한<개정 1999.2.8>)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거나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국제약속에 따라 국가가 핵물질을 양도·양수하거나 국가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1999.2.8, 2008.2.29></p> <p>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범위안에서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양수·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p> <p>2. 제17조·제24조·제35조·제46조·제60조·제68조 및 제79조의</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사용이 금지된 때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p> <p>3. 당해 사업 또는 업무를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사업 또는 업무를 폐지한 때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p> <p>4.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p> <p>5.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p> <p>6.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다만, 당해 상속인이 제13조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본조신설 1986.5.12]</p> <p>제101조 (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개정 1999.2.8>) 누구든지 18세 미만인 자로 하여금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을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훈련등의 목적으로 교육과학기술</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2008.2.29></p> <p>제105조 (교육훈련)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2.8></p> <p>8.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p> <p>제15조의2 (계량관리규정<개정 1995.1.5, 2003.5.15>)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중 핵물질(이하 “특정핵물질”이라 한다)의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 특정핵물질의 사용개시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6.12.30, 1999.2.8, 2003.5.15, 2008.2.29></p> <p>10. 제104조의 허가 또는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p> <p>제104조 (허가 또는 지정조건)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에는 안전성확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86.5.12></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②제1항의 조건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한 의무를 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p>		
원자력법	<p>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연료물질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6.5.12, 1995.1.5, 1999.2.8, 2008.2.29></p> <p>4. 제58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p> <p>제58조 (허가기준) 제57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6.12.30, 1999.2.8, 2001.1.16, 2005.12.30,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5.12.30> 2.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사용시설·분배시설·저장시설·보관시설·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4.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p>제60조 (사용 또는 소지허가의 취소등)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p>	<p>허가 취소 1년 이내 업무 정지 명령</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6. 제62조제3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p> <p>제15조의2 (계량관리규정<개정 1995.1.5, 2003.5.15>)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중 핵물질(이하 “특정핵물질”이라 한다)의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 특정핵물질의 사용개시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6.12.30, 1999.2.8, 2003.5.15, 2008.2.29></p> <p>7. 제59조제2항·제62조제2항·제98조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p> <p>제59조 (검사)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9.2.8, 2003.5.15, 2008.2.29></p> <p>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및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미달될 때</p> <p>2.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제63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3. 삭제 <2005.12.30> 제62조 (기준준수의무등)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당해 사업소안에 서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사용·분배· 저장·운반·보관·처리 또는 배출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수리·개선·이전 또는 사용의 정지, 취급방 법의 변경 기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 8, 2008.2.29></p> <p>제98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개정 1986.5.12>) ②교육과학기술부장 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원자력관 계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방사성물질등의 이 전·오염의 제거 기타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명할수 있다.<개정 1986.5.12, 1999.2.8, 2008.2.29></p> <p>8. 제84조·제99조의2·제101조 또는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84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①누구든지 방사성폐기물을 해양 에 투기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땅속에 천층처분(동굴처분을 포함한 다) 또는 심층처분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인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전문개정 1999.2.8]</p> <p>제99조의2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양수 제한<개정 1999.2.8>)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거나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국제약속에 따라 국가가 핵물질을 양도·양수하거나 국가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1999.2.8,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범위안에서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양수·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제17조·제24조·제35조·제46조·제60조·제68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사용이 금지된 때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3. 당해 사업 또는 업무를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사업 또는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업무를 폐지한 때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p> <p>4.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p> <p>5.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p> <p>6.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다만, 당해 상속인이 제13조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본조신설 1986.5.12]</p> <p>제105조 (교육훈련)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2.8></p> <p>9. 제104조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p> <p>제104조 (허가 또는 지정조건)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에는 안전성확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86.5.12></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②제1항의 조건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한 의무를 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p>		
원자력법	<p>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신고사용자에 한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1.1.16, 2008.2.29></p> <p>5. 제66조의 허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p> <p>제66조 (허가기준등<개정 1999.2.8>) ①제65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9.2.8, 2001.1.16, 2005.12.30,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시설·사용시설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 의하여 발생한 피폭방사선량(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량한도(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생산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p>②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16, 2005.12.30, 2008.2.29></p>	<p>제68조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p>	<p>허가 등록 취소, 1년 이내 업무정지, 사용금지 명령</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1.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p> <p>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p> <p>3.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규정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p>6. 제67조제2항, 제71조제2항, 제98조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보고에 위반한 때</p> <p>제67조 (검사)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6.12.30, 1999.2.8, 2001.1.16, 2008.2.29></p> <p>1.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또는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될 때</p> <p>2.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또는 제65조의2제3항의 업무대행규정에 위반될 때</p> <p>3. 삭제 <2005.12.30></p> <p>제71조 (기준준수의무등)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소안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 또는 사용시설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사업소안에서의 생산·사용·분배·저장·운반·보관·처리 및 배출과 방</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이나 판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수리·개선·이전 또는 생산·사용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 기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8, 2001.1.16, 2008.2.29></p> <p>제98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개정 1986.5.12>)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방사성물질등의 이전·오염의 제거 기타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개정 1986.5.12, 1999.2.8, 2008.2.29></p> <p>제103조 (보고·검사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국제 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보관을 명할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2.8, 2001.1.16, 2008.2.29></p> <p>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등을 실시한 결과 이 법과 국제약속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8.2.29></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7. 제71조제3항·제84조·제99조의2·제101조 또는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p> <p>제71조 (기준준수의무등) ③허가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와 그 종업원은 제6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2001.1.16></p> <p>제84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①누구든지 방사성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p> <p>②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땅속에 천층처분(동굴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심층처분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08.2.29></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인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전문개정 1999.2.8]</p> <p>제99조의2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양수 제한<개정 1999.2.8>)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거나 양도·양수할</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수 없다. 다만, 국제약속에 따라 국가가 핵물질을 양도·양수하거나 국가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1999.2.8,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범위안에서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양수·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제17조·제24조·제35조·제46조·제60조·제68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사용이 금지된 때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3. 당해 사업 또는 업무를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사업 또는 업무를 폐지한 때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5.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6.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다만, 당해 상속인이 제13조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1986.5.12]</p> <p>제101조 (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개정 1999.2.8>) 누구든지 18세 미만인 자로 하여금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을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훈련등의 목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2008.2.29></p> <p>제105조 (교육훈련)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2.8></p> <p>8. 제104조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p> <p>제104조 (허가 또는 지정조건)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에는 안전성확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86.5.12></p> <p>②제1항의 조건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한 의무를 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원자력법	<p>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8.2.29></p> <p>5. 제77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p> <p>제77조 (허가기준)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2.8, 2001.1.16, 2005.12.30,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폐기시설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p>[전문개정 1996.12.30]</p> <p>6.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15조의2 (계량관리규정<개정 1995.1.5, 2003.5.15>)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중 핵물질(이</p>	<p>제79조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의 취소등)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p>	<p>허가 취소, 1년 이내 사업 정지 명령</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하 “특정핵물질”이라 한다)의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 특정핵물질의 사용개시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6.12.30, 1999.2.8, 2003.5.15, 2008.2.29></p> <p>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계량관리규정이 특정핵물질의 적정한 계량관리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9.2.8, 2003.5.15, 2005.12.30, 2008.2.29></p> <p>③삭제 <1999.2.8></p> <p>④삭제 <1999.2.8></p> <p>[본조신설 1986.5.12]</p> <p>7. 제78조제2항·제82조제2항·제98조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p> <p>제78조 (검사)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8, 2003.5.15, 2008.2.29></p> <p>1.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및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미달될 때</p> <p>2.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제83조의 규</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p> <p>3. 삭제 <2005.12.30></p> <p>제82조 (기준준수의무등)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폐기시설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수리·개선·이전 또는 업무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 기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제103조 (보고·검사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보안을 명할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2.8, 2001.1.16, 2008.2.29></p> <p>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등을 실시한 결과 이 법과 국제약속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안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8.2.29></p> <p>8. 제82조제3항, 제96조제5항, 제99조의2, 제101조 또는 제105조제1</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p> <p>제82조 (기준준수의무등) ③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96조 (제한구역의 설정) ⑤국가외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범위의 부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여 그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 제한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p> <p>제99조의2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양수 제한<개정 1999.2.8>)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거나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국제약속에 따라 국가가 핵물질을 양도·양수하거나 국가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1999.2.8,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범위안에서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양수·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제17조·제24조·제35조·제46조·제60조·제68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사용이 금지된 때에 소지하고 있던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p> <p>3. 당해 사업 또는 업무를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사업 또는 업무를 폐지한 때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p> <p>4.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p> <p>5.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p> <p>6.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다만, 당해 상속인이 제13조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본조신설 1986.5.12]</p> <p>제101조 (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개정 1999.2.8>) 누구든지 18세 미만인 자로 하여금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을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훈련등의 목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2008.2.29></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105조 (교육훈련)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2.8></p> <p>9. 제104조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p> <p>제104조 (허가 또는 지정조건)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에는 안전성확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86.5.12></p> <p>②제1항의 조건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한 의무를 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p>		
원자력법	<p>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판독업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8.2.29></p> <p>4.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p> <p>제90조의5 (등록기준) 제9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독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 제9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교육과 	제90조의7 (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등) 제1항 제4호, 제5호, 제7호	등록 취소, 1년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1999.2.8]</p> <p>5. 제90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86.5.12, 2005.3.31></p> <p>1. 금지산자·한정치산자 또는 과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2.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p> <p>4.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p> <p>6. 삭제 <1999.2.8></p> <p>7. 제90조의6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p> <p>제90조의6 (검사) ①관독업무자는 관독업무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2.8, 2008.2.29></p> <p>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관독업무자</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가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2.8, 2005.12.30, 2008.2.29>		
원자력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105조 (교육훈련) ②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2.8, 2008.2.29>	제93조 (면허의 취소등) 제1항 제4호	면허 취소, 3년 이내 면허 정지
초·중등교육법	①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63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1항	시정 변경 명령
초·중등교육법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3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2항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조치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학교급식법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제19조 (출입·검사·수거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제16조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 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4.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거것으로 기재한 식재료 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거것으로 기재한 식재료 	제19조 (출입·검사·수거 등) 제3항	시정 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학교보건법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p> <p>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개정 2007.12.14>) 4)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삭제 <2008.3.21> 	<p>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3항</p>	<p>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 시설 철거 명령</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p> <p>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p> <p>6. 폐기물수집장소</p> <p>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p> <p>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p> <p>9.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격리소)</p> <p>10. 전염병요양소, 진료소</p> <p>11. 가축시장</p> <p>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p> <p>13. 호텔, 여관, 여인숙</p> <p>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p> <p>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p> <p>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p> <p>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p> <p>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p> <p>19.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p> <p>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p>		
<p>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p>	<p>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p> <p>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p> <p>제15조 (수강료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p> <p>② 수강료등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p>	<p>제17조 (행정처분) 제1조 제7항, 제8항, 제9항</p>	<p>등록 말소 1년 이내 교습 정지 명령</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7.12.21]</p> <p>8.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p> <p>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p>	<p>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p> <p>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제17조 (행정처분) 제2항 제3호</p>	<p>교습소 폐지 명령 6개월 이내 교습 정지 명령</p>
<p>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p>	<p>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p> <p>3.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교습료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p>	<p>제17조 (행정처분) 제3항 제3호</p>	<p>과외교습 중지 명령</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14조의2 (개인과의교습자의 신고 등) ⑥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의교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료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가 이 법과 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제12조 (시정명령 등) 제1항	시정 명령
개항질서법	제40조 (출항의 중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40조	출항의 중지 (* 등화, 어로, 선박교통 등 제한..그러나 법조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
건축사법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	제11조 제6호	자격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p>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공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④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p> <p>③ 공사감리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⑤ 공사감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⑦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p> <p>⑧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⑨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실시계획대로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제55조 제1항 제1호</p>	<p>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조치</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p> <p>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역중소업체가 개발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p> <p>③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계획의 명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복지 및 가족친화 시설의 설치계획 7.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p> <p>④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그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p> <p>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p> <p>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p> <p>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p> <p>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p> <p>5.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체결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p> <p>6.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처분계획서</p> <p>7.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p> <p>②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이미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p> <p>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나.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17조 (준공검사)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은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다.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경우 제19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공급절차·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라.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20조 (선수금)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 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p> <p>마.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p> <p>제2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p> <p>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2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⑤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당해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p> <p>사.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p> <p>제23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②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아.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제54조 (보고 및 검사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p>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p> <p>제12조 (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중개업자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p>	제38조 제1항 제4호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p>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p> <p>제13조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①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p>	제38조 제2항 제2호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p>3.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p> <p>제13조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②중개업자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p>	제38조 제2항 제3호	“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p>4.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겸업을 한 경우 제14조 (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중개업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38조 제2항 제4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p>5.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제21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제38조 제2항 제5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p>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제19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제38조 제2항 제6호	"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p>	<p>3.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시행자 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체결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p>	<p>제38조 제1항 제3호</p>	<p>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p>
<p>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p>	<p>제25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종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제9조 (이종등록의 금지 등) ① 등록사업자는 이종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p>제25조 제3호</p>	
<p>지하수법</p>	<p>3.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7조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⑤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9.3.31, 2001.1.16></p>	<p>제10조 제1항 제3호</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관세법	⑥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4조 (보세구역의 자율관리) ④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보세구역의 위치·시설상태 등을 확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보세구역을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취소
관세법	④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을 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3조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53조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	가산세부과 및 지정취소
관세사법	2. 관세사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의 의결을 한 때		등록취소
관세사법	5. 제17조의3제5항·제17조의5·제17조의6·제17조의7·제17조의8제		등록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2항·제17조의9 또는 제17조의12를 위반하거나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위반한 경우</p> <p>제17조의3 (사원 등) ⑤관세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p> <p>제17조의5 (손해배상준비금 등) ①관세법인은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관세청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7조의6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관세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p> <p>제17조의7 (명칭) 관세법인은 그 명칭 중에 관세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p> <p>제17조의8 (사무소 등) ②관세법인의 주사무소에는 2인 이상의 이사인 관세사가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이사인</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관세사가 상근하여야 한다.</p> <p>제17조의9 (업무집행방법 등) ①관세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그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할 관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관세사에 대하여는 이사를 포함시켜 지정하여야 한다.</p> <p>②관세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사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p> <p>제17조의12 (정관변경의 신고)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1호부터 제4호(사원과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까지, 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7조의13 (준용규정) ①제7조제3항, 제9조제5항 및 제6항,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관세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p>		
<p>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p>	<p>①원장은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p> <p>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p> <p>제38조 (검사대상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7, 2000.1.28, 2001.3.28, 2003.10.4, 2007.8.3></p>	<p>제41조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p>	<p>시정명령 및 징계요구</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 삭제 <2007.8.3>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5. 삭제 <2007.8.3>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 삭제 <2007.8.3>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 삭제 <2007.8.3>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3. 삭제 <1999.9.7> 14.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5.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담보부사채신탁법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 또는 임원해임요구를 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	제10조 (등록의 취소등)	등록 취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정 2008.2.29> 1. 신탁업자가 법령·정관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담보부사채신탁법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명령 또는 임원해임요구를 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 (등록의 취소등)	등록 취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46조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명령, 취소, 변경, 중지, 원상회복
신용협동조합법	①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5조 (조합등에 대한 행정처분)	1.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주의·경고 2.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6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신용협동조합법	②금융위원회는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5조 (조합등에 대한 행정처분)	6월 이내 업무정지 및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제85조 (조합등에 대한 행정처분) ②금융위원회는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2. 인가내용 또는 인가조건에 위반한 경우</p>		
여신전문금융업법	<p>①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2.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p>	제14조의4 (등록의 취소 등)	6월 이내 업무정지 및 취소
외국환거래법	<p>②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9.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제24조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등)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으</p>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6개월 업무정지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로 하여금 신고·신청·보고·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전자금융거래법	<p>②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2. 제23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때</p> <p>제23조 (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이용한도)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2.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 3.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p>제39조 (감독 및 검사) ⑥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 내지 제3호</p>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p>제40조 (금융기관등의 제휴 또는 외부주문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 내용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의 건전성 및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관련 계약 내용의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p> <p>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③금융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국유재산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관리청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2. 당해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때 	제28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취소 및 철회
국유재산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관리청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28조 (사용·수익허가	취소 및 철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4. 납부기한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의 취소와 철회)	
주세법	<p>①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의 주류제조면허에 한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p> <p>2. 주류제조자가 허가를 받은 직매장중 1이상의 직매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당해 주류제조자가 허가를 받은 모든 직매장의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때</p> <p>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신설 1994.12.22>) ①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p> <p>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p> <p>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p> <p>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p>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면허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12.22, 2004.12.31></p> <p>④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주세법	<p>①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의 주류제조면허에 한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p> <p>7.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때</p> <p>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신설 1994.12.22>) ①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p>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p>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면허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12.22, 2004.12.31></p> <p>④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주세법	<p>①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의 주류제조면허에 한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p> <p>8.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p>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면허 취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신설 1994.12.22>) ③제2항 외의 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할 자로 하여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선동·교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개정 2004.12.31></p> <p>⑤제4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4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4.12.22></p>		
공인노무사법	<p>노동부장관은 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p>	제7조의6 (노무법인 인가 취소) 제2호	설립인가 취소
공인노무사법	<p>① 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07.12.21></p> <p>③ 개업노무사 및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3년 이하의 자격정지</p> <p>2. 등록취소</p> <p>3. 6개월 이하의 직무정지</p>	제20조 (징계) 제1항	징계처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4. 견책(견책)</p> <p>1. 제6조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한 경우 제 6 조 (사무소의 설치 제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는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8.3]</p> <p>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 제7조의3 (노무법인의 사원) ②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자격정지처분이나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p> <p>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둔 경우 제11조 (직무보조원) ④ 개업노무사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직무보조원으로 둘 수 없다. <신설 2007.12.21></p> <p>4.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① 개업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p> <p>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노무사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기명하거나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② 개업노무사는 제2조제1항에 따라 그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p> <p>6.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제13조 (금지 행위) 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4. 사건의 알선을 업(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 <p>[전문개정 2007.8.3]</p> <p>7.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4조 (비밀 엄수) 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의 직무보조원 또는 직무보조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전문개정 2007.8.3]</p> <p>8. 제17조제1항에 따른 직무에 관한 장부의 비치·기록·관리·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p> <p>제17조 (장부의 비치 등) ① 개업노무사는 그 사무소에 직무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성실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9.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p> <p>제18조 (감독상의 명령 등) ① 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p>10. 제20조의2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p> <p>제20조의2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전문개정 2007.8.3]</p> <p>11. 노무법인·합동사무소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타인의 자격증을 빌린 경우</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근로자복지기본법	<p>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p>제 6 조 (목적외 사용금지) 누구든지 근로자복지를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은 그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p> <p>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제56조 (반환명령)	반환명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p>①노동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7.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p>	제31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제1항 제5호, 제6호	지정 취소 1년 이내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지 명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p>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p>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p>	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제2항 제6호	시정명령 설립 허가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호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등의 개발·보급사업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p>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p>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①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자가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제3항	시정명령 승인취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①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록취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제23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②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③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p> <p>④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⑤금융위원회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보고한 약관등이 이 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약관등의 변경·보완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7.29, 2008.2.29></p>	<p>및 이전명령) 제1항 제4호</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①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그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퇴직연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 (사용자에 대한 감독) 제1항	시정명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사용자에 대한 감독) 제2항	②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퇴직연금 운영 중단 명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①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08.2.29>	제23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1항	시정명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②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2항	업무 이전 명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④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	제23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4항	시정명령 재산상황 검사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제20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②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p>③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체결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3.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p> <p>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p> <p>④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⑤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취급실적을 사용자(퇴직연금 취급실적에 한한다)·노동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⑥퇴직연금사업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05.7.29, 2008.2.29></p> <p>⑦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9, 2008.2.29></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p>⑤금융위원회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보고한 약관등이 이 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약관등의 변경·보완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7.29, 2008.2.29></p> <p>제20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⑥퇴직연금사업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05.7.29, 2008.2.29></p>	제23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5항	약관 등 변경·보완 명령
사내근로복지기금법	<p>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기금이 제12조제2항,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제12조 (이사등의 신분) ②사용자는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12.21></p> <p>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p>	제21조 (시정명령)	시정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2. 삭제 <2001.3.28></p> <p>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p> <p>3의2.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p> <p>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p> <p>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p> <p>②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정률을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1.5></p> <p>③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신설 2001.3.28></p> <p>제15조 (기금의 증식) 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증식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등의 수익증권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p>제16조 (기금의 회계)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③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기금의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을 보전한 후 기금에 전입한다.</p> <p>④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 (기금의 관리·운영사항 공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항시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감사보고서 4. 사업보고서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산업안전보건법	<p>①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제15조 (안전관리자등) 제1항 제3호, 제4호	지정 취소 6월 이내 업무 정지 명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p>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p>	제19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고용허가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 8 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용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p> <p>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p> <p>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외국인근로자 성명 등을 기재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p> <p>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p> <p>⑥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사용자가 입국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p>	제1항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직업안정법	①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9조·제23조 제1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2.8, 2007.1.19>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36조 (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제1항	6월 이내 사업정지 등록 허가 취소
직업안정법	①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9조·제23조 제1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 또는 취소의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9.2.8> 1. 당해 사업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당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제37조 (폐쇄조치) 제1항	폐쇄조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2조 (허가의 취소등) 제1항	허가 취소 6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p> <p>4.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때</p> <p>제 5 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개정 2006.12.21>)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6.12.21></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2.21, 2007.8.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p> <p>⑤ 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21></p> <p>5.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때 제6조 (파견기간) ①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6.12.21></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6.12.21></p> <p>④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산·질병·부상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이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6.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p> <p>제 7 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7.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p> <p>제 7 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8.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p> <p>제 11 조 (사업의 폐지) ①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신고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9.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의 내용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p> <p>제13조 (허가취소등의 처분후의 근로자파견)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전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파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경우에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10. 제14조에 따른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때</p> <p>제14조 (겸업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3.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p>11. 제15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때</p> <p>제15조 (명의대여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16조 (근로자파견의 제한) ①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p> <p>13.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p> <p>제17조 (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함에 있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4.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때</p> <p>제18조 (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5.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때</p> <p>제20조 (계약의 내용등) ①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사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파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견근로자의 근로장소</p> <p>5. 파견근로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p> <p>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에 관한 사항</p> <p>7.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p> <p>8.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p> <p>9.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p> <p>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p> <p>11. 근로자파견의 대가</p> <p>12.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p> <p>16.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근로자 파견을 행한 때</p> <p>제24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②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6.12.21></p> <p>17. 제25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때</p> <p>제25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①파견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고용되고자 하는 자와 그 고용관계의 종료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②파견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의 종료후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p> <p>18.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제2호·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때 제26조 (취업조건외 고지) ①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호의 사항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6.12.21></p> <p>19.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 때 제28조 (파견사업관리책임자) ①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제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중에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p> <p>②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20. 제29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때 제29조 (파견사업관리대장) ①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p>		

2. 준수사항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성·보존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21.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한 때 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⑤파견사업주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지체없이 사용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22. 제3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37조 (개선명령) 노동부장관은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23. 제38조에 따른 보고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기피·방해한 때 제38조 (보고와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기타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2	7.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31조 (골재채취허가의 취소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8. 제30조 및 이 조에 따라 채취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채취중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0 호의2	영업정지 4개월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제30조 (골재채취구역 변경등의 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골재채취구역의 변경, 채취의 중지, 시설물의 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1. 자연환경훼손, 하천 또는 해양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경우 재해발생 등 공중에 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2. 『수질환경보전법』과 『해양오염방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p> <p>②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2	9.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요구가 있는 때	법 제19조제1항제1호	영업정지 2개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3	<p>4. 법 제30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다만, 채취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채취중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p> <p>제30조 (골재채취구역 변경등의 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골재채취구역의 변경, 채취의 중지, 시설물의 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1. 자연환경훼손, 하천 또는 해양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경우 재해발생 등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2. 『수질환경보전법』과 『해양오염방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p> <p>3. 골재채취 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p>	<p>법 제31조제1항제7 호</p>	<p>채취중지 2개월</p>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별표	<p>9. 법 제16조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p> <p>제16조 (사업개선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도시철도를 이용하</p>	<p>법 제19조제1항제9호</p>	<p>사업정지 60일</p>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는 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운송약관의 변경 2. 운임의 조정 3. 도시철도의 차량 기타 시설의 개선 4. 운행시간·운행회수 등 운행계획의 변경 5. 도시철도노선의 연결운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3	7.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31조 제1항제7조	시정명령	훈련정지 1개월	훈련정지 2개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22)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3	8.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정취소를 받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8호	시정명령	훈련정지 1개월	훈련정지 3개월	
		나. 그 밖의 경우		경고	시정명령	훈련정지 1개월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0	10.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거부한 때		법 제28조 제2항제6호	면허정지 30일	면허정지 90일	면허정지 180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29.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82조 제2항제24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6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 동물 현황 및 관리 실태 등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법 제21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경우	거부한 경우					
		나.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다. 동물학대행위의 중지 및 위해방지대책의 마련 등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10.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재평가 대상 동물용의약품등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검역원장이 지시한 후속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표시, 기재 및 수거·폐기조치는 제외한다)	법 제33조·제42조 , 『의료기기법』 제9조·제14조 제5항	해당품목 업무정지 1개월	해당품목 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허가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60.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 동물약국, 동물병원의 개설자·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판매(임대)업자·수리업자가 법 제71조부터 법 제75조, 『의료기기법』 제29조부터 제31조에 따른 폐기명령, 검사명령, 개수명령, 회수등 사실공표 명령 또는 관리자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의료기기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업무정지 15일 또는 해당품목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또는 해당품목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해당품목 업무정지 3개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10	13. 법 제25조의 규정에 위 반한 때	가. 보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23조제5호	영업의 전부정지 7일	영업의 전부정지 15일	영업의 전부정지 1월	
		나. 시설보완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3조제5호	영업의 전부정지 7일	영업의 전부정지 15일	영업의 전부정지 1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바. 종·묘생산업자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출하금지명령 또는 소독·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7조 (보고·검사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종묘생산업자 2.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사업법인		법 제16조제3항제6 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4.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39조제1항에 따라 규격이나 품질을 고시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6. 제4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 7. 녹색사업단 ②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중요생산업자가 생산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조사·검사한 결과 그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출하를 금지하거나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6. 어장관리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어장관리규약에 대한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0조	경고	경고	취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2. 표시변경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시정지 30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1. 표시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정지 30일	판매정지 60일	판매정지 90일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4.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취소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4	4.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7조의3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등) ①국립농산물 검사기관의 장은 자체검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검사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의 기준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한 경우 2. 제1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인 삼류를 판매한 경우 3.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 다만, 수출용으로서 자가상표를 붙여 자체검 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7조의3제1항 제4호	지정 취소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4. 이 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이 조에 따른 검사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2]	7.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정기검사·수시검사·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때 또는 시설의 보완이나 개·보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제12조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①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 설치공사의 착수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 설계검토를 받아야 한다.	법 제33조제1항제4호	공연장 운영자에 대한운영정지			공연자에대한공연 활동정지		
			1차 위반 반	2차 위반 반	3차 위반 반	1차 위반 반	2차 위반 반	3차 위반 반
			7일	15일	1월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5) 법 제30조(시정명령)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제30조 (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	제11조 (시설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p> <p>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p> <p>3. 제17조에 따른</p>	<p>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나)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영업정지 10일</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등록 취소</p>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다)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②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제17조 (회원 모집) ①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③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④ 회원의 모집시기·모집방법 및 모집 절차를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8. 제26조에 따른 보 험에 가입하지 아니 한 때	사, 시장·군 수 또는 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 다. 이하 같 다)에게 회원 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 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 른 회원을 모 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 업 시설과 통 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 여 회원모집계 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	위 반 한 경 우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시기, 모집방법, 모집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① 회원의 자격 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임에도 양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도·양수를 제한한 경우				
	제18조 (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도)·양수(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②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비용을 실비 수준 이상 징수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회원의 탈퇴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④ 회원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증의 확인·발급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⑤ 회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운 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거나 회원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마) 법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과 병설 대중골프장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제21조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바) 법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음·진동규제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④ 법 제22조제2항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② 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제24조 (안전·위생 기준)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구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p>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p>(아)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제26조 (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p>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9]	17.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 제29조 (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법 제32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9]	18.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위반	가.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32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9]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건강기	나.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영업자에 대하여 한 당해 건강기능식품의 회수·폐기명령을 위반하거나 당해 건강기능식품의 원	법 제32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능식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21></p> <p>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 건강기능식품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21></p>	<p>료·제조방법·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에 대한 변경명령을 위반한 때</p>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9]	19.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을 위반한 때 제31조 (시설의 개수명령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시설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②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시설의 개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32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9]	2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22호를 제외한 법 위반	법 제29조	시정명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15. 법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7조 (시정 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5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3. 제5조를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나.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2호	개선 명령	안전 검사 표시 사용 금지 2개월	안전 인증 취소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5. 다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주거나 다시 하도급 준 때 나.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	법 제28조제1항제5 호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4월 또는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에 위반하여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하게 한 때		과징금 600만원			
	다.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마.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바.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2월			
	사.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다.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9조 제1항제9호	인증 취소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p>아. 법 제18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어 안전 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를 받은 자가 그 조치를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제18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안전인증기관은 안전 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 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 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이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 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p> <p>3.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p> <p>4.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거부·방해</p>	법 제18조제1항제8 호	인증 취소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7.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17)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중지명령을 위반한 때 제29조 ②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당해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허가 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1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9조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 명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 정지 6월	허가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령 또는 사용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p>(24)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제42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후, 그 사용을 개시하기 위한 신고를 하기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2.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 가입</p> <p>제4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 ①시·도지사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 조치를 취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해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p>	법 제25조제1항제5호	허가 취소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1. 부도 또는 허가 취소로 인하여 영업활동이 중단된 경우</p> <p>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p>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5	<p>(1)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결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p> <p>제12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p>	법 제12조제5항 또는 제7항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조업 정지 60일	폐쇄 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2. 『하수도법』 제7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p> <p>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6	(1)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결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법 제12조제5항 또는 제7항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조업 정지 60일	폐쇄 명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6	10)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명령기간(연장기간 포함) 내에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4조 법 제36조	개선 명령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20일	허가 취소 또는 폐쇄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33조 (개선 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 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11)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개선 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 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법 제36조	조업 정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p>14) 법 제41조제4항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제41조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가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의 사업장만 해당한다. 이하 제42조에서 같다)는 제2항에 따라 연료의 공급 지역이나 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42조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p>	<p>법 제36조 법 제41조제4항 법 제42조</p>	<p>조업 정지 10일</p>	<p>조업 정지 20일</p>	<p>조업 정지 30일</p>	<p>허가 취소 또는 폐쇄</p>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2)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제43조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법 제43조 제2항·제3항	개선 명령	사용 중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3)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3조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법 제43조 제3항	사용 중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p>	<p>4) 법 제51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제51조 ④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에서 검사 대상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p> <p>⑤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p>	<p>법 제55조 제4호</p>	<p>경 고</p>	<p>경 고</p>	<p>인증취소</p>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p>16)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p> <p>제39조 (광고의 제한) ①환경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p> <p>②시·도지사는 먹는샘물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면 그 먹는샘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p>	법 제48조제1항제9 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19) 법 제45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다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법 제45조에 따른 지도 또는 개선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2 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압류·폐기 또	법 제48조제1항제12	영업 정지	허가· 등록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는 처리방법 등에 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호	3개월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1	3)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공장에 대하여 개선 명령을 하여도 당해 공장의 위치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제 7 조 (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①소음·진동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폐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1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법 제23조제2항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	공사 중지 명령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8)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조의6 제4항, 법 제42조제1항제13호	조업 정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9)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연장기간을 포함한다)내에 이행 보고를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부하량을 계속 초과하거나 개선 명령을 받은 원인이 되는 같은 항목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4조의6 제4항, 법 제40조	개선 명령	조업 정지 5일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20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6)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8조의4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 정지명령) ①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	법 제38조의4제2항	조업 정지5일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20일	조업 정지 30일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배출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p>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p>7)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p> <p>제38조의4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 정지명령) ①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배출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p>	법 제42조제1항제12호	조업 정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2)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조치가 부적합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4항	개선 명령	개선 명령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7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개선 명령) 시·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하 “개선 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법 제21조	사용 중지 명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7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명령기간내에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11조	개선 명령	사용 중지명령		
영산강·섬진강수계물 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5	(1)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결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법 제12조제5항 또는 제7항	조업 정지10일	조업 정지30일	조업 정지60일	폐쇄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4) 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5)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 (개선 명령)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가 운영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 안전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독물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	경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3월	등록 또는 허가 취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나. 법 제16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개선 명령·사용 중지명령 및 폐쇄 명령)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1항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	(1) 법 제16조 제2항	사용 중지	사용 중지	사용 중지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배출사업자에게 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 명령”이라 한다)을 받고도 그 기간 안에 개선하지 아니하는 배출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p>	<p>따 른 개 선 명 령 을 받 은 자 가 이 를 이 행 하 지 아 니 한 경 우</p>				
	<p>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 구조나 방지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p>	<p>(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용</p> <p>법 제16조제3항</p>	폐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18)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19)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영업 정지6개 월	허가 취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20)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p>23)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 예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p> <p>⑦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p> <p>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는 경우 2.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 단가가 변경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p>	법 제27조제8호	허가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p> <p>⑧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8.3></p>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p>24) 법 제4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p> <p>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p> <p>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p> <p>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p>	법 제27조제8호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매립된 토지의 소유자</p> <p>②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자가 발생시킨 방치폐기물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방치폐기물이 있으면 그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사업장장을 제33조에 따라 승계한 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p> <p>③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변명이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고등교육법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과의 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60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2항	시정 또는 변경명령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공제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제24조 (행정조치)	업무 시정 명령, 조치
기상관측표준화법	⑥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한 때 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3.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제13조 (기상측기의 검정)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측기의 제작·수입·설치 또는 수리(이하 “제작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제작 등을 한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	제14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6항	시정 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상측기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대상인 기상측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한다. <개정 2008.2.29></p> <p>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제14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기상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기상측기의 검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⑤기상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p>		
기상법	<p>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한 결과 그 업무에 개선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기상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제29조 (보고·검사 및 시정명령) ①기상청장은 감독 또는 지도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상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제29조 (보고·검사 및 시정명령) 제2항	개선 시정 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기상법	<p>③기상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교육·훈련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p> <p>제35조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표준화, 기상재해 예방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의 증진 등을 위하여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단체의 직원 및 기상사업자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35조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제3항	2월 이내 시정 명령
우주개발진흥법	<p>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질서 유지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국민에게 우주개발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제19조 (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제2항	우주개발 시정 명령
원자력법	<p>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3.5.15, 2008.2.29></p> <p>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되거나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미흡할 때</p> <p>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제32조에</p>	제23조의2 (검사) 제3항	시정 보완 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서 준용하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제22조 (허가기준) 제21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6.12.30, 1999.2.8, 2005.12.30,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p>제29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등) ①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6.5.12, 1999.2.8></p> <p>제21조 (운영허가)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이하 “운영기술지침서”라 한다)·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운전에 관한 품</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질보증계획서·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에 한한다)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9.2.8, 2003.5.15, 2008.2.29></p> <p>제32조 (준용) 제15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은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로 본다.<개정 1986.5.12, 1995.1.5, 1999.2.8></p> <p>제15조의2 (계량관리규정<개정 1995.1.5, 2003.5.15>)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중 핵물질(이하 “특정핵물질”이라 한다)의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 특정핵물질의 사용개시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6.12.30, 1999.2.8, 2003.5.15, 2008.2.29></p> <p>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계량관리규정이 특정핵물질의 적정한 계량관리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9.2.8, 2003.5.15, 2005.12.30, 2008.2.29></p>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원자력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핵연료주기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사용정지·개조·수리·이전이나 운전방법의 지정 기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개정 1986.5.12, 1999.2.8, 2008.2.29>	제54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등의 조치)	안전 조치 명령
원자력법	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결과 핵연료주기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체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55조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제6항	시정 보완 명령
원자력법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9.2.8, 2003.5.15, 2008.2.29>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및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미달될 때 2.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제63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3. 삭제 <2005.12.30> 제58조 (허가기준) 제57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6.12.30, 1999.2.8, 2001.1.16, 2005.12.30, 2008.2.29> 1. 삭제 <2005.12.30> 2.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	제59조 (검사) 제2항	시정 보완 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p> <p>3. 사용시설·분배시설·저장시설·보관시설·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p> <p>4.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p>5. 대통령이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p> <p>제62조 (기준준수의무등) ①핵연료물질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2008.2.29></p> <p>1.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사업소안에서의 사용·분배·저장·운반·보관·처리 및 배출</p> <p>2.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사용시설등</p> <p>제57조 (핵연료물질의 사용등 허가<개정 1995.1.5>)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2008.2.29></p> <p>제15조의2 (계량관리규정<개정 1995.1.5, 2003.5.15>) ①제11조제1항</p>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중 핵물질(이하 “특정핵물질”이라 한다)의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 특정핵물질의 사용개시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6.12.30, 1999.2.8, 2003.5.15, 2008.2.29></p> <p>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계량관리규정이 특정핵물질의 적정한 계량관리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보안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9.2.8, 2003.5.15, 2005.12.30, 2008.2.29></p> <p>③삭제 <1999.2.8></p> <p>④삭제 <1999.2.8></p> <p>[본조신설 1986.5.12]</p>		
원자력법	<p>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원료물질의 사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핵원료물질사용자에 대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보안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9.2.8, 2008.2.29></p> <p>제64조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등<개정 1999.2.8>)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원료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p>	제64조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등) 제3항	시정 보안 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5, 1999.2.8,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원료물질을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이하 “핵원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라 핵원료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2008.2.29></p>		
원자력법	<p>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6.12.30, 1999.2.8, 2001.1.16,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또는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될 때 2.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또는 제65조의2제3항의 업무대행규정에 위반될 때 3. 삭제 <2005.12.30> 	제67조 (검사) 제2항	시정 보완 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66조 (허가기준등<개정 1999.2.8>) ①제65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9.2.8, 2001.1.16, 2005.12.30,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시설·사용시설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 의하여 발생한 피폭방사선량(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량한도(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생산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p>②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16, 2005.12.30,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3.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규정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p>제65조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등<개정 1999.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신청서에 안전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안전보고서 및 안전관리규정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은 생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1999.2.8, 2001.1.16, 2008.2.29></p> <p>제65조의2 (업무대행자의 등록)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업무 대행규정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원자력법	<p>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소안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 또는 사용시설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사업소안에서의 생산·사용·분배·저장·운반·보관·처리 및 배출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 사용이나 판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수리·개선·이전 또는 생산·사용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 기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8, 2001.1.16, 2008.2.29></p>	제71조 (기준준수의무 등) 제2항	안전 조치 명령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71조 (기준준수의무등) ①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2001.1.16,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사용시설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업소안에서의 생산·사용·분배·저장·운반·보관·처리 및 배출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 및 판매 		
원자력법	<p>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8, 2003.5.15,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및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미달될 때 2.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3. 삭제 <2005.12.30> 	제78조 (검사) 제2항	시정 보완 명령
원자력법	<p>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폐기시설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p>	제82조 (기준준수의무	안전 조치 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수리·개선·이전 또는 업무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 기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제82조 (기준준수의무등) ①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시설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 2.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 	<p>등) 제2항</p>	
<p>원자력법</p>	<p>제90조의6 (검사)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관독업무자가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2.8, 2005.12.30, 2008.2.29></p> <p>제90조의5 (등록기준) 제9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독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 제9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p>[전문개정 1999.2.8]</p>	<p>제90조의6 (검사) 제2항</p>	<p>시정 보완 명령</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원자력법	<p>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방사성물질등의 이전·오염의 제거 기타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개정 1986.5.12, 1999.2.8, 2008.2.29></p> <p>제98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개정 1986.5.12>)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6.5.12, 1999.2.8,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진·화재 기타의 재해에 의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2.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등이 발생한 때 3.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 	제98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제2항	안전 조치 명령
원자력법	<p>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등을 실시한 결과 이 법과 국제약속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8.2.29></p> <p>제103조 (보고·검사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p>	제103조 (보고·검사등) 제3항	시정 보완 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보관을 명할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2.8, 2001.1.16, 2008.2.29></p> <p>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 및 제출된 서류의 현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 법에 의한 각종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소·공장·선박·연구시설 또는 부지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1.1.16, 2008.2.29></p>		
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방사능방재대책법	<p>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호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 2.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물리적방호를 위한 시설·설비 또는 그 운영체제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3. 물리적방호규정을 위반한 때 4. 방호비상계획에 따른 조치가 미흡한 때 <p>제12조 (검사 등) ①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p>	제12조 (검사 등) 제2항	시정 명령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p>		
<p>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방사능방재대책법</p>	<p>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 2. 제3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 3.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사능재난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4.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한 때 <p>제38조 (검사)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제21조 및 제35조 내지 제37조에 규정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제38조 (검사) 제2항</p>	<p>시정 명령</p>
<p>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방사능방재대책법</p>	<p>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진료센터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 방사능재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원자력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중 핵물질을 취급</p>	<p>제44조 (보고·검사 등) 제1항</p>	<p>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보완 명령, 업무 지도 감독</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하거나 관련연구를 수행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하거나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방사능방재대책법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질문을 실시한 결과 이 법, 핵물질의방호에관한협약, 핵사고의조기통보에관한협약, 핵사고또는방사능긴급사태시지원에관한협약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간 협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4조 (보고·검사 등) 제3항	시정 명령
초·중등교육법	①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63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63조 제1항	시정 변경 명령
학교급식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9조 (출입·검사·수거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	제19조 (출입·검사·수거 등) 제3항	시정 명령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제16조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 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4.11></p> <p>1.『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p> <p>2.『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p>		
<p>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p>	<p>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수강료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제16조 (지도·감독 등) 제3항</p>	<p>시설 등 검사 개선명령</p>
<p>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p>	<p>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p>	<p>제5조 (평가인정의</p>	<p>시정 명령</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p> <p>제 5 조 (평가인정의 취소)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p> <p>2. 제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4항의 평가인정의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p> <p>3. 제3조제4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p>	취소) 제2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p>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 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가 이 법과 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p>	제12조 (시정명령 등) 제1항	시정 명령
지하수법	<p>10.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p> <p>제20조 (수질검사 등)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16></p>	제10조 제1항 제10호	허가취소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조사·시정 및 처분)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사용 또는 처분이나 이 법에 의한 승인의 이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공공차관을 도입·사용 또는 처분한 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정명령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의 체결) ⑥정부등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임원에 대한 해임·직무정지·경고·주의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17조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의 체결) ①정부등이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의 체결)2. 제1항의 약정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의 체결) 3. 이 법 또는 약정서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하는 경우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의 체결) 4. 이 법 또는 약정서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의 체결) 5. 예금보험공사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관세사법	4.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보전 또는 증자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7조의4 (자본금 등) ④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등록취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원장은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4. 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제38조 (검사대상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7, 2000.1.28, 2001.3.28, 2003.10.4, 2007.8.3> 1. 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시정명령 및 징계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3. 삭제 <2007.8.3>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5. 삭제 <2007.8.3>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 삭제 <2007.8.3>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 삭제 <2007.8.3>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3. 삭제 <1999.9.7> 14.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5.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1년 이내 업무정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②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관한 법률	<p>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p> <p>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당해 대부업자의 영업소중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p>		
상호저축은행법	<p>제24조 (행정처분) ②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p> <p>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제24조 (행정처분) ①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p>		6월이내 영업정지 및 취소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요구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세무사법	<p>제16조의15 (등록취소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1년이내 영업정지 및 취소
여신전문금융업법	<p>제14조의4 (등록의 취소 등) ①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6월 이내의 업무정지 및 취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p>제38조의2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제35조 (업무개선명령)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p>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관리자의 업무운영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범위 안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재산의 공탁 기타 업무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국유재산법</p>	<p>제28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관리청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p> <p>5. 관리청의 승인없이 사용·수익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p>		<p>취소 및 철회</p>
<p>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p>	<p>① 노동부장관은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p> <p>제4조의6 (진정과 권고의 통보)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p>제4조의7 (시정명령) 제1항</p>	<p>시정명령</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4. 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4조 (지도감독 등) 제1항	<p>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기금관리·그 운용상태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복지시설을 수탁·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제44조 (근로자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근로자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시정명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p>①노동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p> <p>3.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p> <p>4.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p>	제2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시정명령 인정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5.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p> <p>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제20조·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지원 또는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또는 용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이하 “위탁훈련”이라 한다)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위탁훈련기관”이라 한다)가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p> <p>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용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요건·내용 및 유효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p>	<p>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p>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등의 개발·보급사업 2. 설립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제한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제한을 받거나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p>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등)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p>	<p>제32조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의 설립 등) 제2항</p>	<p>시정명령 설립 허가 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발훈련의 위탁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p> <p>제2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용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31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노동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10호에 해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당하는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입한 때를 제외한다.</p> <p>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p> <p>5.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p> <p>6. 훈련생의 모집에 있어서 과대 또는 거짓의 광고를 한 경우</p> <p>7.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p> <p>7.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p>		
<p>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p>	<p>③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하여 그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1. 수익을 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p> <p>2.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제32조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의 설립 등) 제3항</p>	<p>시정명령 정지명령</p>
<p>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p>	<p>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p>제36조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양성)</p>	<p>시정명령 승인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①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자가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p> <p>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당해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실시경력을 갖춘 자일 것 3.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항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①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그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퇴직연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 (사용자에 대한 감독) 제1항	시정명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①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08.2.29>	제23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1항	시정명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④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4항	시정명령 재산상황 검사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1.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p> <p>2.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p> <p>3.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p> <p>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p> <p>③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계약체결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p> <p>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p> <p>3.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p> <p>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p> <p>④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⑤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노동부령이</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취급실적을 사용자(퇴직연금 취급실적에 한한다)·노동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⑥퇴직연금사업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05.7.29, 2008.2.29></p> <p>⑦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9, 2008.2.29></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p>⑤금융위원회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보고한 약관등이 이 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약관등의 변경·보완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7.29, 2008.2.29></p> <p>제20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⑥퇴직연금사업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p>	제23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5항	약관 등 변경·보완 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05.7.29, 2008.2.29></p>		
<p>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p>	<p>①노동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심문을 종료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발하여야 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제10조 (조사·심문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한다.</p> <p>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문을 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p> <p>③노동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p> <p>⑤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p>	<p>제12조 (시정명령 등) 제1항</p>	<p>시정명령</p>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의 수·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p>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기금이 제12조제2항,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제12조 (이사등의 신분) ②사용자는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12.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삭제 <2001.3.28>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p>3의2.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p>②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정률을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1.5></p>	제21조 (시정명령)	시정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③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신설 2001.3.28> 제15조 (기금의 증식) 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증식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등의 수익증권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p>제16조 (기금의 회계)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p> <p>③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기금의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을 보전한 후 기금에 전입한다.</p> <p>④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 (기금의 관리·운영사항 공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항시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차대조표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2. 손익계산서 3. 감사보고서 4. 사업보고서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산업안전보건법	①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34조의3 (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 제2호	안전인증 취소 6개월 이내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명령 개선명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부장관은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항질서법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확인결과 개항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선장 기타 관계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강 및 대체 2.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 3. 인원의 보강 4. 장애물등의 제거, 선박의 이동 및 선박 척수의 제한등 개항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농산물품질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의 결과를 한 결과 그 표시품이 표준규격, 품질인증의 기준,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 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또는 표시방법 등에 위반되거나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의 변경 등 시정명령, 표시의 정지, 판매의 금지 또는 인증·등록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 (표시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개정 2005.8.4>)	시정명령, 표시의 정지, 판매의 금지, 인증·등록 취소
농업협동조합	①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재무상태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건전성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건전성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 또는 요구하거나 그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인력 및 조직운용의 변경 등 중앙회의 설립목적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중앙회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견책 또는 감봉 2.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제165조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제1항	시정조치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5.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사료법	①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营业을 한 경우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제1항 제2호	등록취소
사료관리법	①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과징금 처분) 제1항	과징금
산지관리법	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4호, 제5호	허가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명할 수 있다.</p> <p>4.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5.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p> <p>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p> <p>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15조 (산지전용신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3.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6.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7.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9. 가축의 방목</p> <p>10.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p> <p>11.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p> <p>12. 물건의 적치</p> <p>13.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산림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산사태·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채취를 일시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설치·조립·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p>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채광을 하는 자는 『광산보안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인가·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7.1.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4.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5. 삭제 <2007.1.26>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 처분 7.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 <p>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6></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산지관리법	<p>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석재의 굴취·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5.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7.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p> <p>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개정 2007.1.26>) ①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p> <p>②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p>	<p>제3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개정 2007.1.26>) 제5호, 제7호</p>	<p>허가 취소, 석재의 굴취·채취의 중지</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산사태·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채취를 일시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설치·조립·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채광을 하는 자는 『광산보안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인가·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7.1.26></p> <p>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4.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5. 삭제 <2007.1.26>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7.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		
산지관리법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계약을 해제하거나 무상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4.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 (국유림의 산지안의 토석의 매각 등 <개정 2007.1.26>)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26>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제1항 제4호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도로법』·『철도건설법』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당해 공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광해)를 예방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굴취·채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용·공공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굴취·채취한 토석을 당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p> <p>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산사태·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채취를 일시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설치·조립·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채광을 하는 자는 『광산보안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인가·허가 및 승</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7.1.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삭제 <2007.1.2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 		
선원법	<p>①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이 법·「근로기준법」(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적용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제113조 (행정처분) 제1항	시정조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p>①산림청장은 등록수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제18조 (등록의 취소) 제1항 제4호	등록 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요구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때</p> <p>제17조 (시정요구) ①산림청장은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정 일수 이상의 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휴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p>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p>	<p>②산림청장은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제18조의3 (인증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은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p>	<p>제18조의3 (인증의 취소 등) 제2항 2호</p>	<p>인증 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다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18조의2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 ①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이 교육시간·교육과목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하여야 한다.</p>		
<p>원양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 제2호</p>	<p>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양어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2. 제6조에 따른 허가내용을 위반한 때</p> <p>제6조 (어업허가 및 신고) ①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한</p>	<p>제11조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제1항제2호</p>	<p>허가취소 정지</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양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경미한 사항의 신고와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상태, 원양어선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정수(정수)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⑤ 제4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원양산업발전법	<p>제11조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양어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4. 원양어업자가 제12조를 위반한 때</p> <p>제12조 (휴업의 신고) ①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p>	제11조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제1호 제4호	허가취소 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양어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원양산업발전법	<p>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양어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5.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p> <p>제13조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① 원양어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조업하여야 하며,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 조치에 대한 결의사항과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원양어업자는 국제수산기구 또는 외국이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활동의 금지 2.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하는 어선과의 존재(전재)·공동 	<p>제11조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제1항 5호</p>	<p>허가취소 정지</p>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조업·지원·재보급 금지</p> <p>3. 국제읍서버의 이동, 승·하선 등 임무수행에 따른 안전확보</p> <p>4. 항만국 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안전한 승·하선 및 숙식 등 편의제공과 선박검색 및 통신 허용</p> <p>5. 국제수산기구가 정하는 전제절차 규정의 준수</p> <p>6. 관리어종의 어획제한</p> <p>7. 통계 서류의 성실한 작성·제출</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국제협약의 이행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원양어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양어업자에게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⑤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항만법 제36조 제4호	<p>국토해양부장관은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p>	제36조 (등록의 취소 등) 제4호	등록취소 사업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한다. <개정 2008.2.29></p> <p>4. 제39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한 경우</p> <p>제39조 (예선업자의 준수사항)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예선업무의 수행이 매우 어려운 경우 3. 제76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항만법	<p>국토해양부장관은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p>	제36조 (등록의 취소 등) 제5호	등록취소 사업정지
경륜·경정법	<p>①경주사업자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p>	제5조 제2항	설비변경 기타 필요한 설치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주장의 설비가 적합하지 아니하여 경주장의 질서유지나 경주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경주사업자에게 설비의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설치를 명할 수 있다.</p>		
<p>공연법</p>	<p>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전물이 연소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 및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이를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p> <p>제5조 (연소자유해공연물 등) ②『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이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p> <p>③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32조</p>	<p>수거·압류·폐기명령</p>
<p>관광진흥법</p>	<p>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2. 제2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제27조 (지도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p>	<p>제35조 제2항 제2호</p>	<p>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방지하는 등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p>①시·도지사는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제21조를 위반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제21조 (개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연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일수 이상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p> <p>제26조 (시정 요구와 정관) ①시·도지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제27조 제4호	등록취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p>①시·도지사는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을 받고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정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제26조 (시정 요구와 정관)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p>	제27조 제5호	등록취소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정관)을 명할 수 있다.		
방송법	7. 제77조제2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7조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 제7호	허가, 승인,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방송법	8. 제81조에 따른 시설의 보수·개수·이전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81조 (설비개선명령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가 설치한 유선방송국설비 및 전송·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설의 보수·개수·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 제8호	허가, 승인,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방송법	9.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9조 (시정명령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	제18조 제9호	허가, 승인,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정 2007.7.27, 2008.2.29></p> <p>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p> <p>2. 이 법 또는 허가조건·승인조건·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p> <p>②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전송망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이 이 법 또는 허가조건·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방송법	<p>10.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제100조 (제재조치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제8호의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8.2.29></p> <p>1. 시청자에 대한 사과</p>	제18조 제10호	허가,승인,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2.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모자보건법	①산후조리업자가 제15조의8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5조의8 (시정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3.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5. 제15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원”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의 9 제1항	영업정지6월 또는 폐쇄
인체조직안전및관리 등에관한법률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 (기록의 작성 및 보고 등) ①조직은행은 연 1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에 관	제24조 제1호	시정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한 사항을 작성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조직이식의료기관은 이식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직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통보받은 조직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은 조직이식과 관련된 감염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광업법	<p>8.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제45조 (채광 등에 대한 지도·점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그 채광계획에 따른 채광행위(채광계획의 인가조건으로 산림형질변경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산림형질변경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하고, 광업권자가 채광계획과 다르게 채광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p>	제35조 제8호	<p>등록취소 (취소하여야 한다.)</p>
광업법	<p>7.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제57조 제7호	<p>조광권 취소 (취소할 수 있다.)</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45조 (채광 등에 대한 지도·점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그 채광계획에 따른 채광행위(채광계획의 인가조건으로 산림형질변경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산림형질변경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하고, 광업권자가 채광계획과 다르게 채광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p> <p>제61조 (준용) 조광권 및 조광권자에 관하여는 제17조, 제30조제1항,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업권”은 “조광권”으로, “광업권자”는 “조광권자”로 본다.</p>		
산업발전법	<p>5.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제20조의2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취소 등) ⑥금융위원회는 조합출자자의 보호와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와 조합에 대하여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8.2.29></p>	제20조의2 제1항 제5호	등록취소 (취소할 수 있다.)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산업표준화법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제22조 제5호	인증취소 (취소할 수 있다. 취소시 필수적 청문사항)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p>6.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증권거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영업정지의 명령을 하면서 1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p> <p>제148조 (임원·감독 등) 제8조, 제9조제2항 및 제15조, 『증권거래법』 제35조, 제37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제2호·제3호, 제56조 내지 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은 투자자문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9></p> <p>『증권거래법』</p> <p>제57조 (영업의 정지등) ①금융위원회는 증권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1.8, 1999.2.1, 2000.1.21, 2001.3.28, 2002.1.26, 2003.12.31, 2008.2.29></p> <p>1. 제42조·제44조·제44조의3·제44조의4·제47조·제49조 내지 제52조·제52조의2 또는 제54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p> <p>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p>	제152조 제6호	등록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3. 제188조제1항·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188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관여한 경우</p> <p>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5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해임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p> <p>5. 영업의 중지 또는 해산을 결의한 경우로서 공익과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②제5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경우에 준용한다.</p> <p>③금융위원회는 증권회사가 제36조·제43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임원에 대하여는 이유를 제시하고 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2.3.29, 1998.1.8, 1999.2.1, 2008.2.29></p>		
<p>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p>	<p>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증권거래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p>제35조 (인가사항) ①증권회사는 회사를 합병하거나 영업의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양도하거나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1.13, 1998.5.25, 1999.2.1, 1999.5.24, 2008.2.29></p> <p>제63조 (명의대여의 금지) 증권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증권업을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p>	<p>제152조 제7호</p>	<p>등록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도로교통법	<p>1. 교통안전교육기관이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p> <p>②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설비 및 강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p> <p>2. 제120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그 지부·지소 및 교육기관</p> <p>3. 『평생교육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부설 시설</p> <p>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교육시설</p> <p>5.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p>	제79조 제1호	지정취소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건물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p>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제42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제21조</p>	제25조 제1항 제5호	허가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후, 그 사용을 개시하기 위한 신고를 하기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2.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 가입 <p>제4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 ①시·도지사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 조치를 취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해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영업활동이 중단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p>		
먹는물 관리법	<p>12. 제45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제45조 (지도와 개선명령)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보전이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p> <p>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조시설이 제20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 또는 부담금증명표</p>	제48조 제1항 제12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지 제조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47조 (폐기처분 등) ①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제36조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에 위반되는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p>환경부장관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제39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개정 2007.5.17>)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지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p>	제40조	조업정지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p> <p>제32조 (배출허용기준) ①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시·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3조·제37조·제39조 및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5.17></p> <p>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 안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 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당해 지역</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안에 당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 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p> <p>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7></p> <p>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p> <p>2.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p> <p>⑧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p>13.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제39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개정 20</p>	제42조 제1항 제13호	변경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07.5.17>)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p>		
<p>폐기물관리법</p>	<p>13.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④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p>	<p>제27조 제2항 제13호</p>	<p>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p>
<p>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p>	<p>제33조 (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33조 (시정조치)</p>	<p>시정조치</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p>제34조 (시정권고)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가맹본부는 당해 권고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가맹본부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본다.</p>	제34조 (시정권고)	시정권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p>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 3 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p> <p>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p>	제5조 (시정조치)	시정조치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p> <p>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p> <p>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p> <p>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p> <p>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p> <p>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p>		
소비자기본법	<p>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1.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p> <p>2.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p> <p>가.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파기 등의 권고</p> <p>나.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파기 등의 명령</p> <p>다. 제8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p> <p>3.그 밖에 물품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p>	제46조 (시정요청 등)	시정요청
소비자기본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 (시정조치 등) 제1항	시정조치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20조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①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비자기본법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물품등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①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 (시정조치의 요청 등) 제2항	시정조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③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①시·도지사는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때 제16조 (감독)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결과 조합이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 (설립인가의 취소)	취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의2 (시정조치) 제1호	시정조치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 6 조 (일반원칙) ①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p> <p>②약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p>제14조 (소제기의 금지등)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p>①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조의 시정조치에 앞서 당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명하여 진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p>	제3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1항	시정권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32조 (시정조치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1.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제5항 내지 제9항, 제24조의2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4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p> <p>2.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p> <p>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p> <p>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p> <p>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p> <p>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p>		
<p>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p>	<p>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제13</p>	<p>제25조 (시정조치) 제1항</p>	<p>시정조치</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등의 지급, 범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p> <p>제 3 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4.1.20, 2005.3.31></p> <p>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③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p> <p>제 4 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p> <p>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p> <p>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p> <p>제12조 (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목적물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2조의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p> <p>③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수</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④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⑤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⑥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⑦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⑨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⑩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공사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p> <p>보증금액 = $\frac{\text{공사기간(월수)}}{\text{공사기간(월수)}} \times 4$</p> <p>공사기간(월수)</p>		

3.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p> <p>하도급계약금액 - 계약상 선급금 기성부분에 대한</p> <p>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수)}} \times \text{대가의 지급주기} \times 2$</p> <p>공사기간(월수) (월수)</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보증은 현금(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 <p>③원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서 그 공사기간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할 수 있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것외에 하도급계약이행보증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원사업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p> <p>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p> <p>③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당해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증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공제한다.</p> <p>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p> <p>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5.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38조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 도급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법 제83조제12호	영업정지 8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4월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		영업정지 2월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2	7.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31조 (골재채취허가의 취소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9조제1항제10 호의2	영업정지 4개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별표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때 제 4 조 (사업면허등) ①도시철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법 제19조제1항제1호	사업면허 취소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32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때	법 제110조제9항제1호	형식승인 취소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3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대행의 협정이 체결되거나 지정된 때	법 제113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2	7.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법 제9조제2항	면허취소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별표4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은 때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	지정취소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별표 6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때 제26조 (수로조사업 및 해도제작업의 등록등) ①수로조사업 또는 해도제작업(이하 “수로사업”이라 한	법 제30조제1항제1호	등록 취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수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는 때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수로사업자”라 한다)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로 구분한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p>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때	법 제13조 제1항제1호	면허취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법 제14조 제2항제1호	지정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9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법 제38조 제2항제1호	지정취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장의 인 증을 받은 때	법 제46조 제4항제1호	인증취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2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5항제1호	승인취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2	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5항제2호	정지3월	정지6월	승인취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1조 제1호	등록취소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호	인증취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18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 득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1 호	자격취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의 규정 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제2항 제1호	지정취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7)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허가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때		허가취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1. 안전관리 대행기관(법 제 15 조 의 2 관련)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지 정 취 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 관(법 제30 조제6항관련)	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지 정 취 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다.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 정 취 소	
		라. 정당한 사유없이 재해예방 지도를 거 부한 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 정 취 소	
		마. 재해예방 지 도에 차질을 초 래하거나, 업무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1) 지도 대상사업장에 최근 1년간 3회 이상 지도업무의 수행을 개을리 한 때 (2) 인력기준에 해당하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 정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를 게을리 한 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 아니하는 자가 지도업무를 수행한 때		3월	6월	취 소	
		(3) 지도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대가를 받은 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 정 취 소	
		(4) 지도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당해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도소홀로 인정될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바.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2)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 방해·거부·기피한 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 정 취 소	
		(3) 최근 1년간 일반기준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6. 유해물질의 제조·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허 가 취 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사용허가(법 제38조관련)		나.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다.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 사용한 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라.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사용설비의 수리·개조·또는 이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마. 자체검사결과 이상을 발견하고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바.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 특정화학설비 또는 부속설비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 국소배기장치·제진장치 및 배출가스 처리장치에 대하여 매년 1회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허가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4) 허가물질에 대한 작업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취급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작업을 계속한 때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5)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한 때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6) 관계공무원의 지도 감독업무를 방해·거부·기피한 때		영업정지 4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7. 작업환경측정기관(법 제42조관련)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지정 취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8. 건강진단기관(법 제43조관련)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지정 취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9. 유해·위험작업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법 제47조관련)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지정 취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10. 안전·보건진단기관(법 제49조관련)	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지정 취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이 관명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2. 법 제5조제1항 또는 법 제8 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활동의 허가(이하 이 표에서 “허가”라 한다)를 받거나 시험·연구 등의 승인(이하 이 표에서 “승인”이라 한다)을 얻은 때 第5條 (漁業등의 許可) ①外國人は 特定禁止區域이 아닌 排他的經濟水域에서 漁業活動을 하고자 할 때에는 船舶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법 제13조	취소	-	-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한 때	법 제20조제1항제1 호	등록취소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수업업의 신고를 한 때	법 제20조제2항제1	당해 명칭의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호	비료수입 · 판매금지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10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법 제23조제1호	등록취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제1 호	등록취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	2. 거짓 그 밖의 방법으로 산림기술자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30조제5항제1 호	자격취소			
수산물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제37조 제1호	취소	-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가.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등 록을 한 때	법 제20조제1항제1 호	등록취소	-	-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2	8. 수의사가 학위수여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한 때	법 제32조제2항제5	면허효력 정지	면허효력 정지 1월	면허효력 정지 6월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호	15일					
어장관리법시행규칙 별표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변경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0조	등록취소					
			허가 또는 신고어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때	법 제11조제 1항제1호	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제25조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개정 2007.1.19>) ①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 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	법 제35조제1항제1호	영업 폐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작하는 경우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그 밖에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제26조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개정 2007.1.19>)	법 제35조제2항제1 호	허가· 등록 취소 또는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19></p> <p>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2008.2.29></p> <p>③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p>		영업 폐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p> <p>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p>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7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40조제1호	자격 취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p>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7조에 따른 신고를 한 때</p> <p>제57조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p>	법 제67조제1항제1호	영업 폐쇄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경우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 제5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작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법 제67조제2항제1호	영업폐쇄 등록취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영업폐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3) 법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위반	(가) 경미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정 지1월	영업정 지2월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영업 폐쇄명 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2.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8조	국내: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p>	<p>제 6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이 법, 『형법』 제228조,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벌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p>제1항제2호</p>	<p>영업정지 1년 국제: 등록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때 제12조 (계량기의 형식승인) ①계량기를 제작(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작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계량기의 형식에 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미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16조 제1항제2호	해당계량 기의 형식승인 취소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4	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법 제30조제1항제1 호	지정 취소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2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	-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법	자격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별표11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제18조제3항제1호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제 5 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①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중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13조제1항제1호	등록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제 9 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석유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당해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13조제2항제1호	등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2. 윤활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3.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4.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10만킬로리터 이하인 경우 5. 제4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6.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3항제1호	등록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기관의	법	지정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지정을 받은 때	제28조제1항제1호 법 제28조제2항제1호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검사의 승인을 얻은 때	제28조제2항제1호	승인 취소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5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때	법 제7조제1호	안전 인증 취소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第11條 (補修業의 登錄) ①昇降機補修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시·도지사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12조제1항제2호	등록 취소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의4	1.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	지정 취소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의 2제1호	지정 취소			
액화석유가스의	자.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요자의 요청을 이	법 제9조	사업	사업	사업	허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0	<p>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제14조 ④가스공급자는 수요자가 다음 각 호의 요청을 하면 2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p> <p>1.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 개선을 요구한 경우</p> <p>2.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설 철거를 요청한 경우</p>	제1항제12호	정지 또는 제한 3일	정지 또는 제한 10일	정지 또는 제한 20일	취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1호	안전 인증 취소			
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3조제1호	허가 취소			
전기공사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한 때	법 제28조제1항제1 호	등록 취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73조의6	등록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별표15의2		제1호	취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때	법 제4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	-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저르 받은 때	법 제9조 제1항제1호	인증 취소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지정 취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	인증 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1.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등록한 때	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1호	등록 취소		
		전문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 등록 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별표35	2.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때	전문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1의2	1.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7조 제3항 제1호	등록취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2	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2호	등록 취소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표17	2.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45조	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1) 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제18조 (허가 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		법 제18조 제1항부터 제3호까지	허가 취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p> <p>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3. 시설설치자가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해 배출시설을 철거한 경우</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법 제32조제1항제1호	허가 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1호	등록 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p>(3)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p> <p>제14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개정 2006.12.28>)③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자본금·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전년도 용역이행실적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p>	법 제25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22)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여받은 때 제36조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허가 취소	
기상법 시행규칙 별표1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법 제28조	등록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1) 법 제55조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55조 (인증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55조 제1호	인증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66조	지정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한 경우	법 제66조	업무	업무	업무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행규칙 별표36			정지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69조 제1호	지정 취소	-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2호	등록 취소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1 호	지정 취소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3조제5항제1 호	지정 취소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제1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 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21조 (영업의 허가 등) ①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법 제48조제1항제4 호	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②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④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1	<p>5)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15조에 따른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개선 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업 중인</p>	법 제17조	조업 정지	폐쇄, 허가 취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 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1	1) 법 제34조제1호에 따른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34조 (인증의 취소)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법 제34조제1호	인증취소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1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45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代行)하	법 제45조제5항제1호	지정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계 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사업장 폐쇄명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호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호	허가 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2호	등록 취소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1)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 (가) 당해지역이 악취	법 제13조	사용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별표7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		증지명령			
		(나) 당해지역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법 제13조	폐쇄명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	지정취소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2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15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제2호	허가취소			
		(3) 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제3호	허가취소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2	나.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입 등의 허가를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법 제17조제1항제1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받은 자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받은 경우	호				
		(2)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2호	허가 취소			
		(3)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3호	허가 취소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2	다.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허가 취소			
		(2)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허가 취소			
		(3)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허가 취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4)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4호	허가 취소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2	마. 생물자원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1호	등록 취소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별표2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호	면허취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호·제36조제2호	등록 또는 허가 취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록 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	(9)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법 제23조의6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법 제23조의10 제1항제1호	등록 취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 호	허가 취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3)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 호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 호	등록 취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2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 호	등록 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2조 제1호	지정 취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행규칙 별표8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과학관육성법	①시·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2002.12.2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제12조 (등록의 취소) 제1항 제1호	등록 취소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제15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기상법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8조 (등록의 취소 등) 제1호	기상사업 등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기상법</p>	<p>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④기상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35조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표준화, 기상재해 예방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의 증진 등을 위하여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단체의 직원 및 기상사업자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제35조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제4항 제1호</p>	<p>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p>
<p>기술개발촉진법</p>	<p>제14조 (신기술인증의 취소 <개정 2005.12.30>)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8.2.29> 1. 속입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인증</p>	<p>제14조 (신기술인증의 취소) 제14조 제1항 제1호</p>	<p>인증 취소</p>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을 받은 경우		
기술개발촉진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제17조 (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제1항 제1호	등록 취소
사립학교법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제58조 (면직의 사유) 제1항 제5호	직권 면직
우주개발진흥법	제13조 (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사허가를 받은 경우	제13조 (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제1조 제2호	발사허가 취소
원자력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때	제12조의3 (표준설계인가의 취소) 제12조의3 제1호	표준설계인가의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원자력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6.5.12, 1995.1.5, 1999.2.8, 2008.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제17조 (건설허가의 취소등) 제1항 제1호	건설허가 취소, 1년 이내 건설공사 정지 명령
원자력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6.5.12, 1995.1.5, 1999.2.8, 2001.1.16, 2008.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제24조 (운영허가의 취소등<개정 1995.1.5>) 제1항 제1호	운영허가 취소, 1년 이내 운영 정지 명령
원자력법	①핵연료주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허가를, 주무부장관은 그 지정을 각각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6.5.12, 1995.1.5, 1996.12.30, 1999.2.8, 2008.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때	제46조 (허가등의 취소등) 제1항 제1호	허가, 지정 취소 1년 이내 사업 정지 명령
원자력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연료물질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	제60조 (사용 또는 소지허가의	허가 취소 1년 이내 업무 정지 명령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6.5.12, 1995.1.5, 1999.2.8, 2008.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취소등<개정 1995.1.5> 제1호	
원자력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신고사용자에 한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1.1.16, 2008.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한 때	제68조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개정 1999.2.8, 2001.1.16>) 제1항 제1호	허가 등록 취소, 1년 이내 업무정지, 사용금지 명령
원자력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8.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제79조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의 취소등) 제1항 제1호	허가 취소, 1년 이내 사업 정지 명령
원자력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독업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8.2.29>	제90조의7 (관독업무자 등록의 취소등<개정	등록 취소, 1년 이내 업무 정지 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1999.2.8> 제1항 제1호	
원자력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제93조 (면허의 취소등) 제1항 제1호	면허 취소, 3년 이내 면허 정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감독청은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제11조 (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	승인 취소,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제17조 (행정처분) 제1항 제1호	등록 말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 6 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7.12.21]</p>		
<p>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p>	<p>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p> <p>6. 등록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p>	<p>제17조 (행정처분) 제1항 제1호</p>	<p>등록 말소 1년 이내 교습 정지 명령</p>
<p>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p>	<p>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p>	<p>제17조 (행정처분)</p>	<p>교습소 폐지 명령</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p>	제2항 제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p>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p> <p>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p>	제17조 (행정처분) 제2항 제2호	교습소 폐지 명령 6개월 이내 교습 정지 명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p>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p>	제17조 (행정처분) 제3항 제1호	과외교습 중지 명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p>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p>	제17조 (행정처분)	과외교습 중지 명령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제3항 제2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제5조 (평가인정의 취소) 제1항 제1호	평가인증 취소
건축사법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된 때	제11조 제1호	자격취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 이 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제55조 제1항 제2호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조치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면허의 취소 등) ① 면허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제32조 제1항 제1호	면허 또는 실시계획승인을 취소 또는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시설물, 그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면허 또는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자·점유자, 그 밖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제거·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원상회복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p>		<p>밖의 공작물의 소유자·점유자, 그 밖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제거·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원상회복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p>
공유수면매립법	<p>3. 제10조에 따른 면허의 부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제10조 (면허의 부관) 면허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p>	제32조 제1항 제3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p>제35조 (자격의 취소) ①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p>	제35조 제1항 제1호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제38조 (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제38조 제1항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2호	
교통안전법	제43조 (등록의 취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제43조 제1호	등록취소
도로법	거제8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34조·제38조·제59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제 5 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다른 국가	제83조 제2호	이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34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①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p> <p>1. 상급도로의 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연결되거나 접속되는 하급도로의 연결 구간 또는 접속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 유지의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p>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p> <p>④ 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가 입회한 가운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p> <p>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 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려면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p>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⑥ 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공무원을 차량에 동승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⑦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는 제58조 제2항을 준용한다.</p> <p>제64조(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①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제공하는 통로,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p> <p>② 자동차 전용도로나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함에 따라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에게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p>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	제38조 제1항 제2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
물류정책기본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31조 제1호	지정취소
물류정책기본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39조 제1호	인증취소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제25조 제1호	등록취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33조 제1항 제1호	조종면허 취소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효력정지
주차장법	제19조의8 (안전도인증의 취소 <개정 2003.12.31>)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3.12.31>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증을 받은 경우	제19조의8 제1호	인증 취소 (안전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지하수법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5.5.31>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항 제1호	허가취소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측량법	제6조의7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등) ①시·도지사 는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0>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제6조의 7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측량법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행한 때	제6조의 7 제4항	등록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3호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천법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제69조 제1항 제2호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관세사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제17조의2 (관세법인의 등록) ①관세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취소
관세사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제19조 (통관취급법인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통관업을 할 수 있다. 1. 운송·보관 또는 하역을 업으로 하는 법인 2. 제1호의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등록 취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하여 설립한 법인</p> <p>3.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이하 이 조에서 “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p>		
<p>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p>	<p>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p> <p>제 8 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1조 각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p> <p>1. 제5조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p> <p>2.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p> <p>3.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및 자산운영위탁계약의 개요</p> <p>4. 자산보관회사의 명칭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명칭</p> <p>5. 정관에서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p> <p>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p>	<p>제54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p>	<p>등록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p>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p>	<p>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p>제42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③외국자산운용회사(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기업구조조정업무 및 자산운용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p>	<p>제55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p>	<p>등록취소 및 6월 영업정지</p>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내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p>		
<p>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p>	<p>②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p> <p>제 3 조 (등록) ①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을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p> <p>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출자자 및 임</p>	<p>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p>	<p>등록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원의 성명 및 주소</p> <p>3.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p> <p>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2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소를 모두 포함한다)</p> <p>5. 영위하고자 하는 대부업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갱신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부에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등록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일자)·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p> <p>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05.5.31></p> <p>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p>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⑦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등록갱신의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정·승인·확인등을 받은 경우	제46조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취소, 변경, 중지변경, 원상회복
상호저축은행법	②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제24조 (행정처분)	6월 영업정지 및 취소
신용협동조합법	②금융위원회는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5조 (조합등에 대한 행정처분)	6월 이내 업무정지 및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외국환거래법	<p>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p>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취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p>①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p> <p>제 3 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p>	제38조의2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취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금융거래법	<p>①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p> <p>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과 등록) ①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p> <p>②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p> <p>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p>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p> <p>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p> <p>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p> <p>가.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p> <p>나. 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p> <p>다.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 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p> <p>2.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p> <p>④제3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p>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2장 및 제3장(제19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6조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9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p> <p>⑤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p>금융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p> <p>제3조 (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 ①이 법에 의한 채권유동화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2.29></p>	제18조 (인가취소등)	6월 이내 영업정지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주식회사일 것</p> <p>2. 자본금이 250억원 이상일 것</p> <p>3. 자기자본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한국주택금융공사법	<p>③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p> <p>1. 등록신청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필요한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p>	제23조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등록거부
국유재산법	<p>①관리청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p> <p>3.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때</p>	제28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취소 및 철회
주세법	<p>①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p>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면허 취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주류의 주류제조면허에 한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p> <p>3.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때</p>		
	<p>①노동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개정 2007.1.26></p>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경우</p> <p>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용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p> <p>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제20조·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지원 또는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또는 용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이</p>	<p>제2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1항 제1호, 제2호</p>	<p>인정 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하 “위탁훈련”이라 한다)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위탁훈련기관”이라 한다)가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p> <p>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요건·내용 및 유효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사업주·근로자·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에 대하여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p>	<p>제2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4항</p>	<p>금액 반환 명령 추징</p>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6></p> <p>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p> <p>가.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금액 :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p> <p>나.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 :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p> <p>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용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사업주·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p> <p>제2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개정 2007.1.26></p>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 규정에</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의한 인정을 받은 경우</p> <p>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용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p> <p>3.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p> <p>4.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5.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p> <p>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 또는 용자받고자 하거나 받은 사업주·근로자·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근로자·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등을 지원 또는 용자받고자 하거나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용자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p>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용자 받거나 지원·용자받고자 한 경우 2. 위탁훈련기관과 공모하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①노동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 제28조 (지정직업훈련시설) ①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위탁훈련기관이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각각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제1항 제1호	지정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개정 2006.12.21, 2007.1.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훈련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시설의 건축물 용도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당해 훈련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실시경력을 갖춘 자일 것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별로 당해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인 이상을 둘 것. 다만, 당해 훈련직종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당해 시설에서 3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p>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라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 외의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내용, 지정의 세부기준, 지정·변경지정·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①노동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5.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p> <p>6. 훈련생의 모집에 있어서 과대 또는 거짓의 광고를 한 경우</p>	<p>제31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제1항 제5호, 제6호</p>	<p>지정 취소 1년 이내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지 명령</p>
	<p>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p>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제2항</p>	<p>설립 허가 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등의 개발·보급사업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p>		
	<p>①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p>제3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제1항</p>	<p>자격 취소</p>
	<p>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p>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①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p>	<p>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제3항</p>	<p>승인취소</p>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자가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p>		
	<p>①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p> <p>제14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p> <p>2.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p> <p>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p>	<p>제18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제1항 제2호</p>	<p>등록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4.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p> <p>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p> <p>제14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3.28></p> <p>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p> <p>2.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p> <p>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p> <p>4. 삭제 <2007.8.3></p> <p>5.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p> <p>6. 『새마을금고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p> <p>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p> <p>[시행일:2009.2.4] 제14조제1호, 제14조제4호</p>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8.2.29>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	제17조 (인가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	설립인가 취소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제18조 (인증의 취소) 제1항 제1호	인증 취소
	①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제15조의2 (지정의 취소등) 제1항 제1호	지정 취소
	①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34조의3 (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	안전인증 취소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제19조	고용허가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p> <p>제8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용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p> <p>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p> <p>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외국인근로자 성명 등을 기재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p>	<p>근거법령</p> <p>(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제1항</p>	<p>행정처분기준</p>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를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p> <p>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p> <p>⑥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p> <p>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p>		
	<p>①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9조·제23조제1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2.8, 2007.1.19></p>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 또는 허가를 한 때</p>	<p>제36조 (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개정 2007.1.19>) 제1항</p>	<p>6월 이내 사업정지 등록 허가 취소</p>
	<p>노동부장관은 측정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p>	<p>제7조의2(측정대행자의 지정 취소)</p>	<p>지정 취소 6월 이내 업무 정지 명령</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적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①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때 제 7 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허가의 유효기간등) ①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효기간의 만료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허가의 취소등) 제1항	허가 취소
	①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제12조 (허가의	허가 취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하는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p> <p>14.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때</p> <p>제18조 (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취소등) 제1항</p>	<p>6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p>
낙시어선어법	<p>①시장·군수는 낙시어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쇄 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3></p> <p>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p>	<p>제20조 제1항 제1호</p>	<p>영업정지, 영업폐쇄</p>
농어촌정비법	<p>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p>	<p>제102조 제1항 제2호</p>	<p>허가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p> <p>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가.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나. 제12조제3항·제15조제2항·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제27조제1항·제29조제3항·제31조제2항·제33조제1항·제36조·제68조제2항·제69조제2항·제82조제2항·제88조제1항·제92조제3항 또는 제95조제2항에 따른 승인 다. 제29조제3항·제72조제1항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지정</p> <p>제97조 (마을 정비구역 등 지정·고시의 효력) ① 제10조·제12조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이나 사업 시행 인가 내용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지역, 제29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제68조, 제80조 또는 제81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나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p>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의 형질변경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토석(토석)·사력(사력: 모래와 자갈)의 채취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5. 가스·전기·열·상수도의 공급시설, 송유시설, 통신, 선로설비 및 하수도의 설치 6. 묘지· 화장장· 봉안당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7. 비석·기념탑·제사용 시설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 <p>제10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8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사업(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려면 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그 시행계획을 제11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그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수혜면적(수혜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이의(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③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적부(적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정(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도지사이면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p> <p>④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의 공고, 이의신청, 재정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 (사업 시행 인가나 시행계획의 변경)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p>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청이 없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개수·보수하거나 준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8.2.29></p> <p>1.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촌공사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 시·도지사</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 시행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인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인가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15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관리와 처분)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취토장: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한다.</p> <p>②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관리·처분하려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 기금의 상환 및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자원 조성 2.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 3.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용도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p>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된 재산을 처분한</p>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⑤ 한국농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준설 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22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한국농촌공사인 경우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3조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p> <p>1. 폐지하려는 농업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전용)된 때</p> <p>2. 폐지하려는 농업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때</p> <p>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손괴)되어 농업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때</p> <p>제27조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도지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광역시 자치구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만 해당된다. 이하 같다)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촌과 준농어촌의 지역에 대하여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군·구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9조 (마을정비구역의 지정)③ 농림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부장관이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하면 이를</p>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고시하여야 한다.</p> <p>제31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 중 마을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시행계획(이하 “마을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운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p> <p>제33조 (마을정비시행계획의 변경)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p> <p>제36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촌공사는 제30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나 위탁 시행자로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 지역 시·도지사가 승인하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 지정, 사업자 등록, 계획 승인 또는 시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p> <p>1. 도시관리계획구역인 마을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행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p> <p>2.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 주체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p> <p>3.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같은 법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p> <p>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의 인가</p> <p>5.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p> <p>제68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② 시장·군수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그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69조 (관광농원의 개발) ②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72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지정 등)② 시</p>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장·군수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81조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 ① 제80조에 따라 고시된 한계농지 정비지구가 아닌 한계농지등을 정비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제80조에 따라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p> <p>제82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② 시장·군수 외의 자가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세워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정비사업계획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88조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① 시장·군수는 관할</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농촌지역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한다.</p> <p>제9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제8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려거나 제29조, 제68조, 제69조 또는 제82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개정 2007.4.6, 2007.8.3, 2007.12.27, 2008.2.29, 2008.3.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른 보호수면 구역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 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 등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p> <p>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사방지) 지정의 해제</p> <p>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p> <p>8.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p> <p>9. 『도로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접도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p> <p>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의 개설 허가</p> <p>1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p> <p>12.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승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허가 및 배수설비의 설치신고</p> <p>13.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p> <p>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p> <p>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p> <p>1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 면허,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p> <p>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무연분묘)의 개장(개장) 허가</p> <p>18.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70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p> <p>19. 『자연공원법』 제23조·제25조에 따른 공원구역과</p>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공원보호구역에서의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p> <p>20.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p> <p>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p> <p>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p> <p>23.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p> <p>24.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p> <p>② 제7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개설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p> <p>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p> <p>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의 영업소 개설 통보</p> <p>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정하는 영업의 신고</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을 할 경우에 제1항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9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등 농림수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p>		
도선법	<p>①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7.1.13, 1999.2.5, 1999.2.8, 2005.12.29, 2008.2.29></p>	제9조 제1항 제1호	취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17조 제1항 제1호	취소
사료관리법	③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분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사료성분등록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12조 제3항 제1호	취소
사료관리법	①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25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산림관리법	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	제20조 제1호	허가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p>		
산지관리법	<p>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석재의 굴취·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p>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p> <p>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개정 2007.1.26>) ①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p>	제31조 제1호	허가 취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p> <p>②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선박투자회사법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47조 제2호	허가 취소
선박평형수관리법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	제18조 제1호	형식승인의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p><개정 2008.2.29></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경우</p> <p>제17조 (형식승인 및 검정) ①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그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p>		
선박평형수관리법	<p>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p>	제19조 제3항 제1호	취소
선박평형수관리법	<p>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p>	제26조 제1항 제2호	등록 취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때	제54조 제1항 제1호	설립인가 취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①산림청장은 등록수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제18조 제1항 제1호	등록 취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②산림청장은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인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p> <p>제18조의2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 ①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이 교육시간·교육과목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하여야 한다.</p>		
원양산업발전법	<p>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양어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때</p>	제11조 제1항 제1호	허가취소
항만법	<p>국토해양부장관은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p>	제36조 제1호	등록취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p>		
항만법	<p>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승인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항만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경우</p> <p>제9조 (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②관리청이 아닌 자 (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대상이 아닌 항만시설에 대한</p>	제63조 제1호	허가취소 승인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유지·보수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②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제35조 제1항 제1호	영업폐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35조 제2항 제1호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p> <p>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p> <p>제11조 (지정지구 안 행위제한)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 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적치(積置) 4.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5. 그 밖에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3조 제1호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② 역사문화환경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이축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4. 도로의 신설·확장 5. 그 밖에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공연법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p>제14조 (무대예술전문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을 부여한다.</p> <p>② 무대예술전문인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 내지 3급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p>	제14조의2	자격취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기타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연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 사위(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검정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	지정취소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종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40조 제1호	자격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국민체육진흥법	<p>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p>제11조 (체육지도자의 양성)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학교 체육 교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연수와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제12조 제1항	자격취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p>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p> <p>제52조 (등록 등) ①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1. 정관의 목적사업</p>	제56조 제2호	등록취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2.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p> <p>3. 사업관리자의 명칭</p> <p>4. 자산관리자의 명칭</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문화산업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일 것</p> <p>2.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관리자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 에 있지 아니할 것</p> <p>3.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p> <p>4. 설립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p> <p>5.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p> <p>6. 등록신청서류 중에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p> <p>③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5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문화재보호법	<p>① 시·도지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1. 제2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p> <p>제21조 (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p> <p>2.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p>	제23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문화재보호법	<p>① 시·도지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제23조 제1항 제2호	등록취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p>		
문화재보호법	<p>① 시·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p>	제28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p>①시·도지사는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p>	제27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p>①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p>	제2조 제2항 제1호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때</p>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p>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정지시켜야 한다.</p> <p>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p>	제42조 제2호	상영금지· 상영중인 영화 정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p>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또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제52조 제1항	등급분류· 확인 취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p>	제67조 제2항 제1호	등록취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방송법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	제18조 제1호	허가·승인 또는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 제 4 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1년
전파법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제2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제26조 (변경허가 <개정 2007.12.21>) ①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13>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무선설비가	제72조 제1항 제2호	허가취소 또는 운용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준공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준공신고를 하고 변경허가를 받은 대로 변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2항·제6항과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4항,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선국”은 “무선설비”로 본다.		
정보화촉진기본법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때	제22조의2 제1호	지정취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	제18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제13조 제1항 제1호	지정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37조 제1항 제1호	지정취소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37조 제3항 제1호	영업정지 6월 또는 폐쇄명령 (재가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업법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제26조 제1호	허가취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24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제24조 제2항 제1호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6월 (우수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 4 조(등록) ① 외국 민간원조단체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외국 민간원조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제4호	등록취소
재해구호법	1. 모집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제17조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①의연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미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모	제23조 제1호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집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집허가신청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허가신청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이 명시된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4. 모집비용을 제외한 모집금의 납입방법 및 모집물품의 전달방법 등이 명시된 전달계획 5.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6. 그 밖에 의연금품의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때	제22조 제1호	허가 또는 등록취소
청소년활동진흥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36조의 3 제1호	인증취소 또는 인증정지6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제21조 (인증의 취소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제21조 제1항 제1호	인증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법률	<p>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p>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p>제21조 (인증의 취소 등) ②중소기업청장은 시험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p>	제21조 제2항 제1호	지정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p>제30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①중소기업청장이나 시·도지사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p> <p>제29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p>	제30조 제1항 1호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단, 승인취소시 필수적 청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p> <p>②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p> <p>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려면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p>	<p>①중소기업청장은 승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39조에 따른 지원을 끝낼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p>	<p>제38조 제1항 제1호</p>	<p>승인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단, 승인 소시 필수적 청문절차 규정)</p>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39조 (협업사업의 지원) 정부는 승인사업자가 원활하게 협업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업자금 지원 2. 정보제공 3. 정보화 촉진 4. 인력양성 및 지도·연수 5. 기술개발자금 출연 등 		
<p>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p>	<p>제53조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①중소기업청장은 제50조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p>제53 제1항 제1호</p>	<p>등록취소 (취소할 수 있다.)</p>
<p>계량에 관한 법률</p>	<p>제22조 (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p>	<p>제22조 제1호</p>	<p>지정취소 (취소하여야 한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때</p>		
<p>계량에 관한 법률</p>	<p>제38조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시·도지사는 제작업자·수입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자</p> <p>제 6 조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p>	<p>제38조 제1호</p>	<p>등록취소 (취소하여야 한다.)</p>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계량기의 제작업 2. 계량기의 수리업 3. 계량을 하고 그 계량한 값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업(이하 “계량증명업”이라 한다)		
광업법	7. 제42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42조 (채광계획의 인가) ④광업권자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탐광실적을 인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아 광물을 채굴하여야 한다.	제35조 제7호	등록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변리사법	제6조의8 (설립인가의 취소) ①특허청장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제6조의 8 제1호	인가취소 (취소할 수 있다.)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신뢰성인증의 취소)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뢰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뢰성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뢰성인증을	제29조 제1항 제1호	인증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받은 때		
산업발전법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인증을 실시한 경우	제22조의3 제3호	인증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필수적 청문사항)
산업발전법	제20조의2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취소 등) ①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8.2.29>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제22조 (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제22조 제1호	인증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필수적 청문사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4.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제32조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	제34조 제4호	등록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유대체연료의 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를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p>제33조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등) ①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제 7 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제7조 제1호	인증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3조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취소) 산업자 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 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제22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 등) ①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고 자 하는 자(이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라 한 다)는 자본금·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 록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3조 제1호	등록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필수적 청문사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3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 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33조 제1호	지정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필수적 청문사항)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p>제24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p>	제24조 제1항 제1호	지정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p>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5조제2항 단서,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p>	제24조 제1항 제2호	지정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6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제26조 제1호	등록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p> <p>제25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p>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7조 제2호	제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오존층보호를 위한	제15조 (제조 수량의 허가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제15조 제1항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허가 수량을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p>	<p>은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 수량의 허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증량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허가 수량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08.2.29></p> <p>제 9 조 (제조 수량의 허가) ①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수량을 정하여 제조하려는 연도 직전 연도마다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7,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에 따라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의 범위에서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 <p>제10조 (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 ① 제조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제조 수량(이하 “허가 제조수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p>		<p>줄일 수 있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부장관의 증량(증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증량 허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17>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을 한 수량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5조 제2항	확인을 한 수량을 줄일 수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허가취소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23조 제1항 제1호	허가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필수적 청문 사항)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의2 (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인증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필수적 청문 사항)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인증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p>		
유통산업발전법	<p>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성능검사기관 및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물류설비인증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p>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지정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필수적 청문 사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p>제17조 (지정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조정 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제9조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p>	제17조 제1항 제1호	지정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필수적 청문 사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지원	제17조 제2항	지정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다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호	(취소하여야 한다. 필수적 청문 사항)
전자거래기본법	제30조의2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30조의2 제1호	지정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필수적 청문사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 (등록의 취소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제43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필수적 청문사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②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3조 제2항 제1호	등록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필수적 청문사항)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③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제43조 제3항 제1호	등록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필수적 청문사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④중소기업청장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제43조 제4항 제1호	지정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필수적 청문사항)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13조 (품질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 생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호	인증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p> <p>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p>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p>제 5 조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중 제1항의 품목등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사업자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생산 또는 연구·개발능력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정사업자로 지정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다.</p> <p><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7.12.21, 2008.2.29></p>	제8조 제2호	지정취소 (취소할 수 있다. 필수적 청문사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 제4항 제1호	지정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제18조 제1항 제1호	허가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32조 제1항 제1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건물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25조 제1항 제2호	허가취소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p> <p>제 9 조 (허가) ①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도서에 대하여는 미리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산로·산책로·도로·공중변소 및 정자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자연생태계등의 연구·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기존의 건축물·공작물의 보수·개축 4. 기타 자연생태계등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2조 제1호	허가취소
먹는물 관리법	①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샘물 개발허	제12조의2 제1항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가를 받거나 샘플 개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p>제9조 (샘플 개발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플을 개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먹는물 관리법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제17조 제1항 제2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먹는물 관리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43조 제6항 제1호	지정취소
먹는물 관리법	<p>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p> <p>제21조 (영업의 허가 등) ①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제48조 제1항 제4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정지 6월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②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④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수도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25조 제1항 제1호	자격취소
수도법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p> <p>제34조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p>	제35조 제1항 제1호	영업정지 3월 또는 사업장 폐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개정 2007.12.27></p> <p>②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p>		
수도법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제63조 제1항 제3호	인가취소
소음·진동규제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17조 제1호	허가취소 저업정지 6월
소음·진동규제법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34조 제1항 제1호	인증취소
소음·진동규제법	2.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제43조 제2호	등록취소
소음·진동규제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45조 제1호	지정취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제21조 제1호	허가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제64조 제2호	등록취소
약취방지법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9조 제1호	지정취소
야생 동·식물보호법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15조 제1항 제1호	허가취소
야생 동·식물보호법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17조 제1항 제1호	허가취소
야생 동·식물보호법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20조 제1항 제1호	허가취소
야생 동·식물보호법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22조 제1호	허가취소
야생 동·식물보호법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36조 제1호	허가취소
야생 동·식물보호법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제49조 제1호	면허취소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34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토양환경보전법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제23조의6 제1항 제1호	지정취소
토양환경보전법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제23조의10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폐기물관리법	1.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27조 제1항 제1호	허가취소
하수도법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제30조 제1호	허가취소
하수도법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49조 제1항 제1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6월
하수도법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54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6월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은 때 제 5 조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개정 2006.4.28>) ①1종화학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목적·제조시설·제조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제8조 제1항 제1호	허가취소 또는 제조정지 3월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1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동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제12조 (수입규제) ①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목적·수입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4.28, 2008.2.29	제8조 제1항 제11호	허가취소 또는 제조정지 3월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한 때 제5조의2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①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조목적·제조량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조 제1항 제1호	허가취소 또는 제조정지 3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제10조 제1호	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4조 제1항 제1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검사대행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17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측정대행업)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20조 제1항 제1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3년 (환경측정분석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22조 제1호	지정취소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또는 검정기관)
환경영향평가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제39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소비자기본법	①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단체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9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제30조 (등록의 취소) 제1항	취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추어 것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것 ②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①시·도지사는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때	제17조 (설립인가의 취소) 제1항 1호	취소